# FTA협정 및 법령 개정표(2023ver.)

개정년월 : 2023. 7.

## 1. 안내사항

기존 교재의 'FTA특례법', 'FTA관세특례법' 등은 'FTA관세법'으로 명칭 통일하여 개정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FTA관세법' 개정 용어 변경
- 'FTA 관세법' -> 'FTA관세법'으로 변경
- 'FTA 특례법' -> 'FTA관세법'으로 변경
- 'FTA 관세특례법' -> 'FTA관세법'으로 변경
- 'FTA 관세특례' -> 'FTA관세'로 변경
- 'FTA 관세특례 고시' -> FTA관세법사무처리고시 (이하 "사무처리고시")

② '튀르키예' 개정 국호 변경
- '터키' -> '튀르키예'로 변경

③ 한-미국FTA -> 한-미FTA
- 한-중국FTA -> 한-중FTA
- 한-영국FTA -> 한-영FTA

④ RCEP 협정 -> RCEP 변경

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사무처리고시)
FTA관세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원산지인증수출자고시)

※ 신규 내용 중 개정서식 등 일부는 3. 추가내용으로 분류하여 표기

## 2. 주요 개정사항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td>21p</td><td>

### 1. FTA 추진 현황

우리나라는 경쟁국가에 비해 늦게 출발하였지만 2004년 4월 1일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2022년 2월~~ 현재 거대 선진경제권인 미국, EU, 중미[14] 및 영국과의 FTA, RCEP 등을 포함하여 ~~총 18개의 FTA협정이 발효되고 있으며 국가 수로는 58개국이다. 여기에 한-인도네시아 CEPA, 한-이스라엘 FTA, 한-캄보디아 FTA가 서명되어 발효될 예정이고, 한-필리핀 FTA가 타결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한-중-일 FTA, 한-에콰도르 SECA, 한-MERCOSUR TA, 한-말레이시아 FTA, 한-러시아 FTA, 한-우즈베키스탄 STEP,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등 ~~10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한-PA FTA, ~~한-EAEU FTA 등 2건~~에 대해서는 협상재개나 개시를 위한 여건을 조성 중에 있다.

14) 한-중미 FTA의 체약당사국은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는 발효 후 정식절차를 거쳐 참여할 예정이다.~~ 국내법 절차가 완료된 국가부터 순차적【('19.10.1) 니카라과, 온두라스, ('19.11.1) 코스타리카, ('20.1.1)엘살바도르, ('21.3.1) 파나마】~~으로~~ 발효되었다.

</td><td>

### 1. FTA 추진 현황

우리나라는 경쟁국가에 비해 늦게 출발하였지만 2004년 4월 1일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2023년 2월 현재 거대 선진경제권인 미국, EU, 중미[14] 및 영국과의 FTA, RCEP 등을 포함하여 총 21개의 FTA협정이 발효되고 있으며 국가 수로는 59개국이다. 여기에 한-필리핀 FTA가 서명되어 발효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한-중-일 FTA, 한-에콰도르 SECA, 한-MERCOSUR TA, 한-말레이시아 FTA, 한-러시아 FTA, 한-우즈베키스탄 STEP,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등 12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한-멕시코 SECA, 한-PA FTA, 한-영국 FTA 등 3건에 대해서는 협상재개나 개시를 위한 여건을 조성 중에 있다.

14) 한-중미 FTA의 체약당사국은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가 포함된다. 국내법 절차가 완료된 국가부터 순차적【(19.10.1) 니카라과, 온두라스, ('19.11.1) 코스타리카, ('20.1.1)엘살바도르, ('21.3.1) 파나마, 과테말라】으로 발효되었다.

</td><td>현행화</td></tr>
<tr><td>23p<br>각주</td><td>

18) 한-싱가포르 FTA 이래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FTA 원산지 지위 인정을 위한 개성공단 조항을 FTA에 두고 있다. FTA 개성공단 규정은 크게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 OP) 방식과 위원회 구성방식으로 분류된다.

<table>
<tr><th>구분</th><th>개요</th><th>적용협정</th></tr>
<tr><td>역외가공 방식<br>(Outward Processing)</td><td>FTA체결당사국내 생산한 반제품을 제3국 역외가공지역에서 가공한 후 재반입한 최종제품을 FTA상대국에 수출하는 방식</td><td>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페루, 한-베트남, 한-중국, 한-콜롬비아 FTA,</td></tr>
<tr><td>위원회 구성방식</td><td>FTA체결당사국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역외가공지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추후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td><td>한-EU, 한-미, 한-튀르키예,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중미, 한-영국 FTA, RCEP</td></tr>
</table>

</td><td>

18) 한-싱가포르 FTA 이래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FTA 원산지 지위 인정을 위한 개성공단 조항을 FTA에 두고 있다. FTA 개성공단 규정은 크게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 OP) 방식과 위원회 구성방식으로 분류된다.

<table>
<tr><th>구분</th><th>개요</th><th>적용협정</th></tr>
<tr><td>역외가공 방식<br>(Outward Processing)</td><td>FTA체결당사국내 생산한 반제품을 제3국 역외가공지역에서 가공한 후 재반입한 최종제품을 FTA상대국에 수출하는 방식</td><td>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페루, 한-베트남, 한-중국, 한-콜롬비아 FTA, 한-캄보디아, 한-인도네시아</td></tr>
<tr><td>위원회 구성방식</td><td>FTA체결당사국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역외가공지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추후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td><td>한-EU, 한-미, 한-튀르키예,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중미, 한-영국 FTA, RCEP, 한-이스라엘</td></tr>
</table>

</td><td>신규<br>협정<br>추가</td></tr>
</table>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td>28p<br>표</td><td>＼한-인도 CEPA 추진 경과＼<br><table><tr><th>일 시</th><th>내 용</th></tr><tr><td>2003.12.</td><td>포괄적 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그룹 설치문제 검토 합의</td></tr><tr><td>2004.10.</td><td>CEPA 타당성을 비롯한 경제적 유대관계 관련 합의사항 발표</td></tr><tr><td>2006.02.07.</td><td>협상 개시 공식 선언</td></tr><tr><td>2008.09.22.~25.</td><td>실질적 타결</td></tr><tr><td>2009.07.02.</td><td>한-인도 CEPA 인도 내각 승인</td></tr><tr><td>2009.08.07.</td><td>공식 서명</td></tr><tr><td>2009.11.06.</td><td>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td></tr><tr><td>2010.01.01.</td><td>한-인도 CEPA 발효</td></tr><tr><td>2017.09.21.~22.</td><td>한-인도 CEPA 제3차 개선협상 개최(서울)</td></tr><tr><td>2018.12.11.~12.</td><td>한-인도 CEPA 제7차 개선협상 개최(서울)</td></tr><tr><td>2019.06.17.~18.</td><td>한-인도 CEPA 제8차 개선협상 개최(뉴델리)</td></tr></table></td><td>＼한-인도 CEPA 추진 경과＼<br><table><tr><th>일 시</th><th>내 용</th></tr><tr><td>2003.12.</td><td>포괄적 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그룹 설치문제 검토 합의</td></tr><tr><td>2004.10.</td><td>CEPA 타당성을 비롯한 경제적 유대관계 관련 합의사항 발표</td></tr><tr><td>2006.02.07.</td><td>협상 개시 공식 선언</td></tr><tr><td>2008.09.22.~25.</td><td>실질적 타결</td></tr><tr><td>2009.07.02.</td><td>한-인도 CEPA 인도 내각 승인</td></tr><tr><td>2009.08.07.</td><td>공식 서명</td></tr><tr><td>2009.11.06.</td><td>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td></tr><tr><td>2010.01.01.</td><td>한-인도 CEPA 발효</td></tr><tr><td>2017.09.21.~22.</td><td>한-인도 CEPA 제3차 개선협상 개최(서울)</td></tr><tr><td>2018.12.11.~12.</td><td>한-인도 CEPA 제7차 개선협상 개최(서울)</td></tr><tr><td>2019.06.17.~18.</td><td>한-인도 CEPA 제8차 개선협상 개최(뉴델리)</td></tr><tr><td>2022.11.03~04</td><td>한·인도 CEPA 제9차 개선 협상 개최(서울)</td></tr></table></td><td>FTA<br>추진 경과</td></tr>
<tr><td>29p</td><td>6) 한-EU FTA<br><br>(1) 의의<br><br>한-EU FTA는 우리나라가 독일 등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28개국과~~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체결한 FTA로 EU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관세인하로 우리나라 상품이 EU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높이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td><td>6) 한-EU FTA<br><br>(1) 의의<br><br>한-EU FTA는 우리나라가 독일 등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27개국과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체결한 FTA로 EU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관세인하로 우리나라 상품이 EU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높이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td><td>브렉시트<br>반영</td></tr>
</table>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
<td>31p</td>
<td>
(1) 의의<br><br>
한-미국 FTA는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대상국이자 전 세계 GDP의 ~~22%~~를 차지하는 세계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라는 의의가 있는데 특히, 한-미국 FTA체결로 우리 경제와 사회제도 전반에 걸쳐 안보 리스크 완화에 기여함으로써 대외신인도 향상과 외국인투자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br><br>
＼한-미국 FTA 추진 경과＼
<table>
<tr><th>일 시</th><th>내 용</th></tr>
<tr><td>2003.08.</td><td>'FTA 추진 로드맵' 마련 :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상정</td></tr>
<tr><td>2005.09.</td><td>미행정부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선정</td></tr>
<tr><td>2006.02.02.</td><td>한-미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td></tr>
<tr><td>2006.02.03.</td><td>한-미 FTA 추진 발표(워싱턴)</td></tr>
<tr><td>2007.04.02.</td><td>한-미 FTA협상 타결</td></tr>
<tr><td>2007.06.30.</td><td>한-미 FTA 서명(워싱턴)</td></tr>
<tr><td>2011.02.10.</td><td>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td></tr>
<tr><td>2011.06.30.</td><td>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td></tr>
<tr><td>2011.10.03.</td><td>한-미 FTA 이행법안 미 의회 제출</td></tr>
<tr><td>2011.11.22.</td><td>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td></tr>
<tr><td>2012.03.15.</td><td>한-미 FTA 발효</td></tr>
<tr><td>2017.10.04.</td><td>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워싱턴)</td></tr>
<tr><td>2018.01.05.</td><td>제1차 한-미 FTA 개정협상 개최(워싱턴)</td></tr>
<tr><td>2018.12.07.</td><td>한-미 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통과</td></tr>
<tr><td>2019.01.01.</td><td>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td></tr>
<tr><td>2020.04.02.</td><td>제5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td></tr>
</table>
</td>
<td>
(1) 의의<br><br>
한-미국 FTA는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대상국이자 전 세계 GDP의 24%[22]를 차지하는 세계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라는 의의가 있는데 특히, 한-미국 FTA체결로 우리 경제와 사회제도 전반에 걸쳐 안보 리스크 완화에 기여함으로써 대외신인도 향상과 외국인투자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br><br>
＼한-미국 FTA 추진 경과＼
<table>
<tr><th>일 시</th><th>내 용</th></tr>
<tr><td>2003.08.</td><td>'FTA 추진 로드맵' 마련 :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상정</td></tr>
<tr><td>2005.09.</td><td>미행정부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선정</td></tr>
<tr><td>2006.02.02.</td><td>한-미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td></tr>
<tr><td>2006.02.03.</td><td>한-미 FTA 추진 발표(워싱턴)</td></tr>
<tr><td>2007.04.02.</td><td>한-미 FTA협상 타결</td></tr>
<tr><td>2007.06.30.</td><td>한-미 FTA 서명(워싱턴)</td></tr>
<tr><td>2011.02.10.</td><td>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td></tr>
<tr><td>2011.06.30.</td><td>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td></tr>
<tr><td>2011.10.03.</td><td>한-미 FTA 이행법안 미 의회 제출</td></tr>
<tr><td>2011.11.22.</td><td>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td></tr>
<tr><td>2012.03.15.</td><td>한-미 FTA 발효</td></tr>
<tr><td>2017.10.04.</td><td>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워싱턴)</td></tr>
<tr><td>2018.01.05.</td><td>제1차 한-미 FTA 개정협상 개최(워싱턴)</td></tr>
<tr><td>2018.12.07.</td><td>한-미 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국회통과</td></tr>
<tr><td>2019.01.01.</td><td>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td></tr>
<tr><td>2020.04.02.</td><td>제5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td></tr>
<tr><td>2021.11.19.</td><td>제6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td></tr>
<tr><td>2022.03.15.</td><td>한-미 FTA 발효 10주년</td></tr>
</table>
22) IMF, current prices (2022년 기준)
</td>
<td>최신화<br>및<br>출처 삽입<br>FTA<br>추진 경과</td>
</tr>
</table>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td>32p</td><td>(1) 의의<br><br>한-튀르키예 FTA는 튀르키예가 유럽과 중동에 맞닿아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고 ~~7,850만~~에 달하는 인구와 젊은 소비층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등 유망시장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거대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가치가 높다는데 의의가 있다.</td><td>(1) 의의<br><br>한-튀르키예 FTA는 튀르키예가 유럽과 중동에 맞닿아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고 8,477만[23]에 달하는 인구와 젊은 소비층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등 유망시장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 세계 최대 경제규모인 EU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가치가 높다는데 의의가 있다.<br><br>23) World Bank (2021년 기준)</td><td>현행화,<br>각주 삽입<br>및<br>내용보완</td></tr>
<tr><td>34p<br>표</td><td>(2) 원산지절차<br><br><table>
<tr><td colspan="2">협 정 국</td><td>호주</td><td>발효일자</td><td>2014.12.12</td></tr>
<tr><td rowspan="5">원산지<br>증명서</td><td>발급방법</td><td colspan="3">자율발급(다만, 호주의 경우 기관발급 병행)</td></tr>
<tr><td>발급주체</td><td colspan="3">자율발급 : 수출자 및 생산자<br>기관발급 : 호주상공회의소(ACCI), 호주산업협회(AIG)</td></tr>
<tr><td>서 식</td><td colspan="3">자율서식(필수기재사항 기재), 다만, 권고서식 권장</td></tr>
<tr><td>유효기간</td><td colspan="3">발급일 또는 서명일로부터 2년(또는 수입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td></tr>
<tr><td>제출면제</td><td colspan="3">한국 : 미화 1,000달러 이하, 호주 : 호주 달러 1,000달러 이하</td></tr>
<tr><td rowspan="3">역외가공</td><td>품 목</td><td colspan="3" rowspan="3">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 기준 하에서 구체적 내용 결정</td></tr>
<tr><td>지 역</td></tr>
<tr><td>가 공 비</td></tr>
<tr><td rowspan="2">원산지<br>검 증</td><td>검증방법</td><td colspan="3">직접검증(다만, 호주의 증명서 발급기관에 지원요청 가능)</td></tr>
<tr><td>검증주체</td><td colspan="3">수입국 세관</td></tr>
<tr><td colspan="2">제3국 발행 송장</td><td colspan="3">발행 가능</td></tr>
</table></td><td>(2) 원산지절차<br><br><table>
<tr><td colspan="2">협 정 국</td><td>호주</td><td>발효일자</td><td>2014.12.12</td></tr>
<tr><td rowspan="5">원산지<br>증명서</td><td>발급방법</td><td colspan="3">자율발급(다만, 호주의 경우 기관발급 병행)</td></tr>
<tr><td>발급주체</td><td colspan="3">자율발급 : 수출자 및 생산자<br>기관발급 : 호주상공회의소(ACCI), 호주산업협회(AIG),<br>국제수출증명서비스 International Export Certification Service (IECS), 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td></tr>
<tr><td>서 식</td><td colspan="3">자율서식(필수기재사항 기재), 다만, 권고서식 권장</td></tr>
<tr><td>유효기간</td><td colspan="3">발급일 또는 서명일로부터 2년(또는 수입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td></tr>
<tr><td>제출면제</td><td colspan="3">한국 : 미화 1,000달러 이하, 호주 : 호주 달러 1,000달러 이하</td></tr>
<tr><td rowspan="3">역외가공</td><td>품 목</td><td colspan="3" rowspan="3">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 기준 하에서 구체적 내용 결정</td></tr>
<tr><td>지 역</td></tr>
<tr><td>가 공 비</td></tr>
<tr><td rowspan="2">원산지<br>검 증</td><td>검증방법</td><td colspan="3">직접검증(다만, 호주의 증명서 발급기관에 지원요청 가능)</td></tr>
<tr><td>검증주체</td><td colspan="3">수입국 세관</td></tr>
<tr><td colspan="2">제3국 발행 송장</td><td colspan="3">발행 가능</td></tr>
</table></td><td>발급 주체<br>추가</td></tr>
</table>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td>37p</td><td>

## 13) 한-베트남 FTA

(1) 의의

한-베트남 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5번째 FTA로 한-ASEAN FTA 첫 개별국 업그레이드 협상이자 기존 한-ASEAN FTA상의 양국 간 불균형한 상품 양허수준을 개선한 FTA라는데 의의가 있다.
베트남은 인구 ~~약 9천만 명~~의 떠오르는 신흥시장이자 매년 약 5~6%의 경제 성장국으로 향후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ASEAN FTA발효(2007년 6월) 이후 일-베트남 FTA가 체결(2009년 10월 발효)되어 그간 우리 주요 수출품들이 일본 경쟁품목에 비해 불리한 경쟁 조건에 직면해 있었던 것을 한-베트남 FTA를 통해 경쟁조건에 대한 시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td><td>

## 13) 한-베트남 FTA

(1) 의의

한-베트남 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5번째 FTA로 한-ASEAN FTA 첫 개별국 업그레이드 협상이자 기존 한-ASEAN FTA상의 양국 간 불균형한 상품 양허수준을 개선한 FTA라는데 의의가 있다.
베트남은 인구 약 9천7백만 명의 떠오르는 신흥시장이자 매년 약 5~6%의 경제 성장국으로 향후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ASEAN FTA발효(2007년 6월) 이후 일-베트남 FTA가 체결(2009년 10월 발효)되어 그간 우리 주요 수출품들이 일본 경쟁품목에 비해 불리한 경쟁 조건에 직면해 있었던 것을 한-베트남 FTA를 통해 경쟁조건에 대한 시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td><td></td></tr>
<tr><td>38p</td><td>

\한-베트남 FTA 추진 경과\

| 일 시 | 내 용 |
|---|---|
| 2009.10. |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FTA 공동작업반 설치 합의 |
| 2010.06. | 한-베트남 FTA 공동작업반 제1차 회의 개최 |
| 2011.11.08. |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공동연구보고서 채택 |
| 2012.04.20. | 한-베트남 FTA 공청회 |
| 2012.08.06. | 한-베트남 FTA협상 공식 개시 선언 |
| 2012.09. | 한-베트남 FTA 제1차 공식협상 개최 |
| 2015.03.28. | 한-베트남 FTA 가서명 |
| 2015.05.05. | 한-베트남 FTA 정식서명 |
| 2015.11.30. | 한-베트남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 2015.12.20. | 한-베트남 FTA 발효 |
| 2016.12.07. | 한-베트남 FTA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서울) |
| 2018.02.02. | 한-베트남 FTA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호치민) |
| 2019.10.22. | 한-베트남 FTA 제3차 공동위원회 개최(서울) |

</td><td>

\한-베트남 FTA 추진 경과\

| 일 시 | 내 용 |
|---|---|
| 2009.10. |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FTA 공동작업반 설치 합의 |
| 2010.06. | 한-베트남 FTA 공동작업반 제1차 회의 개최 |
| 2011.11.08. |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공동연구보고서 채택 |
| 2012.04.20. | 한-베트남 FTA 공청회 |
| 2012.08.06. | 한-베트남 FTA협상 공식 개시 선언 |
| 2012.09. | 한-베트남 FTA 제1차 공식협상 개최 |
| 2015.03.28. | 한-베트남 FTA 가서명 |
| 2015.05.05. | 한-베트남 FTA 정식서명 |
| 2015.11.30. | 한-베트남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 2015.12.20. | 한-베트남 FTA 발효 |
| 2016.12.07. | 한-베트남 FTA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서울) |
| 2018.02.02. | 한-베트남 FTA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호치민) |
| 2019.10.22. | 한-베트남 FTA 제3차 공동위원회 개최(서울) |
| 2020.12.11 | 제10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제4차 한-베트남 FTA공동위원회 개최(하노이) |
| 2021.12.22 | 제11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제5차 한-베트남 FTA공동위원회 개최(서울) |

</td><td>FTA<br>추진 경과</td></tr>
</table>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td>39p</td>
<td>
14) 한-중국 FTA<br><br>
(1) 의의<br><br>
한-중국 FTA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시장인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br>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 ~~2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며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에 달함으로써~~ 한-중국 FTA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이 확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br>
＼한-중국 FTA 추진 경과＼
<table>
<tr><th>일 시</th><th>내 용</th></tr>
<tr><td>2004.09.</td><td>한-중 FTA 체결을 위한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td></tr>
<tr><td>2005.07.</td><td>민간공동연구 개시</td></tr>
<tr><td>2006.11.17.</td><td>한-중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합의</td></tr>
<tr><td>2010.05.23.</td><td>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방안 논의</td></tr>
<tr><td>2010.09.28.~29.</td><td>한-중 FTA 정부 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 개최</td></tr>
<tr><td>2012.02.24.</td><td>한-중 FTA 공청회</td></tr>
<tr><td>2012.03.01.~02.</td><td>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td></tr>
<tr><td>2012.05.02.</td><td>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td></tr>
<tr><td>2012.05.14.</td><td>한-중 FTA 제1차 협상 개시</td></tr>
<tr><td>2014.11.10.</td><td>한-중 FTA 협상 타결 선언</td></tr>
<tr><td>2015.02.25.</td><td>한-중 FTA 가서명</td></tr>
<tr><td>2015.06.01.</td><td>한-중 FTA 정식서명</td></tr>
<tr><td>2015.11.30.</td><td>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td></tr>
<tr><td>2015.12.20.</td><td>한-중 FTA 발효</td></tr>
<tr><td>2017.01.13.</td><td>한-중 FTA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베이징)</td></tr>
<tr><td>2018.03.23</td><td>한-중 FTA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서울)</td></tr>
</table>
</td>
<td>
14) 한-중국 FTA<br><br>
(1) 의의<br><br>
한-중국 FTA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시장인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br>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 약 20%[25]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으로써 한-중국 FTA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이 확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br>
＼한-중국 FTA 추진 경과＼
<table>
<tr><th>일 시</th><th>내 용</th></tr>
<tr><td>2004.09.</td><td>한-중 FTA 체결을 위한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td></tr>
<tr><td>2005.07.</td><td>민간공동연구 개시</td></tr>
<tr><td>2006.11.17.</td><td>한-중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합의</td></tr>
<tr><td>2010.05.23.</td><td>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방안 논의</td></tr>
<tr><td>2010.09.28.~29.</td><td>한-중 FTA 정부 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 개최</td></tr>
<tr><td>2012.02.24.</td><td>한-중 FTA 공청회</td></tr>
<tr><td>2012.03.01.~02.</td><td>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td></tr>
<tr><td>2012.05.02.</td><td>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td></tr>
<tr><td>2012.05.14.</td><td>한-중 FTA 제1차 협상 개시</td></tr>
<tr><td>2014.11.10.</td><td>한-중 FTA 협상 타결 선언</td></tr>
<tr><td>2015.02.25.</td><td>한-중 FTA 가서명</td></tr>
<tr><td>2015.06.01.</td><td>한-중 FTA 정식서명</td></tr>
<tr><td>2015.11.30.</td><td>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td></tr>
<tr><td>2015.12.20.</td><td>한-중 FTA 발효</td></tr>
<tr><td>2017.01.13.</td><td>한-중 FTA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베이징)</td></tr>
<tr><td>2018.03.23</td><td>한-중 FTA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서울)</td></tr>
</table>
</td>
<td>내용수정<br>및<br>FTA<br>추진 경과</td></tr>
</table>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td></td><td>
<table>
<tr><td>2020.08.03.</td><td>한-중 FTA 제3차 공동위원회 개최</td></tr>
</table>
</td><td>
<table>
<tr><td>2020.08.03.</td><td>한-중 FTA 제3차 공동위원회 개최</td></tr>
<tr><td>2020.10.26-30</td><td>한·중 FTA 제9차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td></tr>
<tr><td>2021.01</td><td>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회기간회의</td></tr>
<tr><td>2021.02</td><td>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회기간회의<br>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수석대표회의</td></tr>
<tr><td>2021.04</td><td>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회기간회의</td></tr>
<tr><td>2021.05</td><td>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회기간회의</td></tr>
<tr><td>2021.07</td><td>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회기간회의</td></tr>
<tr><td>2021.08</td><td>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회기간회의</td></tr>
<tr><td>2022.01.26</td><td>한-중 FTA 제4차 공동위원회 개최</td></tr>
<tr><td>2022.07.13</td><td>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수석대표회의</td></tr>
<tr><td>2022.08.18-19</td><td>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회기간회의</td></tr>
<tr><td>2022.10.12,17</td><td>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회기간회의</td></tr>
</table>
25)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2022년도 기준), 국가별 수출입실적 - https://unipass.customs.go.kr/
</td><td></td></tr>
<tr><td>42p</td><td>
(2) 원산지절차
<table>
<tr><td colspan="2">협 정 국</td><td>중미</td><td>발효일자</td><td>~~2019.10.01. (부분 발효)~~</td></tr>
<tr><td rowspan="5">원산지 증명서</td><td>발급방법</td><td colspan="3">자율발급</td></tr>
<tr><td>발급주체</td><td colspan="3">수출자 및 생산자</td></tr>
<tr><td>서 식</td><td colspan="3">통일증명서식</td></tr>
<tr><td>유효기간</td><td colspan="3">서명일로부터 1년</td></tr>
<tr><td>제출면제</td><td colspan="3">미화 1,000달러 이하</td></tr>
<tr><td rowspan="3">역외가공</td><td>품 목</td><td colspan="3" rowspan="3">향후 역외가공지역 생산물품의 원산지 지위 요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td></tr>
<tr><td>지 역</td></tr>
<tr><td>가 공 비</td></tr>
<tr><td rowspan="2">원산지 검 증</td><td>검증방법</td><td colspan="3">직접검증/간접검증</td></tr>
<tr><td>검증주체</td><td colspan="3">수입국 세관(직접검증), 수출국 세관(간접검증)</td></tr>
<tr><td colspan="2">제3국 발행 송장</td><td colspan="3">발행 가능</td></tr>
</table>
</td><td>
(2) 원산지절차
<table>
<tr><td colspan="2">협 정 국</td><td>중미</td><td>발효일자</td><td>2021.03.01.(전체 발효)</td></tr>
<tr><td rowspan="5">원산지 증명서</td><td>발급방법</td><td colspan="3">자율발급</td></tr>
<tr><td>발급주체</td><td colspan="3">수출자 및 생산자</td></tr>
<tr><td>서 식</td><td colspan="3">통일증명서식</td></tr>
<tr><td>유효기간</td><td colspan="3">서명일로부터 1년</td></tr>
<tr><td>제출면제</td><td colspan="3">미화 1,000달러 이하</td></tr>
<tr><td rowspan="3">역외가공</td><td>품 목</td><td colspan="3" rowspan="3">향후 역외가공지역 생산물품의 원산지 지위 요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td></tr>
<tr><td>지 역</td></tr>
<tr><td>가 공 비</td></tr>
<tr><td rowspan="2">원산지 검 증</td><td>검증방법</td><td colspan="3">직접검증/간접검증</td></tr>
<tr><td>검증주체</td><td colspan="3">수입국 세관(직접검증), 수출국 세관(간접검증)</td></tr>
<tr><td colspan="2">제3국 발행 송장</td><td colspan="3">발행 가능</td></tr>
</table>
</td><td>협정발효 최신화</td></tr>
</table>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td>43p~<br>44p</td><td>
18)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br><br>
(1) 의의<br><br>
RCEP은 무역규모·GDP·인구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서 일본과는 최초로 체결한 FTA이며 아세안과는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RCEP은 ~~체~~TPP와 EU에 버금가는 경제통합체 형성으로 우리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과 양자 FTA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하면서 다자적으로 역내교역 장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경제통합제 형성에 따른 활용도 제고,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 논의 진전으로 인한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에 기여할 전망이다.<br><br>
＼RCEP 추진 경과＼
<table>
<tr><th>일 시</th><th>내 용</th></tr>
<tr><td>2012.11.20.</td><td>RCEP 협상개시 선언 (프놈펜)</td></tr>
<tr><td>2013.05.09.-19.</td><td>RCEP 제1차 공식협상 개최(브루나이)</td></tr>
<tr><td>2013.9~2017.10</td><td>RCEP 제2차~제20차 공식협상 개최(인천 송도)</td></tr>
<tr><td>2018.2~2020.7.</td><td>RCEP 제21차~제31차 공식협상 개최</td></tr>
<tr><td>2020.11.15.</td><td>RCEP 서명</td></tr>
<tr><td>2022.02.01.</td><td>RCEP 발효(한국)</td></tr>
</table>
</td><td>
18)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br><br>
(1) 의의<br><br>
RCEP은 무역규모·GDP·인구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서 일본과는 최초로 체결한 FTA이며 아세안과는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RCEP은 CPTPP와 EU에 버금가는 경제통합체 형성으로 우리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과 양자 FTA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하면서 다자적으로 역내교역 장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경제통합제 형성에 따른 활용도 제고,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 논의 진전으로 인한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에 기여할 전망이다.<br><br>
＼RCEP 추진 경과＼
<table>
<tr><th>일 시</th><th>내 용</th></tr>
<tr><td>2012.11.20.</td><td>RCEP 협상개시 선언 (프놈펜)</td></tr>
<tr><td>2013.05.09.-19.</td><td>RCEP 제1차 공식협상 개최(브루나이)</td></tr>
<tr><td>2013.9~2017.10</td><td>RCEP 제2차~제20차 공식협상 개최(인천 송도)</td></tr>
<tr><td>2018.2~2020.7.</td><td>RCEP 제21차~제31차 공식협상 개최</td></tr>
<tr><td>2020.11.15.</td><td>RCEP 서명</td></tr>
<tr><td>2022.02.01.</td><td>RCEP 발효(한국)</td></tr>
<tr><td>2022.04.26,27</td><td>제1차 공동위원회</td></tr>
<tr><td>2022.08.25</td><td>제2차 공동위원회</td></tr>
<tr><td>2022.09.17</td><td>제1차 장관회의</td></tr>
</table>
</td><td>오타 수정<br>및<br>FTA<br>추진 경과<br><br>호주<br>발급기관<br>추가</td></tr>
</table>

| 페이지 | 2022년 기본교재 내용 | 2023년 개정판 내용 | 비 고 |
|---|---|---|---|

(2) 원산지절차

| 협 정 국 | | RCEP | 발효일자 | 2022.2.1 |
|---|---|---|---|---|
| 원산지 증명서 | 발급방법 | 기관발급 | | 자율발급 |
| | 발급주체 | *(브루나이)재정경제부,<br>(캄보디아)상무부,<br>(인도네시아)통상부,<br>(라오스)산업통상부, 상공회의소,<br>(말레이시아)국제통상산업부,<br>(미얀마)상무부, (필리핀)세관,<br>(싱가포르)세관, (태국)상무부,<br>(베트남)산업무역부,<br>(일본)상공회의소,<br>(중국)해관총서,<br>국제무역촉진위원회,<br>(호주)상공회의소, 산업협회<br>*한국 : 세관,<br>상공회의소(개성공단 생산품은 "세관발급" 필수) | | 인증수출자,<br>수출자·생산자*<br>*(각 발효일 이후 10년 이내 적용) 호주,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br>*(각 발효일 이후 20년 이내 적용)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
| | 서 식 | 당사국간 협의양식 | | 당사국간 협의양식<br>(한국은 회원국과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서식) |
| | 유효기간 |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 | |
| | 제출면제 | 수입 관세가격 미화 200달러 이하 또는 수입국이 정한 금액 이하 수입당사국에서 요건을 면제한 상품 | | |
| 역외 가공 | 품 목 |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특정 상품(역외가공물품) 취급에 대한 논의 개시하여 3년 이내에 모든 당사국 및 서명국의 컨센서스에 의한 합의에 따라 결정 | | |
| | 지 역 | | | |
| | 가 공 비 | | | |
| 원산지 검 증 | 검증방법 | 직접검증/간접검증 | | |
| | 검증주체 | 수입국 세관(직접검증), 수출국 세관(간접검증) | | |
| 제3국 발행 송장 | | 발행 가능 | | |

※ 총 15개국 ~~중 10개~~국이 2022.1.1일부터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2022.2.1일부터 발효,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은 아직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아 발효 대상국에서 제외~~

(2) 원산지절차

| 협 정 국 | | RCEP | 발효일자 | 2022.2.1 |
|---|---|---|---|---|
| 원산지 증명서 | 발급방법 | 기관발급 | | 자율발급 |
| | 발급주체 | *(브루나이)재정경제부,<br>(캄보디아)상무부,<br>(인도네시아)통상부,<br>(라오스)산업통상부, 상공회의소,<br>(말레이시아)국제통상산업부,<br>(미얀마)상무부, (필리핀)세관,<br>(싱가포르)세관, (태국)상무부,<br>(베트남)산업무역부,<br>(일본)상공회의소,<br>(중국)해관총서,<br>국제무역촉진위원회,<br>(호주)상공회의소, 산업협회,<br>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 (뉴질랜드)상공회의소, 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br>*한국 : 세관,<br>상공회의소(개성공단 생산품은 "세관발급" 필수) | | 인증수출자,<br>수출자·생산자*<br>*(각 발효일 이후 10년 이내 적용) 호주,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br>*(각 발효일 이후 20년 이내 적용)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
| | 서 식 | 당사국간 협의양식 | | 당사국간 협의양식<br>(한국은 회원국과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서식) |
| | 유효기간 |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 | |
| | 제출면제 | 수입 관세가격 미화 200달러 이하 또는 수입국이 정한 금액 이하 수입당사국에서 요건을 면제한 상품 | | |
| 역외가공 | 품 목 |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특정 상품(역외가공물품) 취급에 대한 논의 개시하여 3년 이내에 모든 당사국 및 서명국의 컨센서스에 의한 합의에 따라 결정 | | |
| | 지 역 | | | |
| | 가 공 비 | | | |
| 원산지 검 증 | 검증방법 | 직접검증/간접검증 | | |
| | 검증주체 | 수입국 세관(직접검증), 수출국 세관(간접검증) | | |
| 제3국 발행 송장 | | 발행 가능 | | |

※ 총 15개국 중 13개국이 2022.1.1일부터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2022.2.1일부터 발효되었고, 말레이시아는 2022.3.18.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인도네시아는 2023.1.2.일부터 발효. 이외의 미얀마·필리핀은 아직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아 발효 대상국에서 제외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td>44p</td><td>~~19)~~ 한-인도네시아 CEPA~~(발효예정)~~</td><td>21) 한-인도네시아 CEPA</td><td>현행화 및 순서 변경</td></tr>
<tr><td rowspan="2">45p</td><td>＼한-인도네시아 CEPA 추진 경과＼
<table>
<tr><th>일 시</th><th>내 용</th></tr>
<tr><td>2012.03.28.</td><td>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개시 선언 (프놈펜)</td></tr>
<tr><td>2012.07.12.</td><td>한-인도네시아 CEPA 제1차 협상 개최(자카르타)</td></tr>
<tr><td>2012.12~2019.10.</td><td>한-인도네시아 CEPA 제2차~제10차 공식협상 개최(발리)</td></tr>
<tr><td>2019.11.25.</td><td>한-인도네시아 CEPA 최종 타결</td></tr>
<tr><td>2020.12.18.</td><td>한-인도네시아 CEPA 정식 서명</td></tr>
</table>
(2) 원산지절차
<table>
<tr><td colspan="2">협 정 국</td><td>인도네시아</td><td>발효일자</td></tr>
<tr><td rowspan="5">원산지 증명서</td><td>발급방법</td><td>기관발급</td><td>자율발급</td></tr>
<tr><td>발급주체</td><td>*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개성공단 생산품은 “세관발급”)<br>* 인도네시아: 통상부</td><td>인증수출자(발효후 2년내), 수출자·생산자(발효후 10년내 이행)</td></tr>
<tr><td>서 식</td><td>양국간 통일증명서식</td><td></td></tr>
<tr><td>유효기간</td><td colspan="2">발급일로부터 1년</td></tr>
<tr><td>제출면제</td><td colspan="2">수입 관세가격 미화 200달러 이하 또는 수입국이 정한 금액 이하</td></tr>
<tr><td rowspan="3">역외가공</td><td>품 목</td><td colspan="2">100개 품목(HS 6단위)</td></tr>
<tr><td>지 역</td><td colspan="2">개성공단</td></tr>
<tr><td>가 공 비</td><td colspan="2">역외부가가치 40% 이하, 역내산재료비 60% 이상</td></tr>
<tr><td rowspan="2">원산지 검 증</td><td>검증방법</td><td colspan="2">간접검증 후 직접검증</td></tr>
<tr><td>검증주체</td><td colspan="2">수출국 관세당국(간접검증), 수입국 관세당국(직접검증: 현지조사)</td></tr>
<tr><td colspan="2">제3국 발행 송장</td><td colspan="2">원산지증명서 제4란에는 “비당사국송장” 및 송장을 발급하는 운영자의 법적 이름과 국가를 명시</td></tr>
</table></td><td>＼한-인도네시아 CEPA 추진 경과＼
<table>
<tr><th>일 시</th><th>내 용</th></tr>
<tr><td>2012.03.28.</td><td>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개시 선언 (프놈펜)</td></tr>
<tr><td>2012.07.12.</td><td>한-인도네시아 CEPA 제1차 협상 개최(자카르타)</td></tr>
<tr><td>2012.12~2019.10.</td><td>한-인도네시아 CEPA 제2차~제10차 공식협상 개최(발리)</td></tr>
<tr><td>2019.11.25.</td><td>한-인도네시아 CEPA 최종 타결</td></tr>
<tr><td>2020.12.18.</td><td>한-인도네시아 CEPA 정식 서명</td></tr>
<tr><td>2021.06.29</td><td>한-인도네시아 CEPA 국회비준</td></tr>
<tr><td>2023.01.01</td><td>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td></tr>
</table>
(2) 원산지절차
<table>
<tr><td colspan="2">협 정 국</td><td>인도네시아</td><td>발효일자</td><td>2023.01.01.</td></tr>
<tr><td rowspan="5">원산지 증명서</td><td>발급방법</td><td>기관발급</td><td colspan="2">자율발급</td></tr>
<tr><td>발급주체</td><td>*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개성공단 생산품은 “세관발급”)<br>* 인도네시아: 통상부</td><td colspan="2">인증수출자(발효후 2년내), 수출자·생산자(발효후 10년내 이행)</td></tr>
<tr><td>서 식</td><td>양국간 통일증명서식</td><td colspan="2"></td></tr>
<tr><td>유효기간</td><td colspan="3">발급일로부터 1년</td></tr>
<tr><td>제출면제</td><td colspan="3">수입 관세가격 미화 200달러 이하 또는 수입국이 정한 금액 이하</td></tr>
<tr><td rowspan="3">역외가공</td><td>품 목</td><td colspan="3">100개 품목(HS 6단위)</td></tr>
<tr><td>지 역</td><td colspan="3">개성공단</td></tr>
<tr><td>가 공 비</td><td colspan="3">역외부가가치 40% 이하, 역내산재료비 60% 이상</td></tr>
<tr><td rowspan="2">원산지 검 증</td><td>검증방법</td><td colspan="3">간접검증 후 직접검증</td></tr>
<tr><td>검증주체</td><td colspan="3">수출국 관세당국(간접검증), 수입국 관세당국(직접검증: 현지조사)</td></tr>
<tr><td colspan="2">제3국 발행 송장</td><td colspan="3">원산지증명서 제4란에는 “비당사국송장” 및 송장을 발급하는 운영자의 법적 이름과 국가를 명시</td></tr>
</table></td><td>FTA 추진 경과</td></tr>
</table>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
<td>46p</td>
<td>
~~20~~) 한-이스라엘 FTA~~(발효예정)~~

＼한-이스라엘 FTA 추진 경과＼

<table>
<tr><th>일 시</th><th>내 용</th></tr>
<tr><td>2016.05.24.</td><td>한-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 합의(예루살렘)</td></tr>
<tr><td>2016.06.27.-30.</td><td>한-이스라엘 FTA 제1차 협상 개최(서울)</td></tr>
<tr><td>2016.12~2018.3.</td><td>한-이스라엘 FTA 제2차~제6차 협상 개최(예루살렘)</td></tr>
<tr><td>2019.08.21.</td><td>한-이스라엘 FTA 협상 타결 공동 선언</td></tr>
<tr><td>2021.05.12.</td><td>한-이스라엘 FTA 서명</td></tr>
</table>

(2) 원산지절차

<table>
<tr><td colspan="2">협 정 국</td><td>이스라엘</td><td>발효일자</td></tr>
<tr><td rowspan="5">원산지 증명서</td><td>발급방법</td><td>기관발급</td><td>자율발급</td></tr>
<tr><td>발급주체</td><td>*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개성공단 생산품은 “세관발급”)<br>* 이스라엘 : 재무부 조세당국 관세국</td><td>인증수출자,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자</td></tr>
<tr><td>서 식</td><td>양국간 통일증명서식</td><td>(인증수출자) 수출당사국의 각 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작성 (수출자)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 기재</td></tr>
<tr><td>유효기간</td><td colspan="2">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2개월</td></tr>
<tr><td>제출면제</td><td colspan="2">미화 1,000달러 이하의 개인 소포 및 여행자 수화물</td></tr>
<tr><td rowspan="3">역외가공</td><td>품 목</td><td colspan="2" rowspan="3">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 기준 하에서 구체적 내용 결정</td></tr>
<tr><td>지 역</td></tr>
<tr><td>가 공 비</td></tr>
<tr><td rowspan="2">원산지 검 증</td><td>검증방법</td><td colspan="2">간접검증 후 직접검증</td></tr>
<tr><td>검증주체</td><td colspan="2">수출국 관세당국(간접검증), 수입국 관세당국(직접검증)</td></tr>
<tr><td colspan="2">제3국 발행 송장</td><td colspan="2">발행 가능</td></tr>
</table>
</td>
<td>
19) 한-이스라엘 FTA

＼한-이스라엘 FTA 추진 경과＼

<table>
<tr><th>일 시</th><th>내 용</th></tr>
<tr><td>2016.05.24.</td><td>한-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 합의(예루살렘)</td></tr>
<tr><td>2016.06.27.-30.</td><td>한-이스라엘 FTA 제1차 협상 개최(서울)</td></tr>
<tr><td>2016.12~2018.3.</td><td>한-이스라엘 FTA 제2차~제6차 협상 개최(예루살렘)</td></tr>
<tr><td>2019.08.21.</td><td>한-이스라엘 FTA 협상 타결 공동 선언</td></tr>
<tr><td>2021.05.12.</td><td>한-이스라엘 FTA 서명</td></tr>
<tr><td>2022.12.01.</td><td>한-이스라엘 FTA 발효</td></tr>
</table>

(2) 원산지절차

<table>
<tr><td colspan="2">협 정 국</td><td>이스라엘</td><td>발효일자</td><td>2022.12.01.</td></tr>
<tr><td rowspan="5">원산지 증명서</td><td>발급방법</td><td>기관발급</td><td colspan="2">자율발급</td></tr>
<tr><td>발급주체</td><td>*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개성공단 생산품은 “세관발급”)<br>* 이스라엘 : 재무부 조세당국 관세국</td><td colspan="2">인증수출자,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자</td></tr>
<tr><td>서 식</td><td>양국간 통일증명서식</td><td colspan="2">(인증수출자) 수출당사국의 각 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작성 (수출자)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 기재</td></tr>
<tr><td>유효기간</td><td colspan="3">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2개월</td></tr>
<tr><td>제출면제</td><td colspan="3">미화 1,000달러 이하의 개인 소포 및 여행자 수화물</td></tr>
<tr><td rowspan="3">역외가공</td><td>품 목</td><td colspan="3" rowspan="3">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 기준 하에서 구체적 내용 결정</td></tr>
<tr><td>지 역</td></tr>
<tr><td>가 공 비</td></tr>
<tr><td rowspan="2">원산지 검 증</td><td>검증방법</td><td colspan="3">간접검증 후 직접검증</td></tr>
<tr><td>검증주체</td><td colspan="3">수출국 관세당국(간접검증), 수입국 관세당국(직접검증)</td></tr>
<tr><td colspan="2">제3국 발행 송장</td><td colspan="3">발행 가능</td></tr>
</table>
</td>
<td>현행화 및 순서 변경</td>
</tr>
</table>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td>추가</td><td>- 2022년 교재 內 내용 없음 -</td><td>

## 20) 한-캄보디아 FTA

(1) 의의

한-캄보디아 FTA는 메콩 지역의 허브로, 아세안 국가인 베트남, 태국 및 라오스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11년 이후 연 7% 경제성장을 지속해오고 있는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또한 글로벌공급망의 재편 과정에서 캄보디아와의 FTA는 우리나라 기업의 신규 생산거점으로서 진출 가능하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캄보디아 FTA 추진 경과＼

<table>
<tr><th>일 시</th><th>내 용</th></tr>
<tr><td>2019.03</td><td>한-캄보디아 정상회담(프놈펜)시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양자 FTA 제안</td></tr>
<tr><td>2019.11</td><td>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캄보디아 통상장관간 FTA 공동연구 개시 합의</td></tr>
<tr><td>2020.01-05</td><td>한-캄보디아 FTA 공동연구 진행·완료</td></tr>
<tr><td>2020.06</td><td>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 국내절차 완료</td></tr>
<tr><td>2020.07.09</td><td>한-캄보디아 FTA 협상 개시 선언</td></tr>
<tr><td>2020.07.30-31</td><td>한-캄보디아 FTA 제1차 공식협상 개최</td></tr>
<tr><td>2020.08.31-09.03</td><td>한-캄보디아 FTA 제2차 공식협상 개최</td></tr>
<tr><td>2020.10.06-08</td><td>한-캄보디아 FTA 제3차 공식협상 개최</td></tr>
<tr><td>2020.11.18-20</td><td>한-캄보디아 FTA 제4차 공식협상 개최(화상)</td></tr>
<tr><td>2021.02.03</td><td>한-캄보디아 FTA 타결공동선언</td></tr>
<tr><td>2021.10.26</td><td>한-캄보디아 FTA 서명</td></tr>
<tr><td>2022.09.27</td><td>비준동의안 국회 통과</td></tr>
<tr><td>2022.12.01</td><td>한-캄보디아 FTA 발효</td></tr>
</table>

</td><td>신규 협정 내용 추가</td></tr>
</table>

| 페이지 | 2022년 기본교재 내용 | 2023년 개정판 내용 | 비 고 |
|---|---|---|---|
| | | (2) 원산지절차 | |

| 협 정 국 | | 캄보디아 | 발효일자 | 2023.01.01 |
|---|---|---|---|---|
| 원산지 증명서 | 발급방법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
| | 발급주체 | *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br>* 캄보디아 : 상무부 | 인증수출자 | |
| | 서 식 |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 |
| | 유효기간 | 발급일 또는 작성일부터 1년 | | |
| | 제출면제 | 가. 수입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 이하인 수입 물품 또는<br>나. 수입국이 정한 그보다 높은 금액 이하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한 경우<br>다. 수입 당사국이 요건을 면제한 상품인 경우<br><br>* 단,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 제출을 면제하지 않음<br>① 물품을 분할 하여 수입하는 등 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 또는<br>② 해당 수입이 당초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 | |
| 역외가공 | 품 목 | 100개 품목(HS 6단위) | | |
| | 지 역 | 개성공단 | | |
| | 가 공 비 | 역외부가가치 40% 이하 | | |
| 원산지 검 증 | 검증방법 | 간접검증 후 직접검증 | | |
| | 검증주체 | 수출국 관세당국(간접), 수입국 관세당국(직접) | | |
| 제3국 발행 송장 | | 원산지증명서 제14번란 "Third Party Invoicing" 체크한 후, 송장 발급 회사의 상호와 국가명 기재 | | |

| 페이지 | 2022년 기본교재 내용 | 2023년 개정판 내용 | 비 고 |
|---|---|---|---|
| 48p |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 현행화 및 신규 협정 내용 추가 |

**2022년 기본교재 내용**

| 진행단계 | 상대국 | 추 진 현 황 | 의 의 |
|---|---|---|---|
| 발효 (18건) | 칠레 | 2004.04.01. 발효 |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
| | 싱가포르 | 2006.03.02. 발효 | ASEAN 시장의 교두보 |
| | EFTA(4개국) | 2006.09.01. 발효 | 유럽시장의 교두보 |
| | ASEAN(10개국) | 2007.06.01. 발효 |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2013년 기준)~~ |
| | 인도 | 2010.01.01. 발효 | BRICs국가, 거대시장 |
| | EU | 2011.07.01. 발효 | ~~세계 최대 경제권(GDP기준)~~ |
| | 페루 | 2011.08.01. 발효 |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
| | 미국 | 2012.03.15. 발효 | ~~거대 선진경제권~~ |
| | 튀르키예 | 2013.05.01. 발효 |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
| | 호주 | 2014.12.12. 발효 | ~~자원의 안정적 확보~~ |
| | 캐나다 | 2015.01.01. 발효 | ~~자원부국, 아시아 국가 최초 타결~~ |
| | 뉴질랜드 | 2015.12.20. 발효 |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
| | 베트남 | 2015.12.20. 발효 | 우리의 제4위 투자대상국~~(2015년 말 기준)~~ |
| | 중국 | 2015.12.20. 발효 | 우리의 제1위 교역상대국~~(2016년 기준)~~ |
| | 콜롬비아 | 2016.07.15. 발효 |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
| | 중미 | 2021.03.01. 전체발효 | ~~북미와 남미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 |
| | 영국 | 2021.01.01. 발효 |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
| | RCEP | 2022.02.01. 발효 |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
| 서명 | ~~인도네시아~~ | ~~2020.12.18. 정식서명~~ |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
| | ~~이스라엘~~ | ~~2021.05.12. 정식서명~~ | 창업국가 성장모델 |
| | ~~캄보디아~~ | ~~2021.10.26. 서명~~ |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
| 타결 | 필리핀 | ~~2021.10.26. 타결~~ |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
| 협상진행 | 한·중·일 | 2019.11. 제16차 협상 개최 |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
| | MERCOSUR | 2021.08. 제7차 협상 개최 | 남미 최대시장 |
| | 러시아 | 2019.06~2020.07 5차례 협상 개최 | ~~신북방 정책추진, 거대신흥시장~~ |
| | 말레이시아 | 2019.07~09. 3차례 협상 개최 |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

**2023년 개정판 내용**

| 진행단계 | 상대국 | 추 진 현 황 | 의 의 |
|---|---|---|---|
| 발효 (18건) | 칠레 | 2004.04.01. 발효 |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
| | 싱가포르 | 2006.03.02. 발효 | ASEAN 시장의 교두보 |
| | EFTA(4개국) | 2006.09.01. 발효 | 유럽시장의 교두보 |
| | ASEAN(10개국) | 2007.06.01. 발효 |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
| | 인도 | 2010.01.01. 발효 | BRICs국가, 거대시장 |
| | EU | 2011.07.01. 발효 | 거대 선진경제권 |
| | 페루 | 2011.08.01. 발효 |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
| | 미국 | 2012.03.15. 발효 | 세계 최대경제권 (GDP기준) |
| | 튀르키예 | 2013.05.01. 발효 |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
| | 호주 | 2014.12.12. 발효 |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
| | 캐나다 | 2015.01.01. 발효 | 북미 선진시장 |
| | 뉴질랜드 | 2015.12.20. 발효 |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
| | 베트남 | 2015.12.20. 발효 | 우리의 제4위 투자대상국 ('21년 기준) |
| | 중국 | 2015.12.20. 발효 | 우리의 제1위 교역상대국 ('21년 기준) |
| | 콜롬비아 | 2016.07.15. 발효 |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
| | 중미5개국 | 2021.03.01. 전체발효 | 중미 신시장 창출 |
| | 영국 | 2021.01.01. 발효 |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
| | RCEP | 2022.02.01. 발효 |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
| | 이스라엘 | 2022.12.01. 발효 | 창업 국가 성장모델 |
| | 캄보디아 | 2022.12.01. 발효 |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
| | 인도네시아 | 2023.01.01. 발효 |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
| 서명 | 필리핀 | 2021.10.26. 서명 |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
| 협상진행 | 한·중·일 | 2019.11. 제16차 협상 개최 |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
| | MERCOSUR | 2021.08. 제7차 협상 개최 | 남미 최대시장 |
| | 러시아 | 2019.06~2020.07 5차례 협상 개최 | 유라시아 진출 교두보 |
| | 말레이시아 | 2019.07~09. 3차례 협상 개최 |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

| 페이지 | 2022년 기본교재 내용 | 2023년 개정판 내용 | 비 고 |
|---|---|---|---|

**2022년 기본교재 내용**

| 진행단계 | 상대국 | 추 진 현 황 | 의 의 |
|---|---|---|---|
| | 에콰도르 | ~~2016.01~11. 5차례 협상 개최~~ |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
| | 우즈베키스탄 | 2021.11. 제2차 협상 개최 | 중앙아 최대시장 |
| | 아세안 추가자유화 | ~~2021.07. 제18차 이행위 개최~~ | 교역확대 및 통상환경 반영 |
| | 인도 업그레이드 | ~~2019.06. 제8차 개정협상 개최~~ | 교역확대 및 원산지기준 개선 |
| | 칠레 업그레이드 | 2021.10. 제6차 개선협상 개최 | 통상환경 변화 반영 |
| | 중국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 2020.10. 9차 개정협상 개최 | 우리의 제1위 서비스 수출국 |
| 협상재개 여건조성 | ~~EAEU~~ | ~~2017.09. 공동실무작업반 설치 합의~~ |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신흥시장~~ |
| | PA | ~~2019.09. 협상세칙 협의개시~~ | 중남미 신흥 시장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http://fta.go.kr/main)

**2023년 개정판 내용**

| 진행단계 | 상대국 | 추 진 현 황 | 의 의 |
|---|---|---|---|
| | 에콰도르 | 2022.11 제8차 협상 |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
| | 우즈베키스탄 | 2021.11. 제2차 협상 개최 | 중앙아 최대시장 |
| | 아세안 추가자유화 | 2010.10~2022.07 19차례 이행위원회 개최 | 교역확대 및 통상환경 반영 |
| | 인도 업그레이드 | 2016.10~2022.11 9차례 개선협상 개최 | 주력 수출품목양허· 원산지기준 개선 |
| | 칠레 업그레이드 | 2021.10. 제6차 개선협상 개최 | 통상환경 변화 반영 |
| | 중국 서비스 · 투자 후속협상 | 2020.10. 9차 개정협상 개최 | 우리의 제1위 서비스 수출국 |
| |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협상 | 2021.10.12. 협의 개시<br>2021.11.18. 수석대표 회의 | 중미 최대 교역파트너,<br>북-남미 진출 교두보 |
| | GCC | 2007~2009 3차례 협상 개최<br>2010.1월 협상 중단(GCC측의 FTA 전면재검토 사유)<br>2021.1월 공식 재개 합의<br>2022.3월 4차 협상(재개 후 첫 협상) 개최<br>2022.6월 5차 협상 개최 | 자원부국, 중동 시장 진출 교두보 |
| 협상재개 여건조성 | 멕시코 | 2005.09 한-멕 SECA 추진합의<br>2006.02~2008.06 SECA 3차례, FTA 2차례 협상후 중단<br>2022.03 협상 재개 선언 | 중남미 주요 교역파트너 |
| | PA | 2018.05 국회보고<br>2020.12 PA 준회원국 가입 ToR 협의<br>2022.01 연내 협상개시 합의 | 중남미 신흥시장 |
| | 영국 | 2022.2.7 한-영 FTA 무역위 계기 연내 개선협상 추진 합의<br>※ 협정문상 발효(21.1.1.) 후 2년 내 개선협상 개시의무 | 유럽지역 교두보 확보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http://fta.go.kr/main)_2023.2월 기준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
<td>50p</td>
<td>
＼협정별 원산지절차 비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발효일</th><th colspan="4">원산지증명서</th><th rowspan="2">원산지 검증</th></tr>
<tr><th>발급주체</th><th>서식</th><th>유효기간</th><th>제출면제기준</th></tr>
<tr><td>한-이스라엘</td><td>-</td><td>지정된 기관에서 발급<br>* 이스라엘-재무부 조세당국 관세국<br>* 한국-세관, 상의 인증 수출자, 수출자 (미화 1천달러 미만물품) 자율 발급</td><td>통일증명서식<br>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 기재</td><td>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2개월</td><td>미화 1,000달러 이하의 개인 소포 및 여행자 수화물</td><td>간접검증→ 직접검증 (방문조사)</td></tr>
<tr><td>한-인도네시아</td><td>-</td><td>지정된 기관에서 발급<br>* 인니-통상부<br>* 한국-세관, 상의 인증수출자~~(향후도입)~~</td><td>통일증명서식</td><td>발급일 부터 1년</td><td>미화 200달러 이하 또는 수입국이 정한 금액 이하</td><td>간접검증→ 직접검증 (방문조사)</td></tr>
</table>
※ 관련 세부사항은 개별 협정문 및 FTA관세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d>
<td>
＼협정별 원산지절차 비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발효일</th><th colspan="4">원산지증명서</th><th rowspan="2">원산지 검증</th></tr>
<tr><th>발급주체</th><th>서식</th><th>유효기간</th><th>제출면제기준</th></tr>
<tr><td>한-이스라엘</td><td>2022.12.01.</td><td>지정된 기관에서 발급<br>* 이스라엘-재무부 조세당국 관세국<br>* 한국-세관, 상의 인증 수출자, 수출자 (미화 1천달러 미만물품) 자율 발급</td><td>통일증명서식<br>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 기재</td><td>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2개월</td><td>미화 1,000달러 이하의 개인 소포 및 여행자 수화물</td><td>간접검증→ 직접검증 (방문조사)</td></tr>
<tr><td>한-캄보디아</td><td>2022.12.01.</td><td>지정된 기관에서 발급<br>* 캄보디아-상무부<br>* 한국-세관, 상의 인증수출자</td><td>통일증명서식</td><td>발급일 또는 작성일 부터 1년</td><td>수입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 이하인 수입 물품 또는 수입국이 정한 그보다 높은 금액 이하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한 경우, 수입 당사국이 요건을 면제한 상품인 경우</td><td>간접검증 후 직접검증</td></tr>
<tr><td>한-인도네시아</td><td>2023.01.01.</td><td>지정된 기관에서 발급<br>* 인니-통상부<br>* 한국-세관, 상의 인증수출자(향후도입)</td><td>통일증명서식</td><td>발급일 부터 1년</td><td>미화 200달러 이하 또는 수입국이 정한 금액 이하</td><td>간접검증→ 직접검증 (방문조사)</td></tr>
</table>
※ 관련 세부사항은 개별 협정문 및 FTA관세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d>
<td>현행화 및 신규 협정 내용 추가</td>
</tr>
</table>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
<td>60p</td>
<td>
<h1>1. 당사국(a Party) 개념</h1>
- 중략 -<br>
현재 우리나라가 발효 중인 ~~18개~~ 협정 중 체약상대국의 당사국이 다수인 협정은 EFTA·아세안·EU·중미와 맺은 FTA 및 RCEP 협정이다. 한-EU FTA에서는 당사국을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설립조약에서의 유럽공동체(EU) 및 그 회원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27개 개별 회원국과 EU 자체가 당사국으로 인정된다. 즉, EU 회원국과는 별도로 EU 자체가 당사국으로 인정되므로 EU 역내를 하나의 당사국 개념으로 보아 EU 역내에서 가공·생산되고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은 협정관세적용 대상이 된다.<br>
반면, 한-아세안 FTA에서는 '당사국'을 「대한민국 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한-EFTA FTA에서는 「대한민국·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위스」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 ~~2~~개 협정에서는 개별 회원국이 당사국으로 인정되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이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체는 당사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br>
＼1+n 협정의 '당사국' 범위 규정＼
<table>
<tr><th>협 정</th><th>당사국 정의</th></tr>
<tr><td>EFTA</td><td>대한민국·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위스를 말함. 리히텐슈타인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스위스를 원산지로 간주</td></tr>
<tr><td>아세안</td><td>대한민국 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인도네시아·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td></tr>
<tr><td>EU</td><td>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설립조약에서의 유럽공동체(EU) 및 그 회원국</td></tr>
<tr><td>중미</td><td>대한민국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중미 국가 간에는 적용 안 됨)</td></tr>
<tr><td>기타 협정</td><td>칠레·싱가포르·인도·미국·페루·튀르키예·호주·캐나다·콜롬비아·중국·뉴질랜드·베트남과의 FTA에서는 양쪽 체약국이 모두 1개 국가이므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td></tr>
</table>
</td>
<td>
<h1>1. 당사국(a Party) 개념</h1>
- 중략 -<br>
현재 우리나라가 발효 중인 21개 협정 중 체약상대국의 당사국이 다수인 협정은 EFTA·아세안·EU·중미와 맺은 FTA 및 RCEP 협정이다. 한-EU FTA에서는 당사국을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설립조약에서의 유럽공동체(EU) 및 그 회원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27개 개별 회원국과 EU 자체가 당사국으로 인정된다. 즉, EU 회원국과는 별도로 EU 자체가 당사국으로 인정되므로 EU 역내를 하나의 당사국 개념으로 보아 EU 역내에서 가공·생산되고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은 협정관세적용 대상이 된다.<br>
반면, 한-아세안 FTA에서는 '당사국'을 「대한민국 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한-EFTA FTA에서는 「대한민국·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위스」, RCEP은 협정이 효력이 있는 모든 국가 또는 개별 관세영역을 규정하고 있어, 이들 3개 협정에서는 개별 회원국이 당사국으로 인정되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이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RCEP 자체는 당사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br>
＼1+n 협정의 '당사국' 범위 규정＼
<table>
<tr><th>협 정</th><th>당사국 정의</th></tr>
<tr><td>EFTA</td><td>대한민국·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위스를 말함. 리히텐슈타인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스위스를 원산지로 간주</td></tr>
<tr><td>아세안</td><td>대한민국 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인도네시아·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td></tr>
<tr><td>EU</td><td>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설립조약에서의 유럽공동체(EU) 및 그 회원국</td></tr>
<tr><td>중미</td><td>대한민국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중미 국가 간에는 적용 안 됨)</td></tr>
<tr><td>RCEP</td><td>대한민국과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td></tr>
<tr><td>기타 협정</td><td>칠레·싱가포르·인도·미국·페루·튀르키예·호주·캐나다·콜롬비아·중국·뉴질랜드·베트남과의 FTA에서는 양쪽 체약국이 모두 1개 국가이므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td></tr>
</table>
</td>
<td>발효건수 업데이트<br><br>및<br><br>신규 협정 내용 추가</td>
</tr>
</table>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td>63p<br>6번째줄</td><td>~~이와 같이 당사국이 아닌 나라에서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br>우리나라가 맺은 FTA는 중개무역 등의 이유로 비당사국 인으로부터 송장이 발급된 경우라 하더라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 거래당사자에 의해 발급되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 발급(비당사국 인으로부터 송장 발급)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는 협정이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br>＼제3국 송장 정보 협정별 기재유무＼<br><table><tr><th>C/O상 제3국 송장 발급 정보 기재 협정</th><th>C/O상 제3국 송장 발급 정보 미기재 협정</th></tr><tr><td>칠레·아세안·인도·중국·베트남·RCEP·인도네시아</td><td>튀르키예·호주·뉴질랜드·콜롬비아·중미·싱가포르·EFTA·EU·페루·미국·캐나다·영국</td></tr></table></td><td>우리나라가 맺은 FTA는 중개무역 등의 이유로 비당사국 인으로부터 송장이 발급된 경우라 하더라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 거래당사자에 의해 발급되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 발급(비당사국 인으로부터 송장 발급)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는 협정이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br>＼제3국 송장 정보 협정별 기재유무＼<br><table><tr><th>C/O상 제3국 송장 발급 정보 기재 협정</th><th>C/O상 제3국 송장 발급 정보 미기재 협정</th></tr><tr><td>칠레·아세안·인도·중국·베트남·RCEP·캄보디아·인도네시아</td><td>튀르키예·호주·뉴질랜드·콜롬비아·중미·싱가포르·EFTA·EU·페루·미국·캐나다·영국·이스라엘</td></tr></table></td><td>내용삭제<br><br>내용추가</td></tr>
<tr><td>64p</td><td>- 표 내용추가 -<br><br>여타의 협정들이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 발행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협정상 제3국 송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싱가포르· EFTA·EU·페루·미국·캐나다·영국과의 FTA는 제3국 송장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들 협정에서는 비당사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다 할지라도 협정상 유효한 거래당사자인 수출자 혹은 생산자 등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td><td><table><tr><td>캄보디아</td><td>작 성 방 법<br>16. 제14란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Third Party Invoicing”에 "√"표시를 하고 송장을 발급한 회사의 상호와 국가명을 해당 란에 적습니다.</td></tr></table><br>여타의 협정들이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 발행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협정상 제3국 송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싱가포르· EFTA·EU·페루·미국·캐나다·영국·이스라엘과의 FTA는 제3국 송장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들 협정에서는 비당사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다 할지라도 협정상 유효한 거래당사자인 수출자 혹은 생산자 등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td><td>내용추가</td></tr>
</table>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td>72p</td><td>

## 1 FTA관세~~특례~~법 체계

우리나라는 EU나 미국 등 지역무역협정 체제에 먼저 진입한 국가들보다는 늦게 출발하였지만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옴으로써 ~~2022년 2월 현재 18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중이다. 한편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및 캄보디아와~~ FTA는 타결되어 해당 당사국의 국내 비준절차 등이 완료되면 발효될 예정이다.

</td><td>

## 1 FTA관세법 체계

우리나라는 EU나 미국 등 지역무역협정 체제에 먼저 진입한 국가들보다는 늦게 출발하였지만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옴으로써 2023년 2월 현재 21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중이다. 한편 필리핀과의 FTA는 타결되어 해당 당사국의 국내 비준절차 등이 완료되면 발효될 예정이다.

</td><td>현행화</td></tr>
<tr><td>73p<br>표</td><td>

＼FTA 법령체계＼

<table>
<tr><th>발효 FTA</th><th>국내법령</th></tr>
<tr><td>• 한·칠레 FTA<br>• 한·싱가포르 FTA<br>• 한·EFTA FTA<br>• 한·ASEAN FTA<br>• 한·인도 CEPA<br>• 한·EU FTA<br>• 한·페루 FTA<br>• 한·미 FTA<br>• 한·튀르키예 FTA<br>• 한·호주 FTA<br>• 한·캐나다 FTA<br>• 한·뉴질랜드 FTA<br>• 한·베트남 FTA<br>• 한·중 FTA<br>• 한·콜롬비아 FTA<br>• 한·중미 FTA<br>• 한·영 FTA<br>• RCEP</td><td>• FTA관세법<br>• FTA관세법시행령<br>• FTA관세법시행규칙<br>•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FTA관세~~특례~~ 고시)<br>•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원산지인증수출자~~-~~고시) 등</td></tr>
</table>

</td><td>

＼FTA 법령체계＼

<table>
<tr><th>발효 FTA</th><th>국내법령</th></tr>
<tr><td>• 한·칠레 FTA<br>• 한·싱가포르 FTA<br>• 한·EFTA FTA<br>• 한·ASEAN FTA<br>• 한·인도 CEPA<br>• 한·EU FTA<br>• 한·페루 FTA<br>• 한·미 FTA<br>• 한·튀르키예 FTA<br>• 한·호주 FTA<br>• 한·캐나다 FTA<br>• 한·뉴질랜드 FTA<br>• 한·베트남 FTA<br>• 한·중 FTA<br>• 한·콜롬비아 FTA<br>• 한·중미 FTA<br>• 한·영 FTA<br>• RCEP<br>• 한·이스라엘 FTA<br>• 한·캄보디아 FTA<br>• 한·인도네시아 CEPA</td><td>• FTA관세법<br>• FTA관세법시행령<br>• FTA관세법시행규칙<br>•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FTA관세법사무처리고시)<br>•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원산지인증수출자고시) 등</td></tr>
</table>

</td><td>신규 협정 추가</td></tr>
</table>

| 페이지 | 2022년 기본교재 내용 | 2023년 개정판 내용 | 비 고 |
|---|---|---|---|
| 74p<br>표하단 | ~~최근에는~~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는 수입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가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FTA 관세특례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2021.12월) | 2021년에는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는 수입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가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FTA관세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2021.12월) | 수정 |
| 79p | xvii)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영역<br><br>- 신규 협정 내용 추가 - | x vii)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영역<br>x viii) 캄보디아: 캄보디아왕국의 영역과 캄보디아왕국이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및 상공 | 신규 협정 추가 |
| 84p | 2 ~~FTA관세특례고시~~ 등 용어<br><br>1. ~~FTA관세특례고시~~상 용어의 정의<br><br>- 중략 -<br><br>⑤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이란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또는 관세청 FTA포털 (http://www.customs. go.kr/ftaportalkor/main.do)을 말한다.<br><br>3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 2 FTA관세법사무처리고시 등 용어<br><br>1. FTA관세법 사무처리 고시상 용어의 정의<br><br>- 중략 -<br><br>⑤ "지정 정보통신망"이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또는 관세청 FTA포털(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을 말한다.<br><br>1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사무처리고시") | 용어 변경<br>·<br>개정내용 반영 |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td>86p</td><td>④ “특별긴급관세”라 함은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 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관세법 제68조)</td><td>④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라 함은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 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관세법 제68조)</td><td>용어 명 보완</td></tr>
<tr><td>88p<br>중간 표</td><td>＼협정별 영문본과 국문본의 관계 구분＼<br><table><tr><th>구분</th><th>영문 협정문을 우선하도록 규정</th><th>국문본과 영문본을 동등한 정본으로 규정</th></tr><tr><td>협정</td><td>칠레·싱가포르·EFTA·아세안·인도·페루·튀르키예·콜롬비아·중국·베트남·중미·인도네시아</td><td>미국·EU·호주·캐나다·뉴질랜드·영국</td></tr></table></td><td>＼협정별 영문본과 국문본의 관계 구분＼<br><table><tr><th>구분</th><th>영문 협정문을 우선하도록 규정</th><th>국문본과 영문본을 동등한 정본으로 규정</th></tr><tr><td>협정</td><td>칠레·싱가포르·EFTA·아세안·인도·페루·튀르키예·콜롬비아·중국·베트남·중미·이스라엘·캄보디아·인도네시아</td><td>미국·EU·호주·캐나다·뉴질랜드·영국</td></tr></table></td><td>신규 협정 추가</td></tr>
<tr><td>96p<br>하단</td><td>- 신규 협정 내용 추가 -</td><td>21. 한-캄보디아 FTA<br><br>법 제4조제1항 및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캄보디아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7과 같다.(시행령 제2조제22항)</td><td>신규협정 추가</td></tr>
<tr><td>97p</td><td>＼협정관세 적용품목 및 세율＼<br><table><tr><th>구분</th><th>협정관세율 근거</th><th>협정관세 적용품목 및 세율</th></tr><tr><td>한-칠레 FTA</td><td>시행령 제2조제1항</td><td>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별표 1</td></tr><tr><td>중략</td><td>중략</td><td>중략</td></tr><tr><td>RCEP</td><td>시행령 제2조제21항</td><td>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별표 17의6</td></tr></table></td><td>＼협정관세 적용품목 및 세율＼<br><table><tr><th>구분</th><th>협정관세율 근거</th><th>협정관세 적용품목 및 세율</th></tr><tr><td>한-칠레 FTA</td><td>시행령 제2조제1항</td><td>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별표 1</td></tr><tr><td>중략</td><td>중략</td><td>중략</td></tr><tr><td>RCEP</td><td>시행령 제2조제21항</td><td>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별표 17의6</td></tr><tr><td>한-캄보디아 FTA</td><td>시행령 제2조제22항</td><td>FTA관세법 시행령 별표 17의7</td></tr></table></td><td>순서변경<br><br>및<br><br>신규협정 추가</td></tr>
</table>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td>98p<br>하단 각주</td><td>35) 한-ASEAN FTA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br>6. 수출국가가 일정 관세품목을 일반품목군에 배치한다면, 그 수출국가는 어느 수입국가가 동 관세품목에 대해 이 부속서 또는 부속서 2의 관련된 계획표에 규정된 의무와 조건과 함께 동 계획표에 구체화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대로 정한 관세양허를 향유한다. 이러한 권리는 그 수출국가가 그 관세품목의 관세 인하 및 철폐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준수유하는 한~~ 향유된다.</td><td>35) 한-ASEAN FTA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br>6. 수출국가가 일정 관세품목을 일반품목군에 배치한다면, 그 수출국가는 어느 수입국가가 동 관세품목에 대해 이 부속서 또는 부속서 2의 관련된 계획표에 규정된 의무와 조건과 함께 동 계획표에 구체화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대로 정한 관세양허를 향유한다. 이러한 권리는 그 수출국가가 그 관세품목의 관세 인하 및 철폐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준하는 한 향유된다.</td><td>각주 오타 수정</td></tr>
<tr><td>103p<br>하단 각주</td><td>38)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br>- 중략 -<br>② 영 제3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유럽연합당사자, 미합중국 및 중국을 말한다.</td><td>38)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br>- 중략 -<br>② 영 제3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유럽연합당사자, 미합중국, 중국 및 영국을 말한다.</td><td>각주 현행화</td></tr>
<tr><td>106p</td><td>\관세법상 관세율 적용순위\
<table>
<tr><th>순위</th><th>관세율의 종류</th><th>적용순위</th></tr>
<tr><td>1</td><td>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관세법 제69조제2호)</td><td>가장 우선 적용</td></tr>
<tr><td>2</td><td>FTA 협정관세</td><td>3, 4, 5, 6, 7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td></tr>
<tr><td rowspan="2">3</td><td>WTO일반양허관세(공산품 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단순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설정물품에 대한 양허관세)<br>WTO개도국간의 양허관세(TNDC)<br>아태협정(APTA)양허관세(일반양허, 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관세, 라오스에 대한 양허관세)<br>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협정관세(GSTP),<br>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td><td>4, 5, 6, 7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td></tr>
<tr><td>WTO일반양허관세(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br>아태협정(APTA)~~영허~~관세(녹차와 누에고치의 일반 양허관세)</td><td>6, 7보다 우선하여 적용, 4, 5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적용</td></tr>
<tr><td rowspan="2">4</td><td>조정관세(관세법 제69조제1·3·4호), 계절관세</td><td>5, 6, 7보다 우선 적용</td></tr>
<tr><td>할당관세</td><td>5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적용, 6, 7보다 우선 적용</td></tr>
<tr><td>5</td><td>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GSP)</td><td>6, 7보다 우선적용</td></tr>
<tr><td>6</td><td>잠정관세</td><td>7보다 우선 적용</td></tr>
<tr><td>7</td><td>기본관세</td><td></td></tr>
</table></td><td>\관세법상 관세율 적용순위\
<table>
<tr><th>순위</th><th>관세율의 종류</th><th>적용순위</th></tr>
<tr><td>1</td><td>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관세법 제69조제2호)</td><td>가장 우선 적용</td></tr>
<tr><td>2</td><td>FTA 협정관세</td><td>3, 4, 5, 6, 7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td></tr>
<tr><td rowspan="2">3</td><td>WTO일반양허관세(공산품 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단순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설정물품에 대한 양허관세)<br>WTO개도국간의 양허관세(TNDC)<br>아태협정(APTA)양허관세(일반양허, 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관세, 라오스에 대한 양허관세)<br>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협정관세(GSTP),<br>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br>편익관세</td><td>4, 5, 6, 7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td></tr>
<tr><td>WTO일반양허관세(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br>아태협정(APTA)양허관세(녹차와 누에고치의 일반 양허관세)</td><td>6, 7보다 우선하여 적용, 4, 5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적용</td></tr>
<tr><td rowspan="2">4</td><td>조정관세(관세법 제69조제1·3·4호), 계절관세</td><td>5, 6, 7보다 우선 적용</td></tr>
<tr><td>할당관세</td><td>5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적용, 6, 7보다 우선 적용</td></tr>
<tr><td>5</td><td>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GSP)</td><td>6, 7보다 우선적용</td></tr>
<tr><td>6</td><td>잠정관세</td><td>7보다 우선 적용</td></tr>
<tr><td>7</td><td>기본관세</td><td></td></tr>
</table></td><td>내용 추가 및 오타 수정</td></tr>
</table>

| 페이지 | 2022년 기본교재 내용 | 2023년 개정판 내용 | 비 고 |
|---|---|---|---|
| 110p | 2) 칠레, EU, 페루, 튀르키예, 콜롬비아, 베트남, 중국, 영국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br><br>기획재정부장관은 칠레,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튀르키예, 콜롬비아, 베트남, 중국, 영국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시행령 제22조제3항) | 2) 칠레, EU, 페루, 튀르키예, 콜롬비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영국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br><br>기획재정부장관은 칠레,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튀르키예, 콜롬비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영국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시행령 제22조제3항) | 협정 추가 |
| 115p | - 신규 협정 내용 추가 - | ⑬ 기획재정부장관은 캄보디아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5.5조제3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 내용 추가 |
| 116p | 6.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br><br>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법 제22조제4항)<br>~~타만,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는 체약상대국이 싱가포르·페루·미합중국· 튀르키예·호주·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역내경제협정당사국·중국·중미공화국들·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 외의 국가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시행령 제27조) | 6.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br><br>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법 제22조제4항)<br>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하는 조치는 다음의 체약상대국 싱가포르·페루·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튀르키예·호주·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역내경제협정당사국·캄보디아·중국·중미공화국들·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에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시행령 제27조) | 내용 변경 |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td></td><td>＼협정별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적용 여부＼
<table>
<tr><th>적 용</th><th>미 적 용</th></tr>
<tr><td>싱가포르·페루·미국(자동차 제외)·튀르키예·호주·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역내경제협정당사국·중국·중미공화국·인도네시아·이스라엘</td><td>칠레·EFTA·아세안·인도·EU·캐나다·영국</td></tr>
</table></td><td>＼협정별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적용 여부＼
<table>
<tr><th>적 용</th><th>미 적 용</th></tr>
<tr><td>싱가포르·페루·미국(자동차 제외)·튀르키예·호주·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역내경제협정당사국·캄보디아·중국·중미공화국·인도네시아·이스라엘</td><td>칠레·EFTA·아세안·인도·EU·캐나다·영국</td></tr>
</table></td><td></td></tr>
<tr><td>119p</td><td>1 협정관세 적용신청제도의 도입배경<br><br>- 중략 -<br>모든 FTA의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대신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입자는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소지하고 있으면 된다. 만약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 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td><td>1 협정관세 적용신청제도의 도입배경<br><br>- 중략 -<br>모든 FTA의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대신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입자는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소지하고 있으면 된다. 만약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 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td><td>내용 추가</td></tr>
<tr><td>121p<br>하단 각주</td><td>45)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인도 CEPA, 한-EU FTA, 한-튀르키예 FTA, 한-중 FTA, 한-영 FTA, 한-콜롬비아 FTA, 한-중미 FTA, RCEP 협정</td><td>45)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인도 CEPA, 한-EU FTA, 한-튀르키예 FTA, 한-중 FTA, 한-영 FTA, 한-콜롬비아 FTA, 한-중미 FTA, RCEP, 한-캄보디아 FTA</td><td>각주<br>내용 추가</td></tr>
</table>

| 페이지 | 2022년 기본교재 내용 | 2023년 개정판 내용 | 비 고 |
|---|---|---|---|
| 123p<br>하단 각주 | 46 ~~FTA관세특례고시~~ 제15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확인) ②영 제4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br>1. 하나의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br>2.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br>47) ~~FTA관세특례고시~~ 제14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간이하게 할 수 있다.<br>1. 수입신고서 19번(원산지증명서 여부)란에 '×'표시<br>2. 수입신고서 46번(원산지)란에 상품의 원산지 국가부호 기재<br>3. 수입신고서 50번(세율)란에 FTA관세율 구분부호 기재 | 46) FTA관세법사무처리고시 제15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확인) ②영 제4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br>1. 하나의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br>2.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br>47) FTA관세법사무처리고시 제14조(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간이하게 할 수 있다.<br>1. 수입신고서 19번(원산지증명서 여부)란에 '×'표시<br>2. 수입신고서 46번(원산지)란에 상품의 원산지 국가부호 기재<br>3. 수입신고서 50번(세율)란에 FTA관세율 구분부호 기재 | 각주<br>내용 변경 |
| 125p<br>상단 표 | ~~「FTA관세특례고시」~~ 별표 2에 게시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FTA관세특례고시~~ 제16조제1항)<br>1.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br>2.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물품<br>3.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발행된 송장 물품<br>또한 다음 각 호의 경우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FTA관세특례고시~~ 제16조제2항)<br>1.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br>2.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 「FTA관세법사무처리고시」 별표 2에 게시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FTA관세법사무처리고시 제16조제1항)<br>1.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br>2.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물품<br>3.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발행된 송장 물품<br>또한 다음 각 호의 경우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FTA관세법사무처리고시 제16조제2항)<br>1.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br>2.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 내용 변경 |
| 129p | 4. 체약상대국에서 협정관세 사후적용<br><br>~~우리나라 수출물품도 체약상대국에서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체약상대국에서도~~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등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협정관세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건의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보완하여 특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정에 규정하고 있다. | 4. 체약상대국에서 협정관세 사후적용<br><br>체약상대국이 우리나라 수출물품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등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협정관세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건의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보완하여 특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정에 규정하고 있다. | 문구 삭제<br>및 변경 |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td>129~<br>130p<br>표</td><td>＼협정별 사후적용 신청＼<br><table><tr><th>협정</th><th>조문</th><th>신청시기</th></tr><tr><td>칠레</td><td>제5.3조</td><td>• 수입된 일자 이후 1년 이내</td></tr><tr><td>인도</td><td>제4.8조</td><td>• 수입일 이후 적어도 1년<br>•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그 이상의 기간 이내</td></tr><tr><td>중략</td><td>중략</td><td>중략</td></tr><tr><td>RCEP</td><td>제3.23조</td><td>• 수입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td></tr><tr><td>인도네시아</td><td>제3.18조</td><td>• 수입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td></tr></table></td><td>＼협정별 사후적용 신청＼<br><table><tr><th>협정</th><th>조문</th><th>신청시기</th></tr><tr><td>칠레</td><td>제5.3조</td><td>• 수입된 일자 이후 1년 이내</td></tr><tr><td>싱가포르</td><td>제5.3조</td><td>• 수입당사국의 국내법 및 규정에 따른 기간 내</td></tr><tr><td>EFTA</td><td>제17조</td><td>• 수입당사국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td></tr><tr><td>인도</td><td>제4.8조</td><td>• 수입일 이후 적어도 1년<br>•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그 이상의 기간 이내</td></tr><tr><td>중략</td><td>중략</td><td>중략</td></tr><tr><td>RCEP</td><td>제3.23조</td><td>• 수입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td></tr><tr><td>이스라엘</td><td>제3.22조</td><td>• 수입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br>• 수입통관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td></tr><tr><td>캄보디아</td><td>제3.21조</td><td>• 수입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td></tr><tr><td>인도네시아</td><td>제3.18조</td><td>• 수입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td></tr></table></td><td>협정 추가</td></tr>
<tr><td>131p</td><td>＼협정별 사후적용 신청 규정＼<br>① 한-칠레 FTA<br>- 내용 동일 -<br>- 내용 추가 -</td><td>＼협정별 사후적용 신청 규정＼<br>① 한-칠레 FTA<br>- 내용 동일 -<br>② 한-싱가포르 FTA<br>제5.3조 특혜관세신청<br>4. 수입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증빙서류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br>가. 수입자가 수입시 수입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할 것. 그리고<br>나.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증빙서류를 관세납부일부터 수입당사국의 국내법률 및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제출할 것</td><td>내용 추가<br>및<br>번호수정</td></tr>
</table>

| 페이지 | 2022년 기본교재 내용 | 2023년 개정판 내용 | 비 고 |
|---|---|---|---|
| | - 내용 추가 -<br><br>② 한-인도 FTA<br>- 내용 동일 - | ③ 한-EFTA<br>제17조 수입요건<br>6.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당사국은 수입시 수입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br>가. 수입자가 수입시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의사표시를 하고,<br>나. 수입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br>④ 한-인도 FTA<br>- 내용 동일 - | |
| 133p | ⑪ 한-베트남 FTA<br>3.16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br>4. 각 당사국은 상품이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수입자가 수입당시 특혜관세대우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 수입자가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입당사국에게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납부하였던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ㅂ | ⑬ 한-베트남 FTA<br>제3.16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br>4. 각 당사국은 상품이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수입자가 수입당시 특혜관세대우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 수입자가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입당사국에게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납부하였던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문구<br>'제' 삽입 |
| 134p | ⑭ RCEP 협정<br>- 내용 동일 -<br><br>- 내용추가 - | ⑯ RCEP 협정<br>- 내용 동일 -<br><br>⑰ 한-이스라엘 FTA<br>제3.22조 원산지증명의 제출<br>3. 수입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입시 원산지증명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상품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다만,<br>가. 수입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수입자가 수입 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br>나. 수입당사국의 법에 따른 기한내에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증명이 제출되어야 한다.<br>※ 이스라엘에서 원산지 증명은 상품의 통관 시점 내에 관세 당국에 제출되거나, 제3.22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통관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제출된다. 다만, 통관 시점에,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신고되었어야 한다. | 신규 내용<br>추가 |

| 페이지 | 2022년 기본교재 내용 | 2023년 개정판 내용 | 비 고 |
|---|---|---|---|
| | - 내용추가 -<br><br>⑮ 인도네시아 CEPA<br>- 내용 동일 - | ⑱ 한-캄보디아 FTA<br>제3.21조 수입 후 특혜관세대우의 신청<br>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이 그 당사국으로 수입되었을 때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는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그리고 그 상품이 수입된 날 후 그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에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않은 결과로 납부된 모든 초과 관세,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br>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원산지증명 및 그 밖의 증거, 그리고<br>나. 신청된 특혜관세대우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하여 관세행정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그러한 서류<br>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의사를 수입 시 그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br><br>⑲ 인도네시아 CEPA<br>- 내용 동일 - | |
| 135p<br>5번째줄 | 법 제8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아래의 각 호와 같다. (시행규칙 제6조제1항)<br>①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물품<br>②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br><br>- 내용추가 -<br><br>세관장이 관세체납자의 수입물품(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대한 협정관세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시 제17조~~) | 법 제8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아래의 각 호와 같다. (시행규칙 제6조제1항)<br>①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물품<br>②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br>③ 그 밖에 협정관세율과 세율 차이가 큰 물품 등 수입신고 수리 후에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br><br>세관장이 관세체납자의 수입물품(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대한 협정관세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사무처리고시 제17조) | 개정내용 추가<br><br>및<br><br>고시명 변경 |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td>136p</td><td>■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4. 1.~~><br>협정관세 적용신청서 (갑지 및 을지)<br>※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5쪽 중 제1쪽)<br>※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br>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즉시<br>1.수입신고번호 |<br>2.수입자: 상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통관고유부호</td><td>■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7. 5.><br>협정관세 적용신청서 (갑지 및 을지)<br>※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5쪽 중 제1쪽)<br>※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br>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즉시<br>1.수입신고번호 |<br>2.수입자: 상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통관고유부호<br>※ 개정표 70 페이지 상세 양식 확인</td><td>개정 서식 반영</td></tr>
<tr><td>146p<br>1번째줄</td><td>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칠레·페루·미합중국·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의 물품 중 제6호의 물품으로 한정하고,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하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시행규칙 제30조제1항)</td><td>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칠레 · 페루 · 미합중국 · 캐나다 · 콜롬비아 · 뉴질랜드 · 캄보디아 · 베트남 · 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의 물품 중 제6호의 물품으로 한정하고,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하며, 캄보디아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시행규칙 제30조제1항)</td><td>신규협정 추가</td></tr>
<tr><td>147p</td><td>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으려는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br>-내용 추가-</td><td>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으려는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br>⑪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td><td>내용 추가</td></tr>
</table>

| 페이지 | 2022년 기본교재 내용 | 2023년 개정판 내용 | 비 고 |
|---|---|---|---|
| 148p | **2. 수리 또는 개조 후 재수입면제**<br><br>수리 또는 개조 등을 할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법 제30조제1항제2호)<br>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 · 이스라엘 · ~~싱가포르~~[56]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해당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시행규칙 제30조제4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법 제30조제2항)<br>- 중략 -<br><br>**3. 상용견품·광고물 등의 관세면제**<br><br>일정 금액 이하의 상용견품(商用見品)·광고용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법 제30조제1항제3호)<br>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 · 페루 · 미합중국 · 호주 · 캐나다 · 콜롬비아 · 뉴질랜드 · 베트남 · 중국 · 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 다만,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한하여 제1호의 물품 중 담배는 제외하고, 제3호 물품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정하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시행규칙 제30조제6항)<br><br>56)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싱가포르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2022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함(시행규칙 부칙 제2조, 2021.12.31. 일부개정)~~ | **2. 수리 또는 개조 후 재수입면제**<br><br>수리 또는 개조 등을 할 목적으로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법 제30조제1항제2호)<br>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 · 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해당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시행규칙 제30조제4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법 제30조제2항)<br>- 중략 -<br>-<br>**3. 상용견품·광고물 등의 관세면제**<br><br>일정 금액 이하의 상용견품(商用見品)·광고용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법 제30조제1항제3호)<br>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 · 페루 · 미합중국 · 호주 · 캐나다 · 콜롬비아 · 뉴질랜드 · 캄보디아 · 베트남 · 중국 · 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 다만,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한하여 제1호의 물품 중 담배는 제외하고, 제3호 물품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정하며, 캄보디아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시행규칙 제30조제6항) | 싱가포르 한시적 면제 기한 만료로 내용 삭제<br>·<br>각주 삭제<br>·<br>내용 추가 |

| 페이지 | 2022년 기본교재 내용 | 2023년 개정판 내용 | 비 고 |
|---|---|---|---|
| 149p<br>표 |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요약)＼<br>• 일시수입물품 면세(법§30①1, 규칙§30①~③)<br>- 대상국가: 칠레·페루·미합중국·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br>- 일시수입물품의 범위(호주는 ⑥, 중국은 ①~④,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①~⑤에 한정)<br>① 방송장비 등 영업활동·직업수행용 전문장비, ② 전시·시연용 물품<br>③ 운동경기용 물품, ④ 상용견품, ⑤ 광고용 필름·기록물, ⑥ 수리·개조용 물품<br>- 관세 면제요건<br>① 체약상대국의 국민 또는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칠레·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칠레·캐나다의 국민 또는 칠레·캐나다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물품을 반입하여야 함)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되거나 직접적인 감독 하에서 사용될 것<br>②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임대되지 아니할 것<br>③ 재수출될 때까지 다른 물품과의 식별이 가능할 것<br>④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수량 이내일 것<br>• 수리·개조 후 재수입 면세(법§30①2, 규칙§30④ 및 ⑤)<br>- 대상국가: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이스라엘·~~싱가포르~~ 및 중미 공화국들<br>~~※ 싱가포르는 2022.1.1.부터 2022.12.31.까지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함~~<br>- 수리 또는 개조의 제외 범위<br>①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물품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작업이나 과정<br>② 미완성 상태의 물품을 완성품으로 생산 또는 조립하는 작업이나 과정<br>• 상용견품·광고물 면세(법§30①3, 규칙§30⑥)<br>- 대상국가 : 칠레 · 페루 · 미합중국 · 호주 · 캐나다 · 콜롬비아 · 뉴질랜드 · 베트남 · 중국 · 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br>- 견품 등의 범위(뉴질랜드는 ①에서 담배 제외, ③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 되는 물품으로 한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①로 한정)<br>① 상용견품, ② 인쇄광고물, ③ 영 제35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물품 |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요약)＼<br>• 일시수입물품 면세(법§30①1, 규칙§30①~③)<br>- 대상국가: 칠레·페루·미합중국·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캄보디아·베트남·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br>- 일시수입물품의 범위(호주는 ⑥, 중국은 ①~④, 캄보디아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①~⑤에 한정)<br>① 방송장비 등 영업활동·직업수행용 전문장비, ② 전시·시연용 물품<br>③ 운동경기용 물품, ④ 상용견품, ⑤ 광고용 필름·기록물, ⑥ 수리·개조용 물품<br>- 관세 면제요건<br>① 체약상대국의 국민 또는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칠레·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칠레·캐나다의 국민 또는 칠레·캐나다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물품을 반입하여야 함)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되거나 직접적인 감독 하에서 사용될 것<br>②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임대되지 아니할 것<br>③ 재수출될 때까지 다른 물품과의 식별이 가능할 것<br>④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수량 이내일 것<br>• 수리·개조 후 재수입 면세(법§30①2, 규칙§30④ 및 ⑤)<br>- 대상국가: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br>- 수리 또는 개조의 제외 범위<br>①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물품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작업이나 과정<br>② 미완성 상태의 물품을 완성품으로 생산 또는 조립하는 작업이나 과정<br>• 상용견품·광고물 면세(법§30①3, 규칙§30⑥)<br>- 대상국가 : 칠레 · 페루 · 미합중국 · 호주 · 캐나다 · 콜롬비아 · 뉴질랜드 · 캄보디아 · 베트남 · 중국 · 이스라엘 및 중미 공화국들「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br>- 견품 등의 범위(뉴질랜드는 ①에서 담배 제외, ③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 되는 물품으로 한정, 캄보디아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①로 한정) ① 상용견품, ② 인쇄광고물, ③ 영 제35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물품 | 내용 추가<br>및<br>삭제 |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td>163p<br>각주</td><td>57)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네시아 CEPA(향후 자율발급 도입)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호주 FTA의 경우 자율발급이 원칙이나 호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은 선택적으로 기관발급이 가능하고 한-EFTA FTA에서 스위스산 치즈에 ~~대해서는~~ 기관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br><br>58)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한-튀르키예 FTA, 한-콜롬비아 FTA, 한-호주 FTA(호주 소재 기업은 기관발급 가능), 한-캐나다 FTA, 한-뉴질랜드 FTA, 한-중미 FTA, 한-영 FTA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br><br>59) 상업송장 등의 상업서류에 간단히 원산지를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EFTA FTA(스위스산 치즈 제외), 한-EU FTA, 한-튀르키예 FTA, 한-뉴질랜드 FTA(통일서식 사용 가능) 및 한-영 FTA에서 채택하고 있다.</td><td>57)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네시아 CEPA(향후 자율발급 도입)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호주 FTA의 경우 자율발급이 원칙이나 호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은 선택적으로 기관발급이 가능하고 한-EFTA FTA에서 스위스산 치즈에 한해 기관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의 경우 기관발급과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2가지 방식 모두를 채택하고 있다.<br><br>58)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한-튀르키예 FTA, 한-콜롬비아 FTA, 한-호주 FTA(호주 소재 기업은 기관발급 가능), 한-캐나다 FTA, 한-뉴질랜드 FTA, 한-중미 FTA, 한-영 FTA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의 경우 기관발급과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2가지 방식 모두를 채택하고 있다.<br><br>59) 상업송장 등의 상업서류에 간단히 원산지를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EFTA FTA(스위스산 치즈 제외), 한-EU FTA, 한-튀르키예 FTA, 한-뉴질랜드 FTA(통일서식 사용 가능) 및 한-영 FTA, 한-이스라엘 FTA에서 채택하고 있다.</td><td>신규 협정 추가</td></tr>
<tr><td>164p<br>13번째줄</td><td>그러나 자율증명방식이나 기관증명방식 모두에 있어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발급 체가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원산지관리라 할 수 있다.<br>개별 FTA협정에 있어 어떤 증명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당사국의 행정관행과 관련제도 등에 따라 입장이 상이하다. 미주지역의 경우 대부분 원산지 자율증명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아세안 국가들은 원산지 기관증명 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EFTA나 EU국가들은 기관증명방식과 자율증명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br><br>＼원산지증명제 방식별 장·단점 비교＼<br><table><tr><th></th><th>원산지 자율증명제</th><th>원산지 기관증명제</th></tr><tr><td>장점</td><td>- 발급절차 신속·편리<br>- 증명서 발급비용 절감<br>- 통관절차 간소화<br>- 계약당사자간 자율책임 가능</td><td>- 공신력이 높아 우회수입방지 기대감<br>-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오류 위험이 낮음</td></tr><tr><td>단점</td><td>- 허위증명 가능성<br>* 원산지입증책임, 현지검증제도, 허위증명 처벌제등 보완제도 도입</td><td>- 수출신고와 증명서 발급절차 중복<br>- 절차 복잡, 시간·비용 증가<br>- 요식행위</td></tr><tr><td>적용협정</td><td>- 한·칠레, 한·EFTA, 한·EU, 한·미, 한·튀르키예, 한·콜롬비아, 한·페루,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중미, 한·영, RCEP</td><td>-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호주(호주측), 한·베트남, 한·중, 한·인도네시아, RCEP</td></tr></table></td><td>그러나 자율증명방식이나 기관증명방식 모두에 있어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발급자체가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원산지관리라 할 수 있다.<br>개별 FTA협정에 있어 어떤 증명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당사국의 행정관행과 관련제도 등에 따라 입장이 상이하다. 미주지역의 경우 대부분 원산지 자율증명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아세안 국가들은 원산지 기관증명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EFTA나 EU국가들은 기관증명방식과 자율증명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br><br>＼원산지증명제 방식별 장·단점 비교＼<br><table><tr><th></th><th>원산지 자율증명제</th><th>원산지 기관증명제</th></tr><tr><td>장점</td><td>- 발급절차 신속·편리<br>- 증명서 발급비용 절감<br>- 통관절차 간소화<br>- 계약당사자간 자율책임 가능</td><td>- 공신력이 높아 우회수입방지 기대감<br>-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오류 위험이 낮음</td></tr><tr><td>단점</td><td>- 허위증명 가능성<br>* 원산지입증책임, 현지검증제도, 허위증명 처벌제등 보완제도 도입</td><td>- 수출신고와 증명서 발급절차 중복<br>- 절차 복잡, 시간·비용 증가<br>- 요식행위</td></tr><tr><td>적용협정</td><td>- 한·칠레, 한·EFTA, 한·EU, 한·미, 한·튀르키예, 한·콜롬비아, 한·페루,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중미, 한·영, RCEP,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td><td>-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호주(호주측), 한·베트남, 한·중, 한·인도네시아, RCEP,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td></tr></table></td><td>탈자 수정<br><br>및<br><br>신규 협정 추가</td></tr>
</table>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td>168p<br>표 하단</td><td>＼협정별 원산지증명방식 비교＼
<table>
<tr><th>구분</th><th>증명방식</th><th>증 명 주 체</th><th>증명방법</th><th>유효기간</th></tr>
<tr><td>한-인도네시아</td><td>기관증명<br>자율증명<br>(향후)</td><td>-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인니 : 통상부<br>- 인증수출자(발효후 2년내), 수출자·생산자(발효후 10년내 이행)</td><td>통일증명서식</td><td>1년</td></tr>
<tr><td>한-이스라엘</td><td>기관증명<br>자율증명</td><td>-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이스라엘 : 재무부 조세당국 관세국<br>- 인증수출자, 수출자(1천달러 미만)</td><td>통일증명서식</td><td>12개월</td></tr>
<tr><td>RCEP</td><td>기관증명<br>자율증명</td><td>- 정부지정기관<br>- 인증수출자,<br>- 수출자 또는 생산자*<br>* 발효 후 10년내 이행/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는 20년내 이행</td><td>당사국<br>합의양식</td><td>1년</td></tr>
</table></td><td>＼협정별 원산지증명방식 비교＼
<table>
<tr><th>구분</th><th>증명방식</th><th>증 명 주 체</th><th>증명방법</th><th>유효기간</th></tr>
<tr><td>RCEP</td><td>기관증명<br>자율증명</td><td>- 정부지정기관<br>- 인증수출자,<br>- 수출자 또는 생산자*<br>* 발효 후 10년내 이행/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는 20년내 이행</td><td>당사국<br>합의양식</td><td>1년</td></tr>
<tr><td>한-이스라엘</td><td>기관증명<br>자율증명</td><td>-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이스라엘 : 재무부 조세당국 관세국<br>- 인증수출자, 수출자(1천달러 미만)</td><td>통일증명서식</td><td>12개월</td></tr>
<tr><td>한-캄보디아</td><td>기관증명<br>자율증명</td><td>-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캄보디아: 상무부<br>- 인증수출자</td><td>통일증명서식</td><td>1년</td></tr>
<tr><td>한-인도네시아</td><td>기관증명<br>자율증명<br>(향후)</td><td>-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인니 : 통상부<br>- 인증수출자(발효후 2년내), 수출자·생산자(발효후 10년내 이행)</td><td>통일증명서식</td><td>1년</td></tr>
</table></td><td>순서 변경<br><br>및<br><br>신규 협정 추가</td></tr>
<tr><td>173p</td><td>11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br><br>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 제2항제9호 및 제8조제6항)<br>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호주와의 협정 제3.16조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 또는 호주산업협회(Australian Industry Group, AIG)가 발급한 것(기관발급)<br>- 하략 -</td><td>11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br><br>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 제2항제9호 및 제8조제6항)<br>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호주와의 협정 제3.16조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 호주산업협회(Australian Industry Group, AIG), 국제수출증명서비스 International Export Certification Service (IECS) 또는 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에서 발급한 것(기관발급)<br>- 하략 -</td><td>발급기관 추가</td></tr>
</table>

| 페이지 | 2022년 기본교재 내용 | 2023년 개정판 내용 | 비 고 |
|---|---|---|---|
| 177p | 18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br>- 중략 -<br>⑪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br>ⅰ) 호주상공회의소 또는 호주산업협회<br>ⅱ) 관세청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8.3조제1항자목에 따른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기관<br>- 중략 -<br>⑭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관세청장이「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8.3조제1항자목에 따른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기관 | 18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br>- 중략 -<br>⑪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br>ⅰ) 호주상공회의소, 호주산업협회 또는 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br>ⅱ) 관세청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8.3조제1항자목에 따른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기관<br>- 중략 -<br>⑭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br>ⅰ) 뉴질랜드 상공회의소 또는 Trade Window Origin Limited<br>ⅱ) 관세청장이「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8.3조제1항자목에 따른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기관 | 발급기관 추가 |
| 178~179p | ~~19~~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br>- 생략 -<br>~~20~~ 한-이스라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br>- 생략 - | 19 한-이스라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br>- 내용동일 -<br>20 한-캄보디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br>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시행규칙 제7조 제1항제12호)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서명한 자율발급 방식으로 한다.(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6호) | 발효일자별 순서변경<br>및<br>신규협정 추가 |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td></td><td></td><td>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시행규칙 제8조제12항)<br>①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br>②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br>자율발급 방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19조 및 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 · 서명한다.(시행규칙 제7조제16항)<br><br>21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br>- 내용동일 -</td><td></td></tr>
<tr><td>180p</td><td>＼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서식관련 국내법 규정＼<br><table><tr><th>구분</th><th>근거</th><th>원산지증명서 서식</th></tr><tr><td>RCEP 협정</td><td>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1호<br>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5호</td><td>시행규칙 별지 24의 5 및 6<br>관세청장이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서식</td></tr><tr><td>한-인도네시아 CEPA</td><td>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9호</td><td>시행규칙 별지 24의 3 및 4</td></tr><tr><td>한-이스라엘 FTA</td><td>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0호<br>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4호</td><td></td></tr></table></td><td>＼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서식관련 국내법 규정＼<br><table><tr><th>구분</th><th>근거</th><th>원산지증명서 서식</th></tr><tr><td>RCEP</td><td>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1호<br>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5호</td><td>시행규칙 별지 24의 5 및 6<br>관세청장이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서식</td></tr><tr><td>한-인도네시아 CEPA</td><td>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9호</td><td>시행규칙 별지 24의 3 및 4</td></tr><tr><td>한-이스라엘 FTA</td><td>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0호<br>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4호</td><td>시행규칙 별지 24의 7 및 8</td></tr><tr><td>한-캄보디아 FTA</td><td>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2호<br>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6호</td><td>시행규칙 별지 24의 9 및 10</td></tr></table></td><td>재정렬<br>및<br>신규협정<br>추가</td></tr>
</table>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td>212~<br>213p</td><td>■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br>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br>ORIGINAL<br><table><tr><td>1. Exporter's name and address, country:</td><td rowspan="3">Certificate No.:<br><br>CERTIFICATE OF ORIGIN<br>Form for Korea-China FTA<br><br>Issued in _____<br>(see Overleaf Instruction)</td></tr><tr><td>2. Producer's name and address, country:</td></tr><tr><td>3. Consignee's name and address, country:</td></tr></table></td><td>■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br>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br>ORIGINAL<br><table><tr><td>1. Exporter's name and address, country:</td><td rowspan="3">Certificate No.:<br><br>CERTIFICATE OF ORIGIN<br>Form for Korea-China FTA<br><br>Issued in _____<br>(see Overleaf Instruction)</td></tr><tr><td>2. Producer's name and address, country:</td></tr><tr><td>3. Consignee's name and address, country:</td></tr></table><br>※ 개정표 75 페이지 상세 양식 확인</td><td>개정서식</td></tr>
<tr><td>221p</td><td>- [작성방법] 다음 신규 내용 추가 -<br>C/O 서식(을지)<신설 2022. 01. 28.> 및<br>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신고서 <2022. 05. 18. 제정></td><td>■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6서식]<br>「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br>Continuation Sheet<br>Certificate No. Form RCEP<br><table><tr><td>6. Item number</td><td>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td><td>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 and description of goods.</td><td>9. HS Code of the goods (6 digit-level)</td><td>10. Origin Conferring Criterion</td><td>11. RCEP Country of Origin</td><td>12. Quantity (Gross weight or other measurement), and value (FOB) where RVC is applied</td><td>13. Invoice number(s) and date of invoice(s)</td></tr></table><br>※ 개정표 77 페이지 상세 양식 확인</td><td>C/O 관련<br>서식 추가</td></tr>
</table>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td></td><td></td><td>■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2022. 5. 18. 제정)<br>Declaration of Origin<br>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br>Unique reference number:<br>1. Exporter's name, address, country, and contact | 2. Authorization code<br>※ 개정표 # 페이지 상세 양식 확인</td><td></td></tr>
<tr><td>222p</td><td>-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이전 신규 내용 추가 -<br>한-이스라엘 FTA 및 한-캄보디아 FTA 원산지증명서식</td><td>■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7서식]<br>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br>(앞쪽)<br>CERTIFICATE OF ORIGIN – KOREA - ISRAEL FTA<br>1. Exporter (name, address, country) | 2. Certificate no.<br>3. Importer(name, full address, country) | 4. Country of Origin<br>- 중략 -<br>■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9서식]<br>캄보디아와의 협정(제3.16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br>(앞쪽)<br>Certificate of Origin<br>ORIGINAL (DUPLICATE/TRIPLICATE)<br>1. Exporter's name and address: | Certificate of Origin No.<br>KOREA-CAMBODIA FREE TRADE AGREEMENT<br>CERTIFICATE OF ORIGIN<br>(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br>FORM KC<br>2. Producer's name and address, if known | Issued in ……<br>(Country)<br>3. Importer's or Consignee's name and address | See Overleaf Notes<br>※ 개정표 82 페이지 상세 양식 확인</td><td>신규협정 추가</td></tr>
</table>

| 페이지 | 2022년 기본교재 내용 | 2023년 개정판 내용 | 비 고 |
|---|---|---|---|
| 225p<br>1번째줄 | ① 증명서발급기관의 명칭·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br>- 하략 - | ① 증명서발급기관의 명칭·주소·전화번호 및 팩스번호<br>- 하략 - | 시행규칙 개정<br><'22. 7. 5.> |
| 226p<br>19번째줄 | 관세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발급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증명서 발급기관은 요청일로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에 해당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항)<br>- 하략 - | 관세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발급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증명서 발급기관은 요청일로부터 7일(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에 해당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항)<br>- 하략 - | 시행규칙 개정<br><'23. 3. 20.> |
| 227p | 1. 발급신청자<br><br>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br>싱가포르와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출자 및 수출자 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가 된다.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및 인도와의 협정 또는 베트남과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가 된다. 중국과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고, RCEP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이다. | 1. 발급신청자<br><br>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br>싱가포르와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출자 및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된다.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및 인도와의 협정 또는 베트남과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중국과의 협정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다. RCEP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또는 캄보디아와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이다. | 사무처리고시 "~서면으로~" 문구 삭제 및 신규협정 추가 |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td></td><td>- “1. 발급신청자” 내용 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 표 추가 -</td><td>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
<table>
<tr><th>협정의 종류</th><th>발급신청자[67)]</th><th>협정문</th></tr>
<tr><td>싱가포르와의 협정</td><td>수출자<br>※ 수출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td><td>제5.2조<br>원산지증명서</td></tr>
<tr><td>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td><td>생산자 및/또는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br>※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그들의 대리인</td><td>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제4조</td></tr>
<tr><td>인도와의 협정</td><td>수출자 또는 생산자<br>※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그들의 대리인</td><td>제4.3조<br>원산지증명서의 신청</td></tr>
<tr><td>베트남과의 협정</td><td>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그의 책임하에서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br>※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그들의 대리인</td><td>제3.14조<br>원산지증명서</td></tr>
<tr><td>중국과의 협정</td><td>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br>※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td><td>제3.15조<br>원산지증명서</td></tr>
<tr><td>RCEP</td><td>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br>※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그들의 대리인</td><td>제3.17조<br>원산지증명서</td></tr>
<tr><td>이스라엘과의 협정</td><td>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br>※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td><td>제3.16조<br>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td></tr>
<tr><td>캄보디아와의 협정</td><td>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받은 그들의 대리인<br>※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그들의 대리인</td><td>제3.16조<br>원산지증명서</td></tr>
<tr><td>인도네시아와의 협정</td><td>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그의 책임하에서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br>※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그들의 대리인</td><td>제3.16조<br>원산지증명서</td></tr>
</table>
67) FTA관세법사무처리고시 제21조(원산지증명서 신청인)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협정에서 정하는 자<br>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http://cert.korcham.net)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br>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발급신청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법」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으로 한다.
</td><td></td></tr>
</table>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
<td>229p<br>1번째줄</td>
<td>
증명서발급기관이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전자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포함)에는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다음 표와 같이 날인하여 발급한다.(~~고시 제28조제1항~~)<br>
다만, 아세안 및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선적일 포함)에 발급할 때,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선적일 포함)에 발급할 때,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선적일 미포함) 발급할 때,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선적일 후 7일 이내(선적일 포함) 발급할 때,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 발급할 때에는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지 아니한다.(~~고시 제28조제2항~~)<br>
＼선적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소급 발급” 문구표시＼
<table>
<tr><th>협정의 종류</th><th>원산지증명서 기재란</th><th>소급발급 문구</th><th>비고</th></tr>
<tr><td>인도와의 협정</td><td>제6란(Remarks)에 날인</td><td rowspan="2">“ISSUED RETROSPECTIVELY”</td><td rowspan="8">스탬프 날인</td></tr>
<tr><td>이스라엘과의 협정</td><td>제7란(Observations)에 날인</td></tr>
<tr><td>싱가포르와의 협정</td><td>15번란(Certification)에 날인</td><td rowspan="6">“ISSUED RETROACTIVELY”</td></tr>
<tr><td>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td><td>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td></tr>
<tr><td>베트남과의 협정</td><td>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td></tr>
<tr><td>중국과의 협정</td><td>제5란(Remarks)에 날인</td></tr>
<tr><td>인도네시아와의 협정</td><td>제4란(Remarks)에 날인</td></tr>
<tr><td>RCEP 협정</td><td>제17란(Remarks)에 표시</td><td>“ISSUED RETROACTIVELY” 란에 "✓" 표시</td><td>원산지 증명서에 표시</td></tr>
</table>
</td>
<td>
증명서발급기관이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전자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포함)에는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다음 표와 같이 날인하여 발급한다.(사무처리고시 제28조제1항)<br>
＼선적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소급 발급” 문구표시＼
<table>
<tr><th>협정의 종류</th><th>원산지증명서 기재란</th><th>소급발급 문구</th><th>비고</th></tr>
<tr><td>인도와의 협정</td><td>제6란(Remarks)에 날인</td><td rowspan="2">“ISSUED RETROSPECTIVELY”</td><td rowspan="8">스탬프 날인</td></tr>
<tr><td>이스라엘과의 협정</td><td>제7란(Observations)에 날인</td></tr>
<tr><td>싱가포르와의 협정</td><td>15번란(Certification)에 날인</td><td rowspan="6">“ISSUED RETROACTIVELY”</td></tr>
<tr><td>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td><td>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td></tr>
<tr><td>베트남과의 협정</td><td>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td></tr>
<tr><td>중국과의 협정</td><td>제5란(Remarks)에 날인</td></tr>
<tr><td>캄보디아와의 협정</td><td>13번란(Certification)에 날인</td></tr>
<tr><td>인도네시아와의 협정</td><td>제4란(Remarks)에 날인</td></tr>
<tr><td>RCEP</td><td>제17란(Remarks)에 표시</td><td>“ISSUED RETROACTIVELY” 란에 "✓" 표시</td><td>원산지증명서에 표시</td></tr>
</table>
다만, 아세안 및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선적일 포함)에 발급할 때,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선적일 포함)에 발급할 때,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선적일 미포함) 발급할 때,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선적일 후 7일 이내(선적일 포함) 발급할 때,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 발급할 때에는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지 아니한다.(사무처리고시 제28조제2항)
</td>
<td>표 위치 수정, 중복표현 삭제 및 캄보디아 추가</td>
</tr>
</table>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td>230p</td><td>

## 2) 상공회의소장의 현지확인 요청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은 현지확인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확인요청 사항을 기재한 현지확인 요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0조제5항)

이 경우 현지확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현지확인을 요청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0조제5항)

＼상공회의소의 현지확인 요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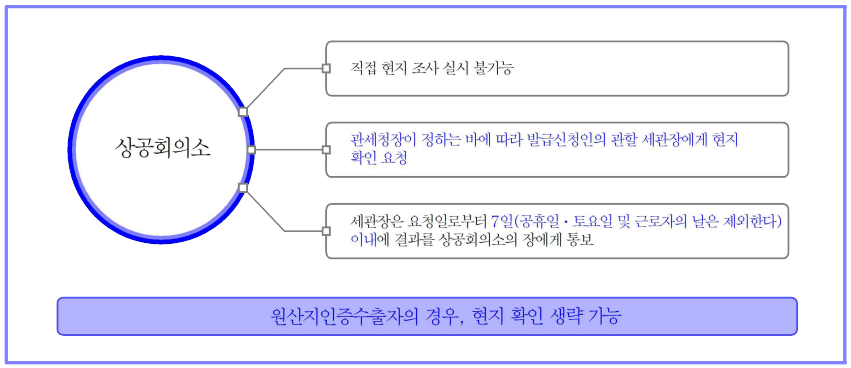


</td><td>

## 2) 상공회의소장의 현지확인 요청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은 현지확인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확인요청 사항을 기재한 현지확인 요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0조제5항, 사무처리고시 제31조)

이 경우 현지확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7일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0조제5항)

＼상공회의소의 현지확인 요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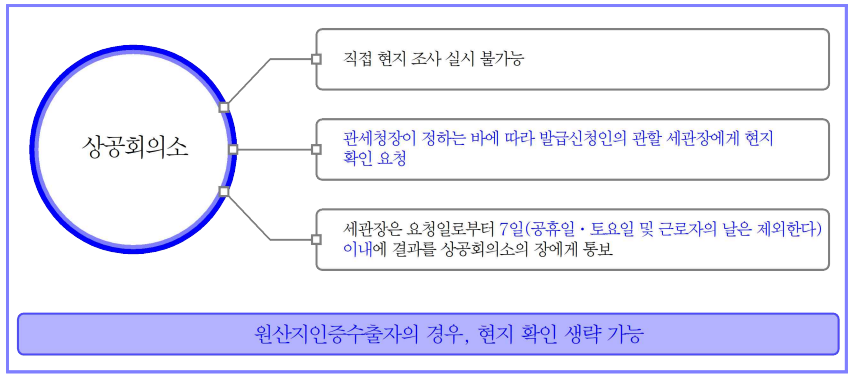


</td><td>근거 추가<br>/<br>시행규칙<br>개정<br>'22. 7. 5.</td></tr>
</table>

| 페이지 | 2022년 기본교재 내용 | 2023년 개정판 내용 | 비 고 |
|---|---|---|---|
| 232p | 4. 신청 서류의 심사 및 보정요구<br><br>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원산지결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0조제6항)<br>①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 10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내<br>② 그 밖의 경우 : 3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내<br><br>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정기간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시행규칙 제10조제7항)<br><br>5.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br><br>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0조제8항)<br>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0조제9항) | 4. 신청 서류의 심사 및 보정요구<br><br>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원산지결정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0조제6항)<br>①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 10일(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내<br>② 현지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3일(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내<br>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정기간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시행규칙 제10조제8항)<br><br>5.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br><br>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0조제9항)<br>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0조제10항) | 시행규칙 개정<br><'23. 3. 20.> |

| 페이지 | 2022년 기본교재 내용 | 2023년 개정판 내용 | 비 고 |
|---|---|---|---|
| 233p<br>6번째줄 | 증명서발급기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아세안회원국,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잘못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은 당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을 확인하여 재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0조~~제11항~~)<br>＼원산지증명서 재발급 규정＼<br>사무처리고시 제34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① 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br>- 중략 -<br>6. 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4란(Remarks)에 날인하고, 제12란에는 당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를 추가로 기재<br>④ 증명서발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정등본(CERTIFIED TURE COPY)" 문구를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 증명서발급기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캄보디아, 아세안회원국,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은 당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을 확인하여 재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0조제12항)<br>＼원산지증명서 재발급 규정＼<br>사무처리고시 제34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① 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br>- 중략 -<br>6. 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4란(Remarks)에 날인하고, 제12란에는 당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를 추가로 기재<br>7. 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4란(Remarks)에 날인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 일자를 추가로 기재<br>8. 규칙 별지 제24호의9서식(캄보디아와의 협정): 13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br>④ 증명서발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정등본(CERTIFIED TURE COPY)" 문구를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 시행규칙 개정<br><'23. 3. 20.><br>사무처리고시 개정<br><'22. 12. 1.> |
| 234p | 6. 전자문서 방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br>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재발급신청, 정정발급신청,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포함한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0조~~제10항~~)<br>이에 따라 관세청장은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0~~항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서 전자문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 전자문서,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전자문서 등을 공고하고 있다. | 6. 전자문서 방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br>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재발급신청, 정정발급신청,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포함한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0조제11항)<br>이에 따라 관세청장은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1항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서 전자문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포괄)확인서 전자문서,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전자문서 등을 공고하고 있다. | 시행규칙 개정<br><'23. 3. 20.> |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td>235p</td><td>＼ RCEP 협정 제3.17조 원산지증명서＼<br>- 내용동일 -</td><td>＼ RCEP 제3.17조 원산지증명서＼<br>- 내용동일 -</td><td>중복표현<br>삭제</td></tr>
<tr><td>236~<br>239p</td><td>■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12. 31.><br>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br>※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4쪽 중 제1쪽)<br>※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br>신청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작성방법 참조<br>1.신청구분 | 신규발급 [ ] 재발급( ) [ ] 정정발급( ) [ ] 소급발급(선적 후 발급) [ ]<br>2.신청인 | 구분 | 생산자 [ ] 수출자 [ ] 관세사 [ ] 기타( ) [ ]<br>상호(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td><td>■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br>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br>※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4쪽 중 제1쪽)<br>※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br>신청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작성방법 참조<br>1.신청구분 | 신규발급 [ ] 재발급( ) [ ] 정정발급( ) [ ] 소급발급(선적 후 발급) [ ]<br>2.신청인 | 구분 | 생산자 [ ] 수출자 [ ] 관세사 [ ] 기타( ) [ ]<br>상호(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br>※ 개정표 90 페이지 상세 양식 확인</td><td>개정서식</td></tr>
<tr><td>240~<br>241p</td><td>■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br>원 산 지 소 명 서<br>※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2쪽 중 제1쪽)<br>수출자·생산자<br>1.수출자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성 명 | | 전화/팩스번호 | | 주 소 (전자우편주소)</td><td>■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br>원 산 지 소 명 서<br>※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4쪽 중 제1쪽)<br>수출자 · 생산자<br>1.수출자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성 명 | | 전화/팩스번호 | | 주 소 (전자우편주소)<br>※ 개정표 94 페이지 상세 양식 확인</td><td>개정서식</td></tr>
<tr><td>244p</td><td>라.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로서 별지 제16호 서식과 같다.~~(시행규칙 제15조제7항~~제3호~~)</td><td>라.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br>(시행규칙 제15조제7항)</td><td>시행규칙<br>개정<br><21. 12. 31.></td></tr>
</table>

| 페이지 | 2022년 기본교재 내용 | 2023년 개정판 내용 | 비 고 |
|---|---|---|---|
| 244~<br>245p | 바.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시행규칙 별표 19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로 한다.(시행규칙 제15조제9항)~~<br>다만, ~~터키~~와의 협정 중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수출자가 시행규칙 별표 9 제4호[1]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Annex II(a)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5조제9항) | 바. 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19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튀르키예와의 협정 중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수출자가 시행규칙 별표 9 제4호[1]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Annex II(a)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5조제9항) | 내용 정정 |
| 246p<br>각주 | 65)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15의3]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br>5. 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 | 65)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5의3]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br>5. 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 | 오류 수정 |
| 247p<br>표 다음 | - 신규 협정 내용 추가- | 하.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시행규칙 제15조제20항제2호 및 제3호)<br>① 원산지인증수출자 : 별표 20의3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br>② 물품의 가치가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자 : 별표 20의4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br>거.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는 별지 제24호의10서식과 같다.(시행규칙 제15조제21항제2호) | 시행규칙 개정<br><'22. 7. 5.> |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td>252p<br>하단</td><td>

## 4 FTA 원산지간편인정제도

- 중략 -

이 제도는 현재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1,199 품목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원산지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 등록증, 지리적표시 등록증, 물김 수매확인서, 수산물 품질인증서,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 축산물(계란·닭·오리) 등급판정확인서, 전통식품품질인증서,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 우수천일염인증서,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증 등 18종이다.

</td><td>

## 4 FTA 원산지간편인정제도

- 중략 -

이 제도는 현재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1,200 품목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원산지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 등록증, 지리적표시 등록증, 물김 수매확인서, 수산물 품질인증서,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 축산물(계란·닭·오리) 등급판정확인서, 전통식품품질인증서,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 우수천일염인증서,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증 등 18종이다.

</td><td>원산지확인서 고시 개정 <22. 12. 26.></td></tr>
<tr><td>253p</td><td>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 및 발급기관＼

| 구분 | 서 류 명 | 발 급 근 거 | 발급기관 |
|---|---|---|---|
| 식품류 (38개) | ⑭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 한국식품연구원 |
| | ⑰ 우수천일염인증서 |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 국립목포대학교 천일염사업단 |
| | ⑱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증3) | 먹는물관리법 제21조(영업의 허가등) | 시·도지사 |

</td><td>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 및 발급기관＼

[시행 2022. 12. 26.]

| 구분 | 서 류 명 | 발 급 근 거 | 발급기관 |
|---|---|---|---|
| 식품류 (39개) | ⑭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 한국식품연구원 |
| | ⑰ 우수천일염인증서 |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 국립목포대학교 천일염사업단 |
| | ⑱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증3) | 먹는물관리법 제21조(영업의 허가등) | 시·도지사 |

</td><td>시행일 추가<br><br>원산지확인서 고시 개정 '22. 12. 26.</td></tr>
<tr><td>254~<br>255p</td><td>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2. 31.>

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2쪽 중 제1쪽)

1.발급번호(Reference No.) :

| | | |
|---|---|---|
| 2.공급하는 자 (Supplier) | 상호(Company Name) |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
| |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 전화번호(Tel)<br>팩스번호(Fax) |
| | 주소(Address)<br>전자우편주소(E-mail) | 인증수출자 인증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 |

</td><td>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3쪽 중 제1쪽)

1.발급번호(Reference No.) :

| | | |
|---|---|---|
| 2.공급하는 자 (Supplier) | 상호(Company Name) |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
| |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 전화번호(Tel)<br>팩스번호(Fax) |
| | 주소(Address)<br>전자우편주소(E-mail) | 인증수출자 인증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 |

※ 개정표 98 페이지 상세 양식 확인

</td><td>개정서식</td></tr>
</table>

| 페이지 | 2022년 기본교재 내용 | 2023년 개정판 내용 | 비 고 |
|---|---|---|---|
| 264p | 1 개 요<br><br>- 중략 -<br>이에 ~~FTA관세특례법~~은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5조) | 1 개 요<br><br>- 중략 -<br>이에 FTA관세법은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5조) | |
| 265p | 1. 수입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br><br>- 중략 -<br>⑦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br><br>2.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br><br>①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br>② 수출신고필증<br>~~③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한다)~~<br>~~④~~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br>~~⑤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br>~~⑥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br>~~⑦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재고관리대장~~<br>~~⑧~~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 1. 수입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br><br>- 중략 -<br>⑦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br><br>2.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br><br>①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br>② 수출신고필증<br>③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br>④ 해당 물품의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재고관리대장<br>⑤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 시행령 개정<br><'23. 2. 28.> |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td>266~<br>267p</td><td>
<h3>3.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h3>
①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br>
~~②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br>
~~③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한다)~~<br>
~~④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br>
~~⑤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br>
~~⑥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재고관리대장~~<br>
~~⑦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br>
<h3>4. 서류 보관기간</h3>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시행령 제10조제2항)<br>
- 중략 -<br>
＼~~FTA~~협정별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
<table>
<tr><th>협정국</th><th>기 록 유 지 규 정</th></tr>
<tr><td>RCEP</td><td>- 내용동일 -</td></tr>
<tr><td>인도네시아</td><td>- 내용동일 -</td></tr>
</table>
</td><td>
<h3>3.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h3>
①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br>
②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br>
③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br>
④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br>
⑤ 해당 물품 생산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br>
⑥ 원가계산서 ·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br>
⑦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 재고관리대장<br>
<h3>4. 서류 보관기간</h3>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시행령 제10조제2항)<br>
- 중략 -<br>
＼협정별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
<table>
<tr><th>협정국</th><th>기 록 유 지 규 정</th></tr>
<tr><td>RCEP</td><td>- 내용동일 -</td></tr>
<tr><td>이스라엘</td><td>제3.26조 원산지 증명 및 증빙서류의 보존<br>1.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제3.16조제4항에서 언급된 서류를 최소한 5년 동안 보관한다.<br>2.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이 원산지 신고서의 사본과 제3.20조제2항에서 언급된 서류를 최소한 5년 동안 보관한다.<br>3.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제3.16조제3항에서 언급된 신청 절차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최소한 5년 동안 보관한다.</td></tr>
</table>
</td><td>시행령<br>개정<br><’23. 2. 28.><br><br>시행령<br>개정<br><’20. 2. 11.><br><br>신규협정<br>추가</td></tr>
</table>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td></td><td></td><td>
<table>
<tr><th>협정국</th><th>기 록 유 지 규 정</th></tr>
<tr><td></td><td>4.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그들에게 제출된 원산지 증명서 및 원산지 신고서 또는 전자적 원산지 증명서의 참조번호를 최소한 5년 동안 보관한다.</td></tr>
<tr><td>캄보디아</td><td>제3.25조 기록 유지 요건<br>1.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한다.<br>가. 자국의 수출자, 생산자, 발급 기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은 원산지 증명이 발급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원산지 증명 발급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또는 자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유지한다. 그리고<br>나. 자국의 수입자는 특혜관세대우가 신청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상품의 수입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또는 자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유지한다.<br>2.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은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여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로 유지될 수 있다.</td></tr>
<tr><td>인도네시아</td><td>- 내용동일 -</td></tr>
</table>
</td><td></td></tr>
<tr><td>268p</td><td>3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br><br>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시행령~~ 제16조제1항)<br>- 중략 -<br>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한-페루 FTA와 한-뉴질랜드 FTA의 경우 그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td><td>3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br><br>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16조제1항)<br>- 중략 -<br>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한-페루 FTA와 한-뉴질랜드 FTA의 경우 그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1호)</td><td>근거 오류<br><br>근거 추가<br>법령 표현</td></tr>
</table>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td></td><td>그 이외의 협정의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br>서류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제출기한 연장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1조제3항)<br>- 중략 -<br>서류제출기한의 연기신청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승인 여부 및 서류제출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시행규칙 제21조제4항)</td><td>그 이외의 협정의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br>서류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제출기한 연장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1조제3항)<br>- 중략 -<br>서류제출기한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승인 여부 및 서류제출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시행규칙 제21조제4항)</td><td>법령 표현</td></tr>
<tr><td>269p</td><td>＼협정상 원산지증명서의 단순오류 규정 유형＼<br><table><tr><th>구분</th><th>단순오류 인정 및 보완요구</th><th>단순오류 인정</th><th>규정 없음</th></tr><tr><td>협정</td><td>칠레, 인도, 중국, 베트남, 페루, 캐나다(MOU), 중미</td><td>EU, EFTA, ~~터키~~,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영국, RCEP, 인도네시아</td><td>싱가포르, 미국</td></tr></table></td><td>＼협정상 원산지증명서의 단순오류 규정 유형＼<br><table><tr><th>구분</th><th>단순오류 인정 및 보완요구</th><th>단순오류 인정</th><th>규정 없음</th></tr><tr><td>협정</td><td>칠레, 인도, 중국, 베트남, 페루, 캐나다(MOU), 중미</td><td>EU, EFTA,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td><td>싱가포르, 미국</td></tr></table></td><td></td></tr>
<tr><td>274p</td><td>⑯ RCEP ~~협정~~<br>- 내용동일 -</td><td>⑯ RCEP<br>- 내용동일 -</td><td>중복표현 삭제</td></tr>
</table>

| 페이지 | 2022년 기본교재 내용 | 2023년 개정판 내용 | 비 고 |
|---|---|---|---|
| | - 신규 협정 내용 추가 -<br><br>⑰ 한-인도네시아 CEPA<br><br>- 내용동일 - | ⑰ 한-이스라엘 FTA<br><br>제3.27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br>1. 원산지 증명에 기재된 내용과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목적상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불일치가 발견되더라도, 그 서류가 제출된 상품에 상응한다는 것이 적절히 입증된 경우,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무효화되지 않는다.<br>2. 원산지 증명에서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이러한 오류가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경우, 이 서류가 거부되는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br><br>⑱ 한-캄보디아 FTA<br><br>제3.24조 사소한 불일치 또는 오류<br>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서류 간 사소한 불일치, 정보의 누락, 타자 오류 또는 지정된 칸으로부터의 돌출과 같은 사소한 불일치 또는 오류는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소한 불일치 또는 오류가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br><br>⑲ 한-인도네시아 CEPA<br><br>- 내용동일 - | 신규협정 추가 |
| 275p<br>1번째줄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시행규칙 제19조)에 그 사실을 세관장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동~~ 사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1항)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시행규칙 제19조)에 그 사실을 세관장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1항) | 법령 표현 |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td>283p</td>
<td>

## 2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기관발급 협정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따른 첨부서류의 제출~~이 면제되며(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발급기관의 필요에 따라 실시되는 현지확인이 생략될 수 있다.(시행규칙 제10조제4항)

자율발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EFTA FTA에서는 인증수출자가 인증시 서면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면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수출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한-EU FTA 및 한-영~~국~~ FTA에서는 인증수출자에게만 6,000유로 초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권한이 부여된다. 하지만, ~~한-EFTA FTA에서는 한-EU FTA와 달리 6,000유로 초과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인증수출자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RCEP ~~협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의 자율발급 권한도 부여 받을 수 있다.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table>
<tr><th>협 정</th><th>인증 前</th><th>인증 後</th></tr>
<tr><td>한-아세안<br>한-싱가포르<br>한-인도<br>한-베트남<br>한-중국</td><td>•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전산으로 신청)<br>• 첨부서류 제출<br>1. 수출신고필증 사본<br>2. 원산지소명서<br>3. 원산지확인서</td><td>•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전산으로 신청)<br>• 첨부서류 제출 생략</td></tr>
</table>

</td>
<td>

## 2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기관발급 협정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따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발급기관의 필요에 따라 실시되는 현지확인이 생략될 수 있다.(시행규칙 제10조제4항)

자율발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EFTA · 한-EU · 한-영 FTA에서는 인증수출자 인증 시 서면확인서(원산지인증수출자고시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였으면,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한-EU FTA 및 한-영 FTA에서는 인증수출자에게만 6,000유로 초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권한이 부여된다. 하지만, 한-EFTA FTA에서는 6,000유로 초과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인증수출자 인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RCEP을 활용하고자 하는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의 자율발급 권한도 부여 받을 수 있다.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table>
<tr><th>협정</th><th>구분</th><th>인증 前</th><th>인증 後</th></tr>
<tr><td>한-EFTA[76]</td><td>자율<br>발급</td><td>•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의 서명 수기 작성 필요</td><td>•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의 서명 수기 작성 생략 가능</td></tr>
<tr><td>한-EU<br>한-영[77]</td><td>자율<br>발급</td><td>•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br>•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의 서명 수기 작성 필요</td><td>•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br>•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의 서명 수기 작성 생략 가능</td></tr>
</table>

</td>
<td>띄어쓰기,<br>서류명 등<br><br>각주추가</td></tr>
</table>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td></td><td>
<table>
<tr><th>협 정</th><th>인증 前</th><th>인증 後</th></tr>
<tr><td></td><td>(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br>4.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br>• 현지확인(필요한 경우)</td><td>• 현지확인 생략 가능</td></tr>
<tr><td>한-EFTA</td><td>•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필요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td><td>•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 (전자문서 이용 가능)</td></tr>
<tr><td>한-EU<br>한-영국</td><td>•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불가</td><td>•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특혜관세 적용 가능)</td></tr>
<tr><td>RCEP</td><td></td><td>•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br>•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권한 부여</td></tr>
</table>
</td><td>
<table>
<tr><th>협정</th><th>구분</th><th>인증 前</th><th>인증 後</th></tr>
<tr><td>한-아세안<br>한-싱가포르<br>한-인도<br>한-베트남<br>한-중<br>RCEP<br>한-이스라엘<br>한-캄보디아<br>한인도네시아</td><td>기관<br>발급</td><td>•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전산으로 신청)<br>• 첨부서류 제출<br>1. 수출신고필증 사본<br>2. 원산지소명서<br>3. 원산지확인서<br>(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br>4.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br>• 현지확인(필요한 경우)</td><td>•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전산으로 신청)<br>• 첨부서류 제출 생략<br>• 현지확인 생략 가능</td></tr>
<tr><td>RCEP<br>한-캄보디아</td><td>자율<br>발급</td><td>•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불가<br>• [RCEP] (수출자 또는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유보><br>※ <유보> [RCEP] 제3.16조에 따라 이행 예정(국가별 상이)</td><td>•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td></tr>
<tr><td>한-인도네시아</td><td>자율<br>발급</td><td>•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불가<br>• (수출자 또는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유보></td><td>•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유보></td></tr>
<tr><td></td><td></td><td colspan="2">※ <유보>[한-인도네시아 CEPA] 제3.15조에 따라 이행 예정</td></tr>
<tr><td>한-이스라엘</td><td>자율<br>발급</td><td>•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수출물품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td><td>• 미화 1천달러 초과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td></tr>
</table>
76) 한-EFTA FTA 제16조(인증수출자) 1. 수출당사국이 인증수출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경우, 수출당사국의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에 수기로 서명한 것과 같은 본인임을 확인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이 협정 하에서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상품을 빈번하게 선적하는 수출당사국의 수출자가 서명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인증할 수 있다.<br>77) 한-EU · 한-영 FTA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5.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td><td>협정별<br>순서 및<br>정리</td></tr>
</table>

| 페이지 | 2022년 기본교재 내용 | 2023년 개정판 내용 | 비 고 |
|---|---|---|---|
| 285p | 3 인증업무의 처리 절차<br>- 중략 -<br>인증업무는 본부세관(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및 평택세관에서 하며, 인증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한다. 이때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관련 자료로 서면심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보정요구하거나 현지확인 등을 할 수 있다. | 3 인증업무의 처리 절차<br>- 중략 -<br>인증업무는 본부세관(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및 평택직할세관에서 하며, 인증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한다. 이때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관련 자료로 서면심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보정요구하거나 현지확인 등을 할 수 있다. | |
| 288p | ③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아래 각 목의 기획재정부령(시행규칙 제17조제2항)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할 것~~(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br>ⅰ)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br>ⅱ)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받은 원산지관리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 원산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br>- 중략 -<br>2 인증신청시 제출 서류<br>- 중략 -<br>②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HS 6단위 기준)의 원산지소명서. ~~다만,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전산처리시스템의 현황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아래 각 목의 기획재정부령(시행규칙 제17조제2항)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 운영할 것<br>ⅰ)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br>ⅱ)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받은 원산지관리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 원산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해당 업체의 소속직원에 한정한다.)<br>- 중략 -<br>2 인증신청 시 제출 서류<br>- 중략 -<br>②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HS 6단위 기준)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br>ⅰ) 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전산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현황자료 |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 수정<br><br>시행규칙 시행 '23. 5. 1. (개정 '23. 3. 20.) |

| 페이지 | 2022년 기본교재 내용 | 2023년 개정판 내용 | 비 고 |
|---|---|---|---|
| | ③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 ii)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이거나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br>iii)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br>③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 |
| 290p | 4 유효기간 및 기간 연장<br><br>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시행규칙 제17조제7항)<br>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기준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 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 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7조제8항) | 4 유효기간 및 기간 연장<br><br>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시행규칙 제17조제7항)<br>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 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 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시행규칙 제17조제8항) | 시행규칙 개정<br><'23. 3. 20.> |

| 페이지 | 2022년 기본교재 내용 | 2023년 개정판 내용 | 비 고 |
|---|---|---|---|
| 291p | 6 인증서 재발급<br><br>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서 재발급 신청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재발급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7조제13항)<br>종전~~(2019.8.30. 이전)~~에는 관세청장이나 당초 인증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세관장~~으로부터~~ 이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증서 재발급 기관을 확대하였다. | 6 인증서 재발급<br><br>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7조제13항)<br>종전에는 관세청장이나 당초 인증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2019. 8. 30.부터 모든 세관장에게 이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증서 재발급 기관을 확대하였다. | 이전이라는 표현에는 8. 30. 당일.이 포함될 수 있으며, 현행에 맞게 문구 수정 |
| 298p | 1 인증기준<br><br>- 중략 -<br>②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할 것~~(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br>ⅰ)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br>ⅱ)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받은 원산지관리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 원산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 | 1 인증기준<br><br>- 중략 -<br>②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기획재정부령(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할 것<br>ⅰ)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br>ⅱ)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받은 원산지관리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 원산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해당 업체의 소속직원에 한정한다.) |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 수정 |

| 페이지 | 2022년 기본교재 내용 | 2023년 개정판 내용 | 비 고 |
|---|---|---|---|
| 299p | 2 인증신청시 제출 서류<br>- 중략 -<br>② ~~원산지인증 신청품목(HS 6단위 기준)별 원산지소명서. 다만, 원산지인증 수출자가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br>③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 | 2 인증신청 시 제출 서류<br>- 중략 -<br>② 원산지인증 신청품목(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별 원산지소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br>ⅰ)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br>ⅱ)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이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이거나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br>ⅲ)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br>③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 시행규칙 시행<br>'23. 5. 1.<br>(개정 '23. 3. 20.) |
| 300p<br>13번째줄 | - 중략 -<br>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변경사항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8조제7항 및 제17조제3항) | - 중략 -<br>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변경사항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8조제7항 및 제17조제15항) | 준용규정 통일 |

| 페이지 | 2022년 기본교재 내용 | 2023년 개정판 내용 | 비 고 |
|---|---|---|---|
| | 4 유효기간 및 기간 연장<br>- 중략 -<br>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및 제17조제8항)~~<br>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기준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 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br>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8조제7항 및 제17조~~제8항~~) | 4 유효기간 및 기간 연장<br>- 중략 -<br>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기준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 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및 제17조제8항)<br>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8조제7항 및 제17조제15항) | 시행규칙 개정<br><'23. 3. 20.> |
| 301p | 5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br>- 중략 -<br>~~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의 취소 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8조제7항 및 제17조~~제3항~~)<br>- 중략 -<br>이때 시정요구를 받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 | 5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br>- 중략 -<br>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의 취소 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8조제7항 및 제17조제15항)<br>- 중략 -<br>이때 시정요구를 받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 | 준용규정 통일 |

| 페이지 | 2022년 기본교재 내용 | 2023년 개정판 내용 | 비 고 |
|---|---|---|---|
| | 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8조제5항 및 제17조제15항) | 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의 취소 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8조제5항, 제18조제7항 및 제17조제15항) | |
| 314p | 1 수입물품 원산지조사 원칙<br>- 중략 -<br>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19조제2항) | 1 수입물품 원산지조사 원칙<br>- 중략 -<br>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19조제2항) | |
| 315p<br>23번째줄 |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조사에 참관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법 제17조제8항) |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변호사, 관세사를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법 제17조제8항) | |
| 316p<br>1번째줄 |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거나 조사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법 제35조제1항제5호)<br>- 하략 - |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거나 조사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법 제7조(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법 제35조제1항제5호)<br>- 하략 - | 조항내용 추가 |

| 페이지 | 2022년 기본교재 내용 | 2023년 개정판 내용 | 비 고 |
|---|---|---|---|
| 317p | ⑭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인도네시아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제1항다목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4개월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⑭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인도네시아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제1항다목[83]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4개월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br>83) 한-인도네시아 CEPA협정문 제3.23조(검증)<br>1.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에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에 대하여 또는 해당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사후 검증을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br>가. 나. 생략<br>다.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하여 추가 정보가 요청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 후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요청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br>라. 생략 | 각주추가 |
| 318p | ⑮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29조제7항가목에 따라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한 날부터 90일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br>- 신규 협정 내용 추가 - | ⑮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29조제7항가목[84]에 따라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한 날부터 90일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br>⑯「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당사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당사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br>⑰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 각주추가 및 신규협정 추가 |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td></td><td>- ⑮ 이스라엘 내용 각주 추가 -</td><td>84) 한-이스라엘 FTA협정문 제3.29조(원산지 증명의 검증)<br>1.~6. 생략<br>7.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하여 제공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 상황에서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수출 당사국에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br>가. 위의 검증결과에 관하여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서면으로 추가 정보, 서류 또는 설명 요청. 그러한 정보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공된다. 또는<br>나. 생략<br>8. 9. 생략</td><td></td></tr>
<tr><td>323p</td><td>- 신규 협정 내용 추가 -</td><td>서.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br>ⅰ)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br>ⅱ)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다만,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는 가목에 따른 원산지확인 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td><td>신규협정<br>추가</td></tr>
<tr><td>325p<br>표</td><td>＼협정별 원산지검증제도 비교＼<br><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검증</th><th colspan="2">회신</th><th rowspan="2">근거조항</th></tr><tr><th>검증방법</th><th>검증주체</th><th>회신기한</th><th>회신주체</th></tr><tr><td rowspan="2">RCEP</td><td>간접</td><td>발급기관 또는 수출국세관</td><td>30일~90일</td><td>발급기관 또는 수출국세관</td><td>제3.24조</td></tr><tr><td>직접(서면/현지)</td><td>수입국세관</td><td>30일~90일</td><td>조사대상자</td><td>제3.24조</td></tr></table></td><td>＼협정별 원산지검증제도 비교＼<br><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검증</th><th colspan="2">회신</th><th rowspan="2">근거조항</th></tr><tr><th>검증방법</th><th>검증주체</th><th>회신기한</th><th>회신주체</th></tr><tr><td rowspan="2">RCEP</td><td>간접</td><td>발급기관 또는 수출국세관</td><td>30일~90일</td><td>발급기관 또는 수출국세관</td><td>제3.24조</td></tr><tr><td>직접(서면/현지)</td><td>수입국세관</td><td>30일~90일</td><td>조사대상자</td><td>제3.24조</td></tr><tr><td rowspan="2">한-캄보디아</td><td>간접</td><td>수출국세관</td><td>30일~90일</td><td>수출국세관</td><td>제3.22조</td></tr><tr><td>직접(서면/현지)</td><td>수입국세관</td><td>30일~90일</td><td>조사대상자</td><td>제3.22조</td></tr></table></td><td>신규협정<br>추가</td></tr>
</table>

| 페이지 | 2022년 기본교재 내용 | 2023년 개정판 내용 | 비 고 |
|---|---|---|---|
| 327p<br>3번째줄 | - 중략 -<br>③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시행규칙 제21조제1항)으로 정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br>ⅰ)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br>- 중략 -<br>원산지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변호사나 관세사를 조사에 참관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법 제17조제8항) | - 중략 -<br>③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시행규칙 제21조제1항)으로 정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br>ⅰ)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br>- 중략 -<br>원산지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변호사, 관세사를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법 제17조제8항) | 시행규칙<br>제21조제1항 |
| 329p | - 중략 -<br>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 - 중략 -<br>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br>⑮ 캄보디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 신규협정<br>추가 |
| 330p<br>표 아래 | 관세청장은 요청받은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미국의 관세당국이 조사를 요청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미국의 관세당국에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결과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제13조제2항) | 관세청장은 요청받은 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미합중국 관세당국이 요청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결과서를 미국의 관세당국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제13조제2항) | |
| 356~<br>357p | ~~⑱~~ RCEP ~~협정~~<br>- 내용 동일 -<br>~~⑲~~ 한-인도네시아 CEPA<br>- 내용 동일 - | ⑱ 한-인도네시아 CEPA<br>- 내용 동일 -<br>⑲ 한-이스라엘 FTA<br>3.29조 원산지 증명의 검증<br>1.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그러한 서류의 진정성,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장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 협정별<br>순서 및<br>신규협정<br>추가 |

| 페이지 | 2022년 기본교재 내용 | 2023년 개정판 내용 | 비 고 |
|---|---|---|---|
| | | 2. 제1항의 이행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적절한 경우 검증 요청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증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br>3. 검증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하여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 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장부에 대한 모든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br>4.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상품에 대한 특혜대우의 부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상품의 반출이 허용된다.<br>5.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 당국은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와 해당 상품이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한다.<br>6. 합리적 의심이 있고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 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br>7.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하여 제공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 상황에서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수출 당사국에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br>가. 위의 검증결과에 관하여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서면으로 추가 정보, 서류 또는 설명 요청. 그러한 정보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공된다. 또는<br>나.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검증. 그 목적을 위하여,<br>1)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을 수행하려는 수입 당사국의 의사를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br>2) 수출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입 당사국 및 수출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방문 날짜를 정한다. 방문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서면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수행된다.<br>3) 수출 당사국의 공무원은 수입 당사국의 공무원의 방문을 지원하고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수출자의 사업장에 동반한다. 그리고 | |

| 페이지 | 2022년 기본교재 내용 | 2023년 개정판 내용 | 비 고 |
|---|---|---|---|
| | | 4) 검증을 수행하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사실의 조사결과와 그 결정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여,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 결정을 제공한다.<br>8. 각 당사국은 자국 법에 따라 이 조에 따라 수집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그 정보를 보호한다.<br>9. 이 조에 따라 당사국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는 오직 양 당사국의 법에 따라 공개될 수 있다.<br><br>⑳ RCEP<br><br>- 내용 동일 -<br><br>㉑ 한-캄보디아 FTA<br><br>제3.22조 검증<br>1.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한쪽 당사국으로 수입된 상품이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의 수단으로 검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br>가. 수입자로부터 추가 정보의 서면 요청<br>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추가 정보의 서면 요청<br>다.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수출 당사국의 권한과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상품의 원산지 검증 지원의 서면 요청<br>라. 시설 및 상품의 생산 가공을 시찰하고,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원산지를 언급하는 기록을 검토하기 위한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 검증(이 호에 따른 방문 검증은 다호에 따른 검증 절차가 수행된 후에만 이루어진다), 또는<br>마.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절차<br>2. 수입 당사국은<br>가. 제1항나호의 목적상, 그 상품의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원산지 증명의 사본 및 요청 이유와 함께 서면 요청을 송부한다. | |

| 페이지 | 2022년 기본교재 내용 | 2023년 개정판 내용 | 비 고 |
|---|---|---|---|
| | | 나. 제1항다호의 목적상,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원산지 증명의 사본 및 요청 이유와 함께 서면 요청을 송부한다. 그리고<br>다. 제1항라호의 목적상, 방문이 이루어질 사업장의 수출자나 생산자, 그리고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서면 동의를 요청하고, 방문에 대하여 제안된 날짜 및 장소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목적을 적시한다.<br>3. 수입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 검증은 수입 당사국과 수출 당사국 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동의와 지원을 받아 수행될 수 있다.<br>4. 제1항가호부터 라호까지에 따른 검증의 경우, 수입 당사국은<br>가. 수출 당사국의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발급 기관이나 권한 있는 당국이 제1항가호부터 다호까지에 따른 정보의 서면 요청의 접수일부터 30일에서 90일 사이에 응답하도록 허용한다.<br>나.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 있는 당국이 제1항라호에 따른 방문 검증에 대한 서면 요청의 접수일부터 30일 내에 그 요청을 동의 또는 거부하도록 허용한다. 그리고<br>다.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접수일부터 90일 내에 검증에 따른 결정을 내린다.<br>5. 제1항의 목적상, 수입 당사국은 그 상품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나 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검증 결과를 그 결과의 이유와 함께 서면 통보한다.<br>6.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은 검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적용을 중지할 수 있다. 수입 당사국은 그 상품의 반출을 허용하나, 그러한 반출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
<td>363p</td>
<td>
<table>
<tr><th>협정명</th><th>근 거 규 정</th></tr>
<tr><td>RCEP</td><td>제4.10조 사전심사결정<br>1. 각 당사자는 어느 한 당사자의 상품이 자신의 영역으로 수입되기 전에, 모든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요청을 제출한 수입자, 수출자나 정당한 이유를 가진 모든 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다음에 대하여 사전심사결정서를 발급한다.<br>가. 품목분류<br>나.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br>다.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일련의 특정한 사실에 따른 관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적절한 방식이나 기준 및 그 적용, 그리고<br>라.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그러한 사안</td></tr>
<tr><td>인도네시아</td><td>제4.10조 사전심사<br>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관세 당국을 통하여 다음에 대한 사전심사서 또는 정보를 발급한다.<br>가. 세번변경에 대한 심사<br>나.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른 특정한 사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의 적용에 관한 정보, 또는<br>다.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td></tr>
</table>
</td>
<td>
<table>
<tr><th>협정명</th><th>근 거 규 정</th></tr>
<tr><td>RCEP</td><td>제4.10조 사전심사결정<br>1. 각 당사자는 어느 한 당사자의 상품이 자신의 영역으로 수입되기 전에, 모든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요청을 제출한 수입자, 수출자나 정당한 이유를 가진 모든 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다음에 대하여 사전심사결정서를 발급한다.<br>가. 품목분류<br>나.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br>다.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일련의 특정한 사실에 따른 관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적절한 방식이나 기준 및 그 적용, 그리고<br>라.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그러한 사안</td></tr>
<tr><td>이스라엘</td><td>4.9조 사전심사결정<br>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에 따라, 상품의 수입 전에, 자국의 관세 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상품의 품목분류 및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사안에 관한 사전심사결정서의 신속한 발급을 규정한다.</td></tr>
<tr><td>캄보디아</td><td>4.9조 사전심사결정<br>1. 각 당사국은 한쪽 당사국의 상품이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기 전에, 모든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요청을 제출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정당한 이유를 가진 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다음에 대하여 사전심사결정서를 발급한다.<br>가. 품목분류<br>나.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br>다.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일련의 특정한 사실에 따른 관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적절한 방식이나 기준 및 그 적용, 그리고<br>라.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그러한 사안</td></tr>
<tr><td>인도네시아</td><td>제4.10조 사전심사<br>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관세 당국을 통하여 다음에 대한 사전심사서 또는 정보를 발급한다.<br>가. 세번변경에 대한 심사<br>나.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른 특정한 사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의 적용에 관한 정보, 또는<br>다.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td></tr>
</table>
</td>
<td>신규협정 추가</td>
</tr>
</table>

<table>
<tr><th>페이지</th><th>2022년 기본교재 내용</th><th>2023년 개정판 내용</th><th>비 고</th></tr>
<tr><td>369p</td><td>3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효력<br>- 중략 -<br>그러나 사전심사서의 내용변경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허위자료제출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당해~~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그 변경일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법 제32조제4항)</td><td>3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효력<br>- 중략 -<br>그러나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그 변경일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법 제32조제4항)</td><td></td></tr>
<tr><td>380p<br>5번째줄</td><td>- 중략 -<br>재결청은 청구인이나 상기에 따른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출한 자료 중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포함한다)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40조제2항)~~<br>~~이 경우 해당 비밀취급자료의 보관·제공·사용 등에 관하여는 법 제38조(비밀유지 의무)를 준용한다.~~</td><td>- 중략 -<br>재결청은 청구인이나 상기에 따른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출한 자료 중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포함한다)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해당 비밀취급자료의 보관·제공·사용 등에 관하여는 법 제38조(비밀유지 의무)를 준용한다.(법 제40조제2항)</td><td>3문단은 제2항의 내용으로 해당조항으로 표현</td></tr>
<tr><td>396p</td><td>＼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table>
<tr><th>추진배경</th><th colspan="2">주요내용</th></tr>
<tr><td rowspan="2">납세지연에 대한 행정상 제제 일원화</td><td>종전</td><td>□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분리<br>○ (납부고지 전 : 납부불성실가산세(ⓐ)<br>-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수정신고일 또는 납부고지일) × 1일 0.025%<br>○ (납부고지 후 : 가산금)<br>- (미납세액 × 3%)(ⓑ) + 매 1개월마다 월0.75%(ⓒ)</td></tr>
<tr><td>개정</td><td>□ 납부지연가산세(①+②)로 통합<br>① 지연이자 성격(ⓐ+ⓒ)은 통합<br>-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 × 1일 ~~0.025%~~<br>② 체납에 대한 제재(ⓑ)는 유지<br>- 미납세액 × 3%</td></tr>
</table></td><td>＼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table>
<tr><th>추진배경</th><th colspan="2">주요내용</th></tr>
<tr><td rowspan="2">납세지연에 대한 행정상 제제 일원화</td><td>종전</td><td>□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분리<br>○ (납부고지 전 : 납부불성실가산세(ⓐ)<br>-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수정신고일 또는 납부고지일) × 1일 0.025%<br>○ (납부고지 후 : 가산금)<br>- (미납세액 × 3%)(ⓑ) + 매 1개월마다 월0.75%(ⓒ)</td></tr>
<tr><td>개정</td><td>□ 납부지연가산세(①+②)로 통합<br>① 지연이자 성격(ⓐ+ⓒ)은 통합<br>-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 × 1일 0.022%[95]<br>② 체납에 대한 제재(ⓑ)는 유지<br>- 미납세액 × 3%</td></tr>
</table>
95)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br>(생략)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2020. 2. 11.)<br>(생략)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2022. 2. 15.)</td><td>관세법 시행령개정으로 각주 추가</td></tr>
</table>

| 페이지 | 2022년 기본교재 내용 | 2023년 개정판 내용 | 비 고 |
|---|---|---|---|
| 397p<br>11번째줄 | ii)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87)]<br><br>87) FTA관세법 시행령 제47조(가산세) ② 법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① 법 제4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 ii)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87)]<br><br>87) FTA관세법 시행령 제47조(가산세) ② 법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① 법 제4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 관세법<br>시행령개정<br><'22. 2. 15.> |
| 398p | 수입신고(협정관세적용) 세액 납부, 1년 후 경정고지(1,000원), 경정고지 납부기한 이후 1년 되는 날에 체납액 납부할 경우 세액?<br><br><사례개요><br>법정 납부기한 경정고지<br>★ <----------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기간 ----------> ★<br>15일 [ 1년 ] 15일 [ 1년 체납 ]<br>납세신고(협정) 경정 납부기한 체납액 납부일<br><br><납부세액><br>1,000 + (1,000×10%) + (1,000 × 3%)<br>경정세액 신고불성실 가산세 체납 가산세<br>+ {1,000 × (법정 납부기한 다음날~납부일, (365일×2) × ~~0.025%~~/일)} = ~~1,312원~~<br>납부지연 가산세(매일 ~~0.025%~~) | 수입신고(협정관세적용) 세액 납부, 1년 후 경정고지(1,000원), 경정고지 납부기한 이후 1년 되는 날에 체납액 납부할 경우 세액?<br><br><사례개요><br>법정 납부기한 경정고지<br>★ <----------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기간 ----------> ★<br>15일 [ 1년 ] 15일 [ 1년 체납 ]<br>납세신고(협정) 경정 납부기한 체납액 납부일<br><br><납부세액><br>1,000 + (1,000×10%) + (1,000 × 3%)<br>경정세액 신고불성실 가산세 체납 가산세<br>+ {1,000 × (법정 납부기한 다음날~납부일, (365일×2) × 0.022%/일)} = 1,290원<br>납부지연 가산세(매일 0.022%) | 관세법<br>시행령개정<br><'22. 2. 15.> |
| 406p<br>각주 | 97) 관세법 제278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br>형법 제38조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br>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몰수, 몰수와 몰수는 병과 할 수 있다. | 97) 관세법 제278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br>형법 제38조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br>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몰수, 몰수와 몰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 |

# 3. 주요 추가내용

## - 136~140p.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갑지)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5쪽 중 제1쪽)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 | | | |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
| 1.수입신고번호 | | | |
| 2.수입자 | 상호 | 성명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통관고유부호 | |
| 3.수출자 | 상호 | 성명 | |
| | 주소 및 국가 | 전화번호 | |
| | | 팩스번호 | |
| 4.생산자 | 상호 | 성명 | |
| | 주소 및 국가 | 전화번호 | |
| | | 팩스번호 | |

| | | | | | |
|---|---|---|---|---|---|
| 5.란 번호 | | | | | |
| 6.품명 · 모델 · 규격 | | | 7.신청일 및 적용법령 | 신청일:<br>적용법령: 법 제8조제1항 □<br>법 제9조제1항□<br>법 제9조제2항□ | |
| 8.원산지증빙서류 종류 | 원산지증명서 [ ] 사전심사서 [ ] 동종동질물품 [ ] | | | | |
| 9.원산지증명서발급 · 작성주체 | 기관 [ ] 자율(수출자) [ ] 자율(생산자) [ ] 자율(수입자) [ ] | | | | |
| 10.원산지(생산지역 주소 및 우편번호) | | 11.기관명 및 종류 | | 국가기관 [ ]<br>상공회의소 [ ]<br>비국가기관(기타) [ ] | |
| 12.발급 · 작성 번호 | | 13.발급 · 작성일 | | | |
| 14.총순중량 | | 15.적출국 | | | |
| 16.적출항 | | 17.출항일 | | 18.환적국 | |
| 19.환적항 | | 20.환적일 | | | |
| 21.연결원산지 증명서발급 국가 | | 22.제3국송품장 발급국가 | | | |
| 23.원산지인증 수출자번호 | | 24.협정적용 순중량 | | | |
| 25.분할차수 | | 26.품목번호 (HS No.) | | 27.협정관세율 (관세율구분부호) | |
| 28.원산지결정 기준 | 완전생산기준 [ ]<br>부가가치기준 [ ]<br>역외가공기준 [ ] | 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 [ ]<br>결합기준 [ ]<br>기타원산지기준 [ ] | | 세번변경기준 [ ]<br>특정공정기준 [ ]<br>자율발급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8조 ·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정관세적용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210mm×297mm[백상지(80g/㎡)]

#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을지)



| | | | |
|---|---|---|---|
| 5.란 번호 | | | |
| 6.품명 · 모델 · 규격 | | | |
| 7.신청일 및 적용법령 | 신청일:<br>적용법령 :<br>법 제8조제1항□<br>법 제9조제1항□<br>법 제9조제2항□ | 신청일:<br>적용법령 :<br>법 제8조제1항□<br>법 제9조제1항□<br>법 제9조제2항□ | 신청일:<br>적용법령 :<br>법 제8조제1항□<br>법 제9조제1항□<br>법 제9조제2항□ |
| 8.원산지증빙서류 종류 | 원산지증명서 [ ]<br>사전심사서 [ ]<br>동종동질물품 [ ] | 원산지증명서 [ ]<br>사전심사서 [ ]<br>동종동질물품 [ ] | 원산지증명서 [ ]<br>사전심사서 [ ]<br>동종동질물품 [ ] |
| 9.원산지증명서 발급 · 작성주체 | 기 관 [ ]<br>자율(수출자) [ ]<br>자율(생산자) [ ]<br>자율(수입자) [ ] | 기 관 [ ]<br>자율(수출자) [ ]<br>자율(생산자) [ ]<br>자율(수입자) [ ] | 기 관 [ ]<br>자율(수출자) [ ]<br>자율(생산자) [ ]<br>자율(수입자) [ ] |
| 10.원산지(생산지역 주소 및 우편번호) | | | |
| 11.기관명 | | | |
| 기관종류 | 국가기관 [ ]<br>상공회의소 [ ]<br>비국가기관(기타) [ ] | 국가기관 [ ]<br>상공회의소 [ ]<br>비국가기관(기타) [ ] | 국가기관 [ ]<br>상공회의소 [ ]<br>비국가기관(기타) [ ] |
| 12.발급 · 작성번호 | | | |
| 13.발급 · 작성일 | | | |
| 14.총순중량 | | | |
| 15.적출국 | | | |
| 16.적출항 | | | |
| 17.출항일 | | | |
| 18.환적국 | | | |
| 19.환적항 | | | |
| 20.환적일 | | | |
| 21.연결원산지증명서발급국가 | | | |
| 22.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 | | | |
| 23.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 | | | |
| 24.협정적용 순중량 | | | |
| 25.분할차수 | | | |
| 26.품목번호(HS No.) | | | |
| 27.협정관세율(관세율구분부호) | | | |
| 28.원산지결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 ]<br>원산지재료로만<br>생산기준 [ ]<br>세번변경기준 [ ]<br>부가가치기준 [ ]<br>결 합 기 준 [ ]<br>특정공정기준 [ ]<br>역외가공기준 [ ]<br>기타원산지기준 [ ]<br>자 율 발 급 [ ] | 완전생산기준 [ ]<br>원산지재료로만<br>생산기준 [ ]<br>세번변경기준 [ ]<br>부가가치기준 [ ]<br>결 합 기 준 [ ]<br>특정공정기준 [ ]<br>역외가공기준 [ ]<br>기타원산지기준 [ ]<br>자 율 발 급 [ ] | 완전생산기준 [ ]<br>원산지재료로만<br>생산기준 [ ]<br>세번변경기준 [ ]<br>부가가치기준 [ ]<br>결 합 기 준 [ ]<br>특정공정기준 [ ]<br>역외가공기준 [ ]<br>기타원산지기준 [ ]<br>자 율 발 급 [ ] |

210mm×297mm[백상지(80g/㎡)]

| 작 성 방 법 | | |
|---|---|---|
| 항 목 | 작 성 내 용 | 작 성 례 |
| 1.신고번호 | ㅇ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41234-56-7890123- |
| 2.수입자<br>- 상호<br>- 성명<br>- 주소<br>- 전화번호<br>- 팩스번호<br>- 전자우편주소<br>- 사업자등록번호<br>- 통관고유부호 | ㅇ 원산지증명서 수입자 관련사항을 기재합니다.<br>- '상호'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수입자의 상호를 기재합니다.<br>- 그 외의 항목은 물품양수도 등의 이유로 수입신고인이 원산지증명서'수입자'의 관련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의 해당 항목을 기재합니다. | <br>- ○○통상(주)<br>- 홍○○<br>- △△도 □□시 ○○구 ○○로 123<br>- 02-1234-5678<br>- 02-2345-6789<br>- ○○○@abcd.com<br>- 123-45-6789<br>- ○○통상1234567 |
| 3.수출자<br>- 상호<br>- 국가<br><br>- 성명<br>- 주소<br><br>- 전화번호<br>- 팩스번호 | ㅇ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관련사항을 기재합니다.<br>- 원산지증명서상의 회사명을 기재합니다.<br>-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가 소재하는 국가명을 기재합니다.<br>(통계부호표 국가명 참조)<br>-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br>- 원산지증명서상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br>-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br>-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팩스번호를 기재합니다.<br>(수입자가 아는 경우에 한합니다.) | <br>- ○○○○ Corporation<br>- 칠레의 경우 : CL<br>- 미국의 경우 : US<br>- John △△<br>- 12 ○○○○ Road #10 □□□□ Singapore<br>- 68-1234-5678<br>- 68-1234-5679<br>*(국가코드)-(지역번호)-(전화번호) 순으로 기재 |
| 4.생산자<br>- 상호<br>- 국가<br><br>- 성명<br>- 주소<br><br>- 전화번호<br>- 팩스번호 | ㅇ 체약상대국의 생산자 관련사항을 기재합니다.<br>- 회사명을 기재합니다.<br>- 생산자가 소재하는 국가명을 기재합니다.<br>(통계부호표 국가명 참조)<br>- 생산자 성명을 기재합니다.<br>- 회사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br>-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br>-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팩스번호를 기재합니다.<br>* 생산자관련 정보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상에 생산자가 기재되어 있거나 수입자가 알고 있을 때에만 기재합니다. | <br>- □□□□ Corporation<br>- 칠레의 경우 : CL<br>- 미국의 경우 : US<br>- Al △△<br>- 123 ○○○○ Road #12-34 □□□□ Singapore<br>- 68-1234-9876<br>- 68-1234-9875<br>*(국가코드)-(지역번호)-(전화번호) 순으로 기재 |
| 5.란 번호 | ㅇ 협정관세 적용 신청 물품의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br>- 적용 신청 물품이 다수일 경우 을지에 기재합니다. | - 001. 002, 003, · · ·, 999 |
| 6.품명 · 모델 · 규격 | ㅇ 협정관세 신청 물품의 품명 · 모델 · 규격을 기재합니다. | - strength mount / ○○○mount / 12*34*56(mm) |
| 7.신청일 및 적용법령 | ㅇ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재합니다.<br>ㅇ 협정관세 적용 신청의 근거법령에"√"를 기재합니다. | - 2016/07/01 |
| 8.원산지증빙서류 종류 | ㅇ 원산지물품 확인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해당 근거자료에 "√"를 기재합니다. | -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br>원산지증명서 [√]<br>사전심사서 [ ]<br>동종동질물품 [ ] |

| 작 성 방 법 | | |
|---|---|---|
| 9.원산지증명서 발급 · 작성주체 | ㅇ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 작성주체에 "√"를 기재합니다. | -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br>기 관 [√]<br>자율(수출자) [ ]<br>자율(생산자) [ ]<br>자율(수입자) [ ]<br>- 한-미 FTA 수출자가 자율 작성한 경우<br>기 관 [ ]<br>자율(수출자) [√]<br>자율(생산자) [ ]<br>자율(수입자) [ ] |
| 10.원산지(생산지역 주소 및 우편번호) | ㅇ 원산지증명서류상의 원산지(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br>- 원산지: FTA 원산지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원산지<br>* 한-EU FTA 적용물품으로 원산지가 EU 당사국내 어느 한 국가가 아닌 경우'EU'로 기재 가능합니다.<br>ㅇ 체약상대국이 이스라엘인 경우에는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의 주소 및 우편번호로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 - 원산지가 싱가포르인 경우: SG<br>- 원산지가 미국인 경우: US<br>* 국가부호: 국가별 ISO코드 (무역통계부호표 참조, '이하 동일')<br>- 이스라엘의 경우 주소: 12 ○○○○ Road #10 □□□□<br>- 이스라엘의 경우 우편번호: 1234567 |
| 11.기관명 및 종류 | ㅇ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명을 기재합니다.<br>ㅇ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종류에 "√"를 기재합니다.<br>* 9번 항목이 "기관"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싱가포르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br>기관명 Singapore Customs<br>기관종류 국가기관 [√]<br>상공회의소 [ ]<br>비국가기관(기타) [ ] |
| 12.발급 · 작성번호 | ㅇ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 작성번호를 기재합니다.<br>*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승인번호를 기재합니다.<br>*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해당 품목번호(HS No.)를 기재합니다.<br>* 띄어 쓰지 않고 대문자로 기재합니다.<br>* 특수문자('-' ,'/'등)는 생략합니다.<br>*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뒤쪽에 발급일을 기재합니다.<br>* 같은 날짜에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뒤쪽에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 자율발급인 경우 해당서류 번호를 기재<br>- 해당서류번호가 없을 경우 송품장 번호를 기재<br>- VN-KR/02 71인 경우:<br>'VNKR0271'<br>'VNKR0271(20160701)'<br>'VNKR0271(2016070102)' |
| 13.발급 · 작성일 | ㅇ 원산지증명서상의 발급일 또는 작성일을 기재합니다.<br>- 기관발급의 경우 : 발급일을 기재합니다.<br>- 자율증명의 경우 : 서명일을 기재합니다.<br>*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승인일을 기재합니다.<br>*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생략합니다. | - 발급일이 2016.7.1인 경우: 2016/07/01 |
| 14.총순중량 | ㅇ 원산지증명서상의 총순중량을 기재합니다. | - 100kg |
| 15.적출국 | ㅇ 선하증권(B/L)상의 선적국을 기재합니다.<br>- 선적국의 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 | - 선적국이 미국인 경우: US |
| 16.적출항 | ㅇ B/L상의 선적항을 기재합니다. | - 적출항이 싱가포르 항구인 경우: Singapore |
| 17.출항일 | ㅇ B/L상의 B/L 발행일을 기재합니다. | - B/L상의 발행일(Date of issue of B/L)이 2016.7.1인 경우: 2016/07/01 |
| 18.환적국 | ㅇ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국을 기재합니다. | - 싱가포르에서 출발하여 일본에서 환적한 경우: JP |
| 19.환적항 | ㅇ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항을 기재합니다. | - 환적항이 요코하마 항구인 경우: Yokohama |

| 작 성 방 법 | | |
|---|---|---|
| 20.환적일 | ㅇ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일을 기재합니다. | - 환적일이 2016.7.1인 경우: 2016/07/01 |
| 21.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국가 | ㅇ 한-아세안 FTA 및 RCEP의 규정에 따라 생산국의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다른 체약상대국이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최초로 발급한 국가의 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 | - 베트남 원산지물품을 싱가포르에서 다시 수출하며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VN' |
| 22.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 | ㅇ 제3국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발급된 국가의 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 | - 일본에서 제3국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JP' |
| 23.원산지인증 수출자번호 | ㅇ 수출자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br>* 특수문자('/', '-' 등)는 생략합니다.<br>* 빈칸은 제거합니다.(붙여서 기재) | - IT-001-ㅇㅇ123인 경우:'IT001ㅇㅇ123' |
| 24.협정적용 순중량 | ㅇ 수입신고 물품 중 협정관세적용신청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합니다.<br>-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분할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합니다. | - 원산지증명서상의 윤활유 1,000kg 중 500kg에 대해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500kg |
| 25.분할차수 | ㅇ 원산지증명서의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분할차수를 기재합니다. | - 2회차 분할신고시: 2 |
| 26.품목번호 (HS No.) | ㅇ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목번호 6단위를 기재합니다.<br>* 수입신고서의 품목번호와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목번호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br>*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번호를 기재합니다. | -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 6단위: 2710.19 |
| 27.협정관세율 (관세율구분부호) | ㅇ 협정관세율(관세율구분부호)을 기재합니다.<br>-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과 해당 관세율구분부호를 기재합니다. | - 한-싱 자유무역협정세율이 0%인 항공기용 기관오일(2710.19-7110)를 수입한 경우: 0.0(FSG) |
| 28.원산지결정기준 | ㅇ 해당 원산지물품의 결정기준에"√"를 기재합니다.<br>*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결합기준에 "√"를 기재합니다.<br>*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물품으로 원산지기준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자율발급에 "√"를 기재합니다. | 완전생산기준 [ ]<br>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 [ ]<br>세번변경기준 [ ]<br>부가가치기준 [ ]<br>결 합 기 준 [√]<br>특정공정기준 [ ]<br>역외가공기준 [ ]<br>기타원산지기준 [ ]<br>자 율 발 급 [ ] |

- 212~213p.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ORIGINAL

| | | | | | | |
|---|---|---|---|---|---|---|
|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country:<br><br>2. Producer's name and address, country:<br><br>3. Consignee's name and address, country: | | | Certificate No.:<br><br>CERTIFICATE OF ORIGIN<br>Form for Korea-China FTA<br><br>Issued in _____<br>(see Overleaf Instruction) | | | |
|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br><br>Departure Date:<br><br>Vessel/Flight/Train/Vehicle No.:<br><br>Port of loading:<br><br>Port of discharge: | | | 5. Remarks: | | | |
| 6. Item number |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 9. HS code (Six-digit code) | 10. Origin criterion | 11.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s (liters, ㎥, etc.) | 12. Number and date of invoice |
| 13. Declaration by the exporter:<br><br>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br><br>(Country)<br><br>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goods exported to<br><br>(Importing country)<br><br>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 | | 14. Certification:<br><br>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China FTA.<br><br>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제1란에는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를 적습니다.

2. 제2란에는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생산자의 물품이 증명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를 적습니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러한 정보의 비밀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라고 기재할 수 있으며,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SAME'이라고 적습니다.
3. 제3란에는 한국 또는 중국에 거주하는 수하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를 적습니다.
4. 제4란에는 운송수단 및 경로, 출발일자, 운송수단의 번호, 선적항 및 하역항을 적습니다.
5. 제5란에는 비당사국의 운영인에 의하여 송품장이 발행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이름을 적습니다. 또한, 증명서가 소급 발급된 경우에는 'ISSUED RETROACTIVELY', 인증된 진본의 경우에는 'CERTIFIED TRUE COPY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 (발행번호) dated (날짜)'를 적습니다.
6. 제6란에는 물품의 연번을 적습니다.
7. 제7란에는 물품의 포장에 표시된 화인(shipping marks) 및 번호를 적습니다. 화인이 문자나 숫자가 아닌 이미지나 기호인 경우에는 'IMAGE OR SYMBOL(I/S)'를 기재하며, 그 외에는 'NO MARKS AND NUMBERS(N/M)'를 적습니다.
8. 제8란에는 포장의 수량 및 종류를 적습니다. 품명은 송품장 및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물품이 포장되지 아니한 경우 'IN BULK'라고 적습니다.
9. 제9란에는 제8란의 각 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10. 제10란에는 제8란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중국과의 협정(이하 "협정") 제3장(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이행절차) 및 부속서3-가(품목별원산지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재 문구 | 원산지결정기준 |
|---|---|
| WO | 협정 제3.4조 및 부속서3-가(품목별원산지기준)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 생산된 경우 |
| WP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협정 제3장에 부합하는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
| PSR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세번변경, 역내부가가치비율, 특정 공정요건 또는 부속서3-가에 명시된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여 생산된 경우 |
| OP | 협정 제3.3조(특정상품의 취급)을 적용받는 경우 |

11. 제11란에는 킬로그램(Kg)으로 표시된 총중량을 적습니다. 관례적으로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단위(예: 물품의 부피 또는 개수)를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12. 제12란에는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을 적습니다. 비당사국의 운영인에 의하여 송품장이 발행되어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원본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을 적습니다.
13. 제13란은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14. 제14란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의 권한 있는 발급담당자가 작성, 서명, 날짜를 기재하고 발급인장을 날인합니다.

- 221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6서식]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Continuation Sheet

Certificate No. Form RCEP

| 6. Item number |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and description of goods. | 9. HS Code of the goods (6 digit-level) | 10. Origin Conferring Criterion | 11. RCEP Country of Origin | 12. Quantity (Gross weight or other measurement), and value (FOB) where RVC is applied | 13. Invoice number(s) and date of invoice(s) |
|---|---|---|---|---|---|---|---|
| | | | | | | | |

14. Remarks

| 15. Declaration by the exporter or producer | 16. Certification |
|---|---|
|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and that the goods covered in this Certificate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hese goods are exported to:<br><br>……<br>(importing country)<br><br>……<br>Place and date, and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br><br>……<br>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eal or stamp of Issuing Body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2022. 5. 18. 제정)

# Declaration of Origin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Unique reference number:

| | |
|---|---|
| 1. Exporter's name, address, country, and contact | 2. Authorization code |
| 3. Producer's name, address, country, and contact(if known) | 4. Importer's or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and contact |

| 5. Item number | 6. Number and kind of packages; and description of goods. | 7. HS Code of the goods (6 digit-level) | 8. Origin Conferring Criterion | 9. RCEP Country of Origin | 10. Quantity (Gross weight or other measurement), and value (FOB) where RVC is applied | 11. Invoice number(s) and date of invoice (s) |
|---|---|---|---|---|---|---|
| | | | | | | |

12. Remarks

13. Declaration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and that the goods covered in this Declaration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hese goods are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Date of Declaration: Name of Signatory: Signature:

14. ☐ Back-to-back Declaration of Origin ☐ Third-party invoicing

| 작 성 방 법 |
|---|

※ 이 서식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8조 및 부속서 3-나에 따라 인증수출자가 작성할 수 있는 원산지신고서의 권고 서식이며,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이 서식의 작성방법은 인쇄될 필요가 없습니다.

1. 모든 상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협정"이라 합니다)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과 적용 가능한 경우 협정 제2장 제2.6조(관세 차별)를 준수해야 합니다.

2. "Unique reference number"란에는 이 신고서의 작성자에 의해 부여된 임의의 번호를 적습니다.

(예시)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의 발급 번호, 상업송장의 일련 번호 등

3. 제1란에는 수출자의 이름, 주소, 국가 및 작성 가능한 범위에서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E-Mail) 주소를 적습니다.

4. 제2란에는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5. 제3란에는 생산자의 이름, 주소, 국가, 전화번호 및 작성 가능한 범위에서 전자메일(E-Mail) 주소를 적습니다. 생산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NOT AVAILABLE"이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6. 제4란에는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주소, 국가 및 작성 가능한 범위에서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E-Mail) 주소를 적습니다.

7. 제5란에는 각 상품의 연번을 적습니다.

8. 제6란에는 포장의 수량 및 종류,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해당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습니다.

9. 제7란에는 각 상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10. 제8란에는 각 상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 원산지 결정 기준 | 기재 문구 |
|---|---|
| (가) 협정 제3장 제3.2(가)조를 충족하는 완전획득 또는 생산된 상품 | WO |
| (나) 협정 제3장 제3.2(나)조를 충족하는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 | PE |
| (다) 협정 부속서 3-가에 규정된 품목별 요건을 충족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 | |
| - 세번변경 | CTC |
| - 역내가치포함비율 | RVC |
| - 화학반응 | CR |
| (라) 협정 제3장 제3.4조를 충족하는 상품 | ACU |
| (마) 협정 제3장 제3.7조를 충족하는 상품 | DMI |

1)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다)를 사용한 경우 상기 표의 기재 문구를 대신하여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실제로 사용된 원산지 결정기준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예시: CTH, RVC 48% 등)

2)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나) 또는 (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 및 (마)에 해당하는 기재문구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예시: CTC, DMI)

11. 제9란에는 각 상품에 대한 RCEP 원산지 국가를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다만, 원산지 국가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수출자·생산자 및 수입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최고 세율 국가명 다음에 별표(*)를 표시합니다. 협정 제2.6조제6항가호가 적용된 경우 "*"를, 제2.6조제6항나호가 적용된 경우에는 "**"를 기재합니다.

(예) Australia* 또는 Indonesia**

| 상황 | 제9란<br>RCEP 원산지 국가에 기입 |
|---|---|
| (가) 상품이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에 명시된 품목이나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의 추가요건(DV 20%)을 충족하지 않음<br>(나)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이 협정 제3장 제3.2(나)조에 의한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되었으나, 협정 제2장 제2.6조제5항에 규정된 최소공정 외의 공정이 수출 당사국에서 발생하지 않음 | 협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서 생산한 물품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 중 최고가치를 기여한 당사국명 기재 |
| 아래를 포함한 기타 모든 경우,<br>(다) 상품이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에 명시된 품목이며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의 추가요건(DV 20%)을 충족함<br>(라) 상품이 협정 제3.2(가)조에 따라 완전획득 또는 생산됨<br>(마)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이 협정 제3장 제3.2(다)조에 의한 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함<br>(바)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이 협정 제3.2(나)조에 의한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되었고, 협정 제2장 제2.6조제5항에 규정된 최소공정 외의 공정이 수출 당사국에서 발생함 | 수출 당사국명 기재 |

12. 제10란에는 총중량 등 상품의 수량과 함께 제8란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이 적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본선인도가격(FOB)을 적습니다.

13. 제11란에는 송장 번호와 날짜를 적습니다. 다수의 송장이 사용된 경우, 각 물품 별로 송장번호와 날짜를 기재합니다.

14. 제12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적습니다. 다만, 제14란에 "√"표시 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상세정보를 이 난에 기재합니다.

15. 제13란에는 이 서식의 작성자가 수입 국가명, 작성 일자, 작성자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합니다.

16. 제14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가. 협정 제3.19조에 따른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Back-to-back Declaration of Origin"란에 "√"표시 합니다. 이 경우 원본 원산지증명의 참조번호, 발급일, 발급 국가, 최초 수출 당사국의 RCEP 원산지 국가, 최초 수출 당사국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해당되는 경우로 한정)를 제12란에 적습니다.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송장이 발급된 경우 "Third-party invoicing"란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과 국가명을 제12란에 적습니다.

# Continuation Sheet

Unique reference number:

| 5. Item number | 6. Number and kind of packages; and description of goods. | 7. HS Code of the goods (6 digit -level) | 8. Origin Conferring Criterion | 9. RCEP Country of Origin | 10. Quantity (Gross weight or other measure ment), and value (FOB) where RVC is applied | 11. Invoice number (s) and date of invoice (s) |
|---|---|---|---|---|---|---|
| | | | | | | |

12. Remarks

13. Declaration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and that the goods covered in this Declaration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hese goods are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Date of Declaration: Name of Signatory: Signature:

- 222p. 이스라엘 및 캄보디아 협정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7서식]

##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 CERTIFICATE OF ORIGIN - KOREA - ISRAEL FTA | |
|---|---|
| *1. Exporter (name, address, country)* | *2. Certificate no.* |
| *3. Importer(name, full address, country)* | *4. Country of Origin* |
| *5. Port of shipment and Transport Details (Optional)* | *6. Country of destination* |
| *7. Observations* | *8. Commercial invoices* |

*9. Description of goods*

| *No.* | *Tariff item number* | *Description of the goods* | *Origin Criterion* | *Gross weight or other measure* |
|---|---|---|---|---|
| | | | | |

*ORIGIN CERTIFICATION*

| *10. Declaration by:* | *11. Certification by the Issuing Authority:* |
|---|---|
| ☐ *The Producer*<br>☐ *The Exporter (if not the producer)*<br><br>*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he has read the instructions for filling out this Certificate, and that the goods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Agreement.*<br><br>*Date:*<br><br>*Signature* | *We hereby certify the authenticity of this certificate and that it wa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br><br>*Date:*<br><br>*Stamp and signature*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작성방법은 전자 및 종이 원산지증명서 모두에 적용됩니다.

1.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2. 제2란에는 증명서 고유번호(발급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3. 제3란에는 최종 목적지국 상품 수입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상업적인 이유로 수입자를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Unknown"이라고 적습니다.
4. 제4란에는 해당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국가명을 적습니다.
5. 제5란에는 한국 또는 이스라엘의 선적항을 적습니다.(해당란은 선택 기재사항입니다.)
6. 제6란에는 상품의 최종 목적지인 국가명을 적습니다.
7. 제7란에는 제2사본(해당 시 "DUPLICATE" 기재), 소급발급(해당 시 "ISSUED RETROSPECTIVELY" 기재), 역외가공에 대한 언급(해당 시 "OUTWARD PROCESSING" 기재), 생산 지역1 등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8. 제8란에는 증명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송장의 번호를 적습니다. 상업적인 이유로 송장의 번호를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란에 "Unknown"이라고 적습니다.
9. 제9란에는 이 증명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적습니다. "No."란에는 상품의 연번을 적고, "Tariff item number"란에는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Origin Criterion"란에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의 경우, 수출자 및 생산자는 충족한 원산지 기준을 아래 표와 같은 방식으로 적고, "Gross weight or other measure"란에는 총 중량 또는 상품의 그 밖의 모든 수량 단위를 상세히 적습니다.

   * 원산지증명서에 상세히 기술된 HS 품목번호와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실제 품목분류가 상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증명서가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 | |
|---|---|
| 가. 협정 제3.3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WO" |
| 나. 당사국에서 완전히 획득되지 않은 재료를 결합하여 그 당사국에서 획득된 상품. 다만, 그러한 재료가 협정 제3.4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 "PSR" |
| 다. 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장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갖춘 재료만으로 당사국에서 획득된 상품 | "PE" |
| 라. 협정 부속서 3-나(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 기초하여 합의된 대로 역외가공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 "OP" |

   원산지증명서에 상세히 기술된 원산지 기준과 실제 원산지 기준이 상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증명서가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10. 제10란에는 이 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The Produce"란에 "√"표시합니다. 만약 수출자가 생산자가 아닌 경우 "The Exporter (if not the producer)"란에 "√"표시합니다.
11. 제11란에는 증명기관의 세부사항을 기재하고, 그 기관이 서명하고 인장을 찍습니다.

---

1.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우편번호를 포함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8서식]

#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 CERTIFICATE OF ORIGIN - KOREA - ISRAEL FTA(Additional Page) | | | | |
|---|---|---|---|---|
| *Certificate no :* | | | | |
| *9. Description of goods* | | | | |
| *No.* | *Tariff item number* | *Description of the goods* | *Origin Criterion* | *Gross weight or other measure* |
| *ORIGIN CERTIFICATION* | | | | |

| | |
|---|---|
| *10. Declaration by:*<br>☐ *The Producer*<br>☐ *The Exporter (if not the producer)*<br><br>*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he has read the instructions for filling out this Certificate, and that the goods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Agreement.*<br><br>*Date:*<br><br>*Signature* | *11. Certification by the Issuing Authority:*<br><br>*We hereby certify the authenticity of this certificate and that it wa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br><br>*Date:*<br><br>*Stamp and signature* |

210mm×297mm[백상지(80g/㎡)]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0의3]

##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15조제20항제2호 관련)

| | |
|---|---|
|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 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goods are of ( [2]) (location & postal code[3]) preferential origin. |
| 작성방법 | 인증수출자는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위 문안을 다음과 같이 타자로 치거나, 인장을 찍거나 인쇄하여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되, 정자로 적습니다.<br>1)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를 적습니다.<br>2) 원산지 국가(즉, Korea 또는 Israel)를 적습니다.<br>3)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우편번호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0의4]

##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15조제20항제3호 관련)

| | |
|---|---|
|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 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these goods of( 1))(location & postal code2)), unless otherwise clearly specified,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State of Israel and the Republic of Korea.<br><br>Place and Date　　Signature of the Exporter |
| 작성방법 | 수출자는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위 신고문안을 다음과 같이 타자로 치거나, 인장을 찍거나 인쇄하는 방법으로 영문으로 작성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와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되, 정자로 적습니다.<br>1) 원산지 국가(즉, Korea 또는 Israel)를 적습니다.<br>2)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우편번호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9서식]

# 캄보디아와의 협정(제3.16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 Certificate of Origin
## ORIGINAL (DUPLICATE/TRIPLICATE)

| | |
|---|---|
|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 Certificate of Origin No.<br>KOREA-CAMBODIA FREE TRADE AGREEMENT<br>CERTIFICATE OF ORIGIN<br>(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br>FORM KC<br>Issued in ……<br>(Country)<br>See Overleaf Notes |
|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if known | |
| 3. Importer's or Consignee's name and address | |
|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br><br>Departure date<br><br>Vessel's name/Aircraft etc.<br><br>Port of Discharge | 5. For Official Use<br><b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Given Under Korea-Cambodia Free Trade Agreement<br><b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br><br>……<br>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

| 6. Item number |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 8.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 9. Origin criterion (see Overleaf Notes) | 10.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s |
|---|---|---|---|---|---|
| | | | | | |

| | |
|---|---|
|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br>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br><br>……<br>(Country)<br>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Cambodia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br><br>……<br>(Importing Country)<br><br>……<br>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 13. Certification<br>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br><br>……<br>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
| 14. ☐ Third Party Invoicing |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캄보디아와의 협정(이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한국·캄보디아 양 당사국에 적용됩니다.
2.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 제3.9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상호), 주소를 적습니다.
4. 제2란에는 아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산자의 성명(상호), 주소를 적습니다.
5. 제3란에는 수입자의 성명(상호), 주소를 적습니다.
6. 제4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7. 제5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8. 제6란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9. 제7란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포장의 표시와 번호를 적습니다.
10. 제8란에는 포장의 개수 및 종류 · 품명 · 수량 · 품목번호 등을 적습니다.
    가.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고, 상표도 적습니다.
    나. 품목번호(HS No.)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6자리)를 적습니다.
11. 제9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 | |
|---|---|
| 가. 협정 제3.3조에 규정·정의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 | "WO" |
| 나. 원산지 재료로만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 "PE" |
| 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물품<br>–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br>– 일정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br>(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물품)<br>– 세번변경기준과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 <br>"CTC"<br>"RVC %"<br>(예: "RVC 45%")<br>"CTH + RVC %" |
| –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 | "Specific Processes" |
| 라. 협정 제3.5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 "Article 3.5" |

12. 제10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과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본선인도가격(FOB가격)을 적습니다.
13. 제11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14. 제12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15. 제13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16. 제14란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Third Party Invoicing"에 "√"표시를 하고 송장을 발급한 회사의 상호와 국가명을 해당 란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10서식]

## 캄보디아와의 협정(제3.1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 Declaration of Origin
# Korea-Cambodia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Approved exporter authorization code: Reference No.: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if known):

Telephone: Fax: E-Mail:

3. Importer's or Consignee'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E-Mail:

| 4.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invoice number, quantity) | 5. HS Tariff Classification # | 6. Origin Criterion | 7. Producer | 8. FOB value only when the RVC criterion is used | 9. Country of Origin |
|---|---|---|---|---|---|
| | | | | | |

10. Observations/Findings: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declaration,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declaration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Declaration.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Cambodia Free Trade Agreement.

This Declaration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 11. Authorized signature: | Company: |
|---|---|
| Name: | Title: |
| YYYY MM DD<br>Date: / / / | Telephone:<br>Fax :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수출당사국의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17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 사용됩니다. 작성자는 이 서식을 영문으로 명료하게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타자로 치거나 수기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작성을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1. 제1란에는 수출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원산지증명서의 고유한 참조번호를 적습니다.
2. 제2란의 생산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증명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VARIOUS"로 기재하고, 제4란의 물품과 상호 참조되는, 모든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자의 목록을 첨부합니다. 제공된 정보가 비밀인 경우,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3. 제3란에는 수입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4. 제4란에는 각 물품에 대한 상세한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송품장 및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물품의 수량을 포함하여 상업 송장에 기재된 송장 번호를 적습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수출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인증받은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제5란에는 제4란의 각 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6. 제6란에는 제4란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캄보디아와의 협정(이하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 및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
|---|---|
| 가. 협정 제3.3조에 규정·정의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 | "WO" |
| 나. 원산지 재료로만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 "PE" |
| 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물품<br>–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br>– 일정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br>(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물품)<br>– 세번변경기준과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 <br>"CTC"<br>"RVC %"<br>(예: "RVC 45%")<br>"CTH + RVC %" |
| –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 | "Specific Processes" |
| 라. 협정 제3.5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 "Article 3.5" |

7. 제7란에는 수출자가 제4란의 물품의 생산자인 경우 "YES"라고 적습니다. 수출자가 그 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NO"를 적고 그 옆에 아래의 표에 따라 (1), (2)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 기재 문구 | 원산지증명서 작성근거 |
|---|---|
| (1) |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수출자의 완전한 인지 |
| (2) |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확인에 대한 수출자의 신뢰 |

8. 제8란에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 시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본선인도가격(FOB가격)을 적습니다.
9.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를 기재합니다: 한국(KR), 캄보디아(CA)
10. 제10란에는 제4란의 각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및 역내부가가치 등에 대한 사전심사, 판정을 받은 경우 이 증명서와 관련된 다른 참고사항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발급당국, 참조번호 및 발급날짜 포함)
11. 제11란에는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이 란의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이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236~239p.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4쪽 중 제1쪽)

|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 | |
|---|---|---|
| 신청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작성방법 참조 |

| | | | | |
|---|---|---|---|---|
| 1.신청구분 | 신규발급 [ ] 재발급( ) [ ] 정정발급( ) [ ] 소급발급(선적 후 발급) [ ] | | | |
| 2.신청인 | 구분 | 생산자 [ ] 수출자 [ ] 관세사 [ ] 기타( ) [ ] | | |
| | 상호(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 3.원산지인증 수출자 | 비해당 [ ] 해당 [ ] (인증번호: ) | | | |
| 4.적용자유 무역협정 | | | | |
| 5.수출자 | 상호(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 전화/전자우편주소 | |
| 6.생산자 | 상호(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 전화/전자우편주소 | |
| 7.수입자 | 상호 | | 대표자 | |
| | 주소(국가) | | 전화번호 | |

8.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 수출신고번호(수리일) | | | | 본선인도가격(FOB USD) | | | | | | | | |
|---|---|---|---|---|---|---|---|---|---|---|---|---|
| 수출신고필증 란 번호 | 품목 번호 (HS No.) | 품명·규격 | 금액 (USD) | 원산지결정기준 | | | | | | | 부가가치비율 및 비율계산 | 원산지 소명서 대체서류 |
| | | | | 완전생산 | 원산지재료로만생산 | 세번변경 | 부가가치 | 결합기준 | 특정공정 | 역외가공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운송수단/선(편)명 | 선박 [ ] 항공기 [ ] 기타 [ ] / | 10.적재항(출항일) | |
| 11.목적국/항구 | / | 12.포장종류부호/개수 | / |
| 13.총중량 | | 14.송품장 번호/발급일 | / |
| 15.원산지증명서 특례 | 제3국 송품장 [ ] 전 시 [ ]<br>연결 원산지증명서 [ ]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상공회의소 회장)** 귀 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
|---|---|---|
| 첨부 서류 | <신규발급><br>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br>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입신고 대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br>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 사본<br>다. 우편물 · 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 영수증 · 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br>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br>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합니다)<br>4.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br>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수출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br>1)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br>2)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br>나. 관세청장이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 · 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br>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br><br><재발급><br>1. 재발급 신청사유서<br><정정발급><br>1. 원산지증명서 원본(정정발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원본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br>2. 정정발급 신청사유서<br>3. 정정사유 입증 서류 | 수수료<br>7,000원<br>(다만, 세관장 발급 시 면제) |

| 작 성 방 법 | | |
|---|---|---|
| 항 목 | 작 성 내 용 | 작성례 |
| 1.신청구분 | ㅇ "신규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또는 "소급발급" 중에 해당하는 것에"√"를 기재합니다.<br>- 재발급, 정정발급 뒤 괄호 안에는 구(舊)신청번호를 기재합니다. | ㅇ 신규발급의 경우<br>신규발급 [√] 재 발 급 [ ]<br>정정발급 [ ] 소급발급 [ ] |
| 2.신청인 | ㅇ "생산자", "수출자", "관세사" 또는 "기타" 중 해당하는 것에 "√"를 기재합니다.<br>ㅇ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대표자를 기재합니다.<br>ㅇ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ㅇ 수출자가 신청하는 경우<br>생산자 [ ] 수출자 [√]<br>관세사 [ ] 기 타 [ ]<br>ㅇ ○○물산(주) 홍○○<br>ㅇ 123-45-67890 |
| 3.원산지인증 수출자 | ㅇ "비해당" 또는 "해당" 중 해당하는 것에 "√"를 기재합니다.<br>ㅇ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합니다.<br>ㅇ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ㅇ 해당하는 경우<br>비해당 [ ]<br>해 당 [√] (인증번호: ) |
| 4.적용자유 무역협정 | ㅇ 수입국가와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ㅇ 한-아세안 FTA |
| 5.수출자 | ㅇ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대표자를 기재합니다.<br>ㅇ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br>ㅇ 주소: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를 기재합니다.<br>ㅇ 전화/전자우편주소: 발급신청 부서(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신청부서 공용(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 ㅇ ○○물산(주) 홍○○<br>ㅇ 123-45-67890<br>ㅇ □□시 ○○구 △△대로 123<br>ㅇ 02-123-4567/○○○@abcd.com |
| 6.생산자 | ㅇ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대표자를 기재합니다.<br>ㅇ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br>ㅇ 주소: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를 기재합니다.<br>ㅇ 전화/전자우편주소: 발급신청 부서(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신청부서 공용(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 ㅇ ○○상사(주) 김△△<br>ㅇ 234-56-78910<br>ㅇ □□시 ○○구 △△로<br>ㅇ 031-123-4567 /○○○@bcde.com |
| 7.수입자 | ㅇ 상호: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상호를 기재합니다.<br>ㅇ 대표자: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회사의 대표자를 기재합니다.<br>ㅇ 주소: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주소를 기재합니다.<br>ㅇ 전화번호: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ㅇ ○○ Corporation<br>ㅇ John △△<br>ㅇ55 Newton Road #10 ○○ house<br>ㅇ65-1234-5678 |

<table>
<tr><th colspan="3">작 성 방 법</th></tr>
<tr><th>항 목</th><th>작 성 내 용</th><th>작성례</th></tr>
<tr><td rowspan="2">8.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 기준<br>※ 수출품목의 개수가 총 3개 이상인 경우에는 품목번호(HS No.), 품명, 규격 및 금액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td><td>○ 수출신고번호(수리일): 수출신고필증상의 신고번호 및 신고수리일 기재합니다.<br>○ 본선인도가격(FOB USD): 수출신고필증상의 총신고가격을 미화로 기재합니다.<br>○ 수출신고필증 란 번호: 수출신고필증상의 란 번호를 기재합니다.(란 번호/총 란 수)</td><td>○ 010-10-16-12345678 (2016/07/01)<br>○ USD 12,000<br>○ 총 5란 중 3란 품목의 경우: 3 / 5</td></tr>
<tr><td>○ 품목번호(HS No.): 품목번호 6단위를 기재합니다.<br>○ 품명 · 규격: 수출신고필증상의 품명 · 규격을 기재합니다.<br>○ 금액(USD): 수출신고필증상의 해당 물품의 신고가격을 신고환율로 환산하여 미화로 기재합니다.<br>○ 원산지결정기준: 해당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합니다.<br><br>○ 부가가치비율 및 비율계산: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에 한하여 기재합니다.</td><td>○ 0304.31<br>○ Tilapias(Oreochromis spp.)<br>○ USD 12,000<br>○ 세번변경 및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br><table><tr><th colspan="8">원산지결정기준</th></tr><tr><th>완전생산</th><th>원산지재료로만 생산</th><th>세번변경</th><th>부가가치</th><th>결합기준</th><th>특정공정</th><th>역외가공</th><th>기타</th></tr><tr><td>[ ]</td><td>[ ]</td><td>[ ]</td><td>[ ]</td><td>[√]</td><td>[ ]</td><td>[ ]</td><td>[ ]</td></tr></table>○ 역내부가가치 50% 이상 기준인 경우<br>- 55% (USD10,000-USD4,500) /USD10,000</td></tr>
<tr><td></td><td>○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따라 아래의 원산지소명서 대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br>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br>②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br>③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td><td>○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여 원산지소명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②"를 기재</td></tr>
<tr><td>9.운송수단 /선(편)명</td><td>○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중 해당하는 것에 "√"를 기재합니다.<br>○ 선명 또는 편명을 기재합니다.</td><td>○ 선박 [√] 항공기 [ ] 기타 [ ]<br>○ KE 123</td></tr>
<tr><td>10.적재항 (출항일)</td><td>○ 수출물품의 적재항(또는 적재예정항), 출항일(또는 출항예정일)을 기재합니다.</td><td>○ 부산항(2016/07/01)</td></tr>
<tr><td>11.목적국 /항구</td><td>○ 수출물품의 최종 목적국 및 항구를 기재합니다.</td><td>○ 베트남/하노이항</td></tr>
<tr><td>12.포장종류 부호/개수</td><td>○ 수출물품의 포장종류 부호와 포장개수를 기재합니다.</td><td>○ CS/1,000</td></tr>
<tr><td>13.총중량</td><td>○ 수출물품의 총중량을 기재합니다.</td><td>○ 1,000Kg</td></tr>
<tr><td>14.송품장번호/ 발급일</td><td>○ 송품장 번호와 발급일을 기재합니다.</td><td>○ ABC123456/2016.07.01</td></tr>
<tr><td>15.원산지증명서 특례</td><td>○ "제3국 송품장", "전시", "연결 원산지증명서" 또는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중 해당하는 것에 "√"를 기재합니다.</td><td>제3국 송품장 [√]<br>전 시 [ ]<br>연결 원산지증명서 [ ]<br>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 ]</td></tr>
<tr><td>※ 처리기간</td><td>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br>2. 현지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3일 이내<br>처리기간 산정 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됩니다.</td><td></td></tr>
</table>

- 240~241p. 원산지소명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원 산 지 소 명 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4쪽 중 제1쪽)

| 수출자 · 생산자 | | | | |
|---|---|---|---|---|
| 1.수출자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성 명 | | 전화/팩스번호 | |
| | 주 소 (전자우편주소) | | | |
| 2.생산자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성 명 | | 전화/팩스번호 | |
| | 주 소 (전자우편주소) | | | |

| 물 품 명 세 | | | | |
|---|---|---|---|---|
| 3.품명/규격 | | | 4.품목번호(HS No.) | |
| 5.물품가격 | 가격조건 | 공 장 도가격(EXW) [ ]<br>본선인도가격(FOB) [ ] | 6.원산지결정기준 | |
| | 금 액 | | 7.자유무역협정명칭 | |
| 8.주요생산 공 정 | | | | |

| 원재료명세서 | | | | | | |
|---|---|---|---|---|---|---|
| 9.연번 | 10.재료명 | 11.품목번호 (HS No.) | 12.원산지 | 13.가 격 | | 14.공급자(생산자) |
| | | | | 수 량 | 가 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합 계 | | 원산지재료 | | | | |
| | | 비원산지재료 | | | | |
| | | 합 계 | | | | |

|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 | | |
|---|---|---|---|
| 16.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 예 [ ] 아니오 [ ] | 17.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 예 [ ] 아니오 [ ] |
| 18.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 예 [ ] 아니오 [ ] | (부가가치비율 : % ) | |
| 19.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 충족여부 | | 예 [ ] 아니오 [ ] | |
| 20.결합기준 충족여부 | 예 [ ] 아니오 [ ] | 21.특정공정기준 충족여부 | 예 [ ] 아니오 [ ] |
| 22.누적기준 적용여부 | 예 [ ] 아니오 [ ] | 23.최소기준 적용여부 | 예 [ ] 아니오 [ ] |
| 24.역외가공기준 적용여부 | 예 [ ] 아니오 [ ] | 25.기 타 | 예 [ ] 아니오 [ ] |

210mm×297mm[백상지(80g/㎡)]

| RCEP 원산지 국가 확인(Declaration of RCEP Country of Origin) | | | | | | |
|---|---|---|---|---|---|---|
| 26.수출 대상국 (Export Destination) | 27.수출 대상국의 RCEP 부속서Ⅰ 양허표 부록 지정 물품 여부 (RCEP Appendix of Annex Ⅰ) | | 28.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 (Domestic Value Addition) | 29.최소공정 이외의 공정 국내 수행 여부(Processed Beyond Minimal Operations) | | 30.RCEP 원산지 국가 (RCEP Country of Origin) |
| | 해당(Y) | 미해당(N) | | 수행(Y) | 미수행(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작성·제출합니다.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직 위 :
상 호 및 주 소 :
작 성 일 : 년 월 일

**○○세관장(○○상공회의소 회장)** 귀 하

210mm×297mm[백상지(80g/㎡)]

<table>
<tr><th colspan="2">작 성 방 법</th></tr>
<tr><th>항 목</th><th>작 성 내 용</th></tr>
<tr><td>1.수 출 자</td><td>ㅇ 물품을 실제로 수출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를 기재합니다.</td></tr>
<tr><td>2.생 산 자</td><td>ㅇ 물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실제로 생산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등을 기재합니다.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td></tr>
<tr><td>3.품명/규격</td><td>ㅇ 물품의 품명, 모델명, 규격 및 상표명 등을 기재합니다.<br>예) TV : OamOOng OO-1234 ; OO TV<br>ㅇ 품명은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td></tr>
<tr><td>4.품목번호(HS No.)</td><td>ㅇ 물품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합니다.</td></tr>
<tr><td>5.물품가격</td><td>ㅇ 가격조건 : 본선인도가격(FOB) 또는 공장도거래가격(EXW) 중 해당하는 것에 "√" 를 기재합니다.<br>ㅇ 금액 :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재합니다. 통화단위는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td></tr>
<tr><td>6.원산지결정기준</td><td>ㅇ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table>
<tr><th>원산지결정기준</th><th>기재방법</th></tr>
<tr><td>가. 완전생산 물품</td><td>– WO</td></tr>
<tr><td>나. 원산지재료로만 생산한 물품</td><td>– PE</td></tr>
<tr><td>다. 세번변경기준<br>– 2단위 세번변경기준<br>– 4단위 세번변경기준<br>– 6단위 세번변경기준</td><td><br>– CC<br>– CTH<br>– CTSH</td></tr>
<tr><td>라. 부가가치기준<br>–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br>–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br>– 역외산재료 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br>–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td><td><br>– BD<br>– BU<br>– MC<br>– NC</td></tr>
<tr><td>마. 결합기준<br>–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 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td><td>– CC(CTH 또는 CTSH) + BD(BU, MC 또는 NC)<br>– CC(CTH 또는 CTSH) + SP<br>– BD(BU, MC 또는 NC) + SP<br>– CC(CTH 또는 CTSH) + BD(BU, MC 또는 NC) + SP</td></tr>
<tr><td>바. 특정공정기준</td><td>– SP</td></tr>
<tr><td>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td><td>– OP</td></tr>
<tr><td>아. 기타기준</td><td>– Other</td></tr>
</table>
ㅇ 결합기준 기재 시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비율을 함께 기재합니다.<br>예) - 세번변경기준과 공제법으로 부가가치 비율이 35% 이상 : CTH + BD 35%<br>- 집적법으로 부가가치 비율이 30%이상일 것과 특정공정기준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 BU 30% + SP</td></tr>
<tr><td>7.자유무역협정명칭</td><td>ㅇ 해당 물품에 적용할 자유무역협정 명칭을 기재합니다.<br>예) 적용협정이 아세안과의 협정일 경우: 한-아세안 FTA</td></tr>
</table>

| 작 성 방 법 | |
|---|---|
| 항 목 | 작 성 내 용 |
| 8.주요생산공정 | ㅇ 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기재합니다.<br>예) 면사를 수입하여 직물을 가공한 후 의류를 제조하는 경우<br>① 직조 : 면사 85%, 합성사 15%로 면직물 제조(3m×100m)<br>② 날염 : 면직물에 국내 ○○업체가 생산한 염료로 염색<br>③ 재단 및 봉제 : 남성용 셔츠 제작(50Pcs) |
| 9.연 번 | ㅇ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br>- 사용된 원재료가 다수일 경우 별지에 기재합니다. |
| 10.재 료 명 | ㅇ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
| 11.품목번호 (HS No.) | ㅇ 원재료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합니다. |
| 12.원 산 지 | ㅇ 원재료의 원산지국가명을 기재합니다. |
| 13.가 격 | ㅇ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과 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그 물품이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인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 14.공급자(생산자) | ㅇ 원재료의 공급자(생산자)의 상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 · 전화 및 팩스번호를 기재합니다. |
| 15.합 계 | ㅇ 재료 중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가액과 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16.~25.원산지기준 | ㅇ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적용된 기준의 충족여부를 기재합니다. 예)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로 기재<br>ㅇ 제21란부터 제25란까지 중 어느 하나의 항목을 "예[√]"로 기재한 경우에는 세부 증빙자료를 별지로 첨부해야 합니다. |
| ※ 제26란부터 제30란까지는 제7란의 자유무역협정명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26.수출 대상국 | ㅇ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br>예)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물품인 경우 "VN" 또는 "베트남"으로 기재 |
| 27.수출 대상국의 RCEP 부속서Ⅰ 양허표 부록 지정 물품 여부 | ㅇ 수출물품이 해당 수출 대상국에 대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Ⅰ 부록에 명시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
| 28.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 | ㅇ 제27란을 "해당(Y)"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부가가치 비율을 기재합니다. 다만, 공제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비역내산재료의 가격 대신 비한국산재료의 가격을 사용하며, 집적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역내산재료의 가격 대신 한국산재료의 가격을 사용합니다. |
| 29.최소공정 이외의 공정 수행 여부 | ㅇ 수출물품에 대한 제6란의 원산지결정기준을 "PE"로 기재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
| 30.RCEP 원산지 국가 | ㅇ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6조에 따라 결정된 수출물품의 RCEP 원산지 국가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 254~255p.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3쪽 중 제1쪽)

1.발급번호(Reference No.) :

| | | |
|---|---|---|
| 2.공급하는 자 (Supplier) | 상호(Company Name) |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
| |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 전화번호(Tel)<br>팩스번호(Fax) |
| | 주소(Address)<br>전자우편주소(E-mail) | 인증수출자 인증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 |

| | | |
|---|---|---|
| 3.공급받는 자 (Supplied to) | 상호(Company Name) |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
| |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 전화번호(Tel)<br>팩스번호(Fax) |
| | 주소(Address)<br>전자우편주소(E-mail) | |

공급물품 명세서(Good(s) Statements)

| 4.연번 (S/N) | 5.자유무역협정명칭 (Name of FTA) | 6.품목번호 (HS No.) | 7.품명·규격 [Description·Specification of Good(s)] | 8.수량 및 단위 (Quantity & Unit) | 9.원산지 결정기준 (Origin Criterion) | 10.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 | 11.원산지 (Country of Origin) | 12.원산지포괄 확인기간 (년월일~년월일) [Blanket period (YYYY/MM/DD ~ YYYY/MM/DD)] | 13.원산지 간이확인 물품 여부 (Simple Declaration of Origin) |
|---|---|---|---|---|---|---|---|---|---|---|
| | | | | | | 충족 (Y) | 미충족 (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RCEP 원산지 국가 확인(Declaration of RCEP Country of Origin)

| 14. 공급물품 연번 (S/N) | 15.국내 부가가치 20% 이상 발생 여부 (Domestic Value Addition of 20%) | | 16.최소공정 이외의 공정 국내 수행 여부 (Processed Beyond Minimal Operations) | |
|---|---|---|---|---|
| | 발생(Y) | 미발생(N) | 수행(Y) | 미수행(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e origin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1 of 「Enforcement Rules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작 성 자(Declarer) : (서명 또는 인)(Signature)
직 위(Title) :
상호 및 주소(Company Name/Address) :
작 성 일(Date) : 년 월 일 (YYYY/MM/DD)

210mm×297mm[백상지(80g/㎡)]

| 작 성 방 법 | |
|---|---|
| 항 목 | 작 성 내 용 |
| 1.발급번호 | ㅇ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기재합니다. |
| 2.공급하는 자 | ㅇ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br>ㅇ 공급하는 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합니다. |
| 3.공급받는 자 | ㅇ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
| 4.연번 | ㅇ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기재합니다. |
| 5.자유무역협정명칭 | ㅇ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기재합니다.<br>예)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RCEP 등 |
| 6.품목번호(HS No.) | ㅇ 공급물품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합니다. |
| 7.품명 · 규격 | ㅇ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기재합니다. |
| 8.수량 및 단위 | ㅇ 원산지포괄확인이 아닌 경우 공급물품의 수량 및 단위를 기재합니다. |
| 9.원산지결정기준 | ㅇ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

| 원산지결정기준 | 기재방법 |
|---|---|
| 가. 완전생산 물품 | - WO |
| 나. 원산지재료로만 생산한 물품 | - PE |
| 다. 세번변경기준<br>- 2단위 세번변경기준<br>- 4단위 세번변경기준<br>- 6단위 세번변경기준 | <br>- CC<br>- CTH<br>- CTSH |
| 라. 부가가치기준<br>-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br>-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br>- 역외산재료 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br>-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r>- BD<br>- BU<br>- MC<br>- NC |
| 마. 결합기준<br>-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 |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br>- CC(CTH또는CTSH) + SP<br>- BD(BU, MC 또는 NC) + SP<br>-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SP |
| 바. 특정공정기준 | - SP |
|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 OP |
| 아. 기타기준 | - Other |

| | |
|---|---|
| 10.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 ㅇ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기재합니다.<br>예) 원산지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충족에 "√" 를 기재합니다. |
| 11.원산지 | ㅇ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해당 원산지 국가를 적습니다.<br>예) 한국산인 경우 "KR" 또는 "한국"으로 기재, 중국산인 경우 "CN" 또는 "중국"으로 기재 |
| 12.원산지포괄확인기간 | ㅇ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기재합니다.<br>예) 2016.07.01 - 2017.06.30<br>※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수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 |
| 13.원산지간이확인 물품 여부 |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대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물품인지 여부를 기재합니다.<br>예)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 를 기재합니다. |

※ 제14란부터 제16란까지는 수출물품에 대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적용을 위해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
| 14.공급물품 연번 | ㅇ 제5란의 자유무역협정명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제4란의 연번을 이 란에 기재합니다. |
| 15.국내 부가가치 20% 이상 발생 여부 | ㅇ 수출물품이 체약상대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Ⅰ 부록에 명시된 물품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16.최소공정 이외의 공정 국내수행 여부 | ㅇ 수출물품에 대한 제9란의 원산지결정기준을 "PE"로 기재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